

연구보고서

국내외 사회서비스 통계작성 실태 분석

연구진

통계개발원 : 이재형 (원장)
황명진 (사회통계실장)
정남수 (통계사무관)
손상익 (통계사무관)

외부 연구진 : 이정환 청주대학교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연구 보조원 : 김태연 한남대학교 (숙명여대 대학원생)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기관 : 통계개발원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귀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연구용역사업 계약에 의하여 국내외 사회서비스 통계작성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08년 1월 23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 2 장 사회서비스	8
1. 사회서비스의 등장	8
2. 사회서비스의 정의	9
2.1. 서비스산업의 정의	9
2.2. 경제의 서비스화와 산업구조 변화	11
2.3.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16
2.4. 사회서비스의 정의	22
3. 사회서비스의 성장	24
제 3 장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27
1. 서비스 분류 현황	27
2. 사회서비스의 분류	32
3.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33
3.1. 서비스업 총 조사	34
3.1.1. 조사연혁 및 목적	34
3.1.2. 조사방법	34
3.2. 기타 통계청의 서비스 관련 통계 조사	36

4. 서비스산업과 사회서비스	38
4.1. 산업별 사업체 분포	38
4.2. 창설년도별 분포와 사업체 생존	44
5. 고용과 생산성	47
5.1. 고용형태와 인력구조	47
5.2. 노동생산성	49
5.3. 인건비	53
6. 해외의 사회서비스 통계 분류현황	55
6.1. 미국	55
6.1.1. 표준산업분류	55
6.1.1.1. 개인 및 가족 사회서비스	57
6.1.1.2. 직업 훈련 및 직업 재활서비스	59
6.1.1.3. 아동 보육서비스	60
6.1.1.4. 거주형 보호	60
6.1.1.5. 기타 사회서비스	62
6.1.2. 북미산업분류체계	63
6.1.2.1. 간호 및 거주형 관리 시설 하위부문	66
6.1.2.1.1. 간호 관리 시설 산업집단	66
6.1.2.1.2. 거주형 정신지체, 정신건강, 약물남용 시설 산업집단	67
6.1.2.1.3.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 시설 산업집단	69
6.1.2.1.4. 기타 거주형 관리 시설 산업집단	70
6.1.2.2. 사회지원 하위부문	71
6.1.2.2.1.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산업집단	71
6.1.2.2.2. 지역사회 식량, 주택, 긴급, 기타 구호 서비스 산업집단	74
6.1.2.2.3. 직업 재활서비스 산업집단	78
6.1.2.2.4. 아동 보육서비스 산업집단	79

6.2. 일본	80
6.2.1 개요	80
6.2.2. 사회서비스	82
6.2.2.1. 보건위생업	82
6.2.2.2. 사회보건·사회복지·개호사업	85
6.3. 영국의 산업분류 체계에 있어서의 사회서비스	89
6.4. 스웨덴의 산업분류 체계에 있어서의 사회서비스	102
7. 각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분류현황 및 시사점	107
7.1. 미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107
7.1.1. 서비스산업	108
7.1.2. 사회서비스	112
7.2. 일본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115
7.2.1. 서비스산업	115
7.2.2. 사회서비스	120
7.3.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123
7.3.1. 서비스산업	123
7.3.2. 사회서비스	127
7.4.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131
7.4.1. 서비스산업	132
7.4.2. 사회서비스	136
7.5. 해외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정리	138
제 4 장 결론	145
참 고 문 헌	150

표 목 차

<표 1>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 (2004): 경상가격 기준	16
<표 2> 산업구조 변화	18
<표 3> 주요 서비스 산업의 비중	20
<표 4>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의 산업별 비중 추이v	21
<표 5> 서비스부문 세부업종별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의 비중 추이	21
<표 6>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변천 내역	31
<표 7> 통계청의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37
<표 8> 산업대분류별 서비스 사업체수	39
<표 9> 서비스산업 분류체계	41
<표 10> 산업유형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42
<표 11> 시도별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의 구성비 매트릭스	43
<표 12> 창설년도별 사업체수	44
<표 13>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창업률 및 4년생존률	45
<표 14> 2005년 기준 산업대분류별 창설년도별 사업체 구성비	46
<표 15>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	47
<표 16> 서비스업의 성별 종사자 수	49
<표 17> 산업대분류별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	51
<표 18> 산업대분류별 부가가치증가율과 고용증가율 (2001 ~ 2005년)	52
<표 19> 종사자 1인당 인건비	53
<표 20> 산업대분류별 시도별 1인당 인건비 (2005년)	54
<표 21> SIC 선업분류	56
<표 22> SIC 서비스업 부문 주요 산업집단	56
<표 23> SIC 사회서비스 산업집단 및 산업	57
<표 24> NAICS 대산업 부문	64
<표 25> NAICS 사회서비스 관련 부문 분류	65

<표 26> 일본 표준산업분류체계	81
<표 27> 영국 표준산업분류(UK SIC 2007)의 Section	91
<표 28> 스웨덴의 표준산업분류 (2002) : SNI 2002	103
<표 29> 미국 산업별 시설 수 (단위 : 1,000개)	109
<표 30> 미국 산업별 매출액 (단위: 10억\$)	111
<표 31> 미국 건강관리/사회지원 산업부문 시설 수 (단위: 1,000개)	112
<표 32> 미국 건강관리/사회지원 산업부문 매출액 (단위: 10억\$)	113
<표 33> 2002년 미국 건강관리/사회지원 산업부문 평균 비 (ratio)	114
<표 34> 일본 산업별 시설 수	116
<표 35> 일본 산업별 종사자 수	119
<표 36> 일본 산업 시설 당 종사자 수	120
<표 37> 일본 의료/복지 산업부문 시설 수 (단위: 1,000개)	121
<표 38> 일본 의료/복지 산업부문 종사자 수	122
<표 39> 일본 의료/복지 산업부문 시설 당 종사자 수	122
<표 40> 영국의 산업별 사업체 (Enterprise)의 수	124
<표 41> 영국의 산업별 총매출액	126
<표 42> 영국의 산업별 연평균 종사자수	127
<표 43> 영국의 의료 및 사회사업 활동 부문의 사업체 (Enterprise)의 수	129
<표 44> 영국의 의료 및 사회사업 활동 부문의 총매출액	129
<표 45> 영국의 의료 및 사회사업 활동 부문의 연평균 종사자 수	130
<표 46> 스웨덴의 산업별 사업체 (Enterprise)의 수	133
<표 47> 스웨덴의 산업별 연평균 종사자수	135
<표 48> 스웨덴의 의료 및 복지 부문의 사업체 (Enterprise)의 수	137
<표 49> 스웨덴의 의료 및 복지 부문의 종사자 수	137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 경제 성장률 (GDP 기준)	2
[그림 2] GDP 대비 사회 복지 규모	4
[그림 3] 정부지출에서의 보건복지 부분의 증가 추세	4
[그림 4] 주요 국가의 제조업 비중	13
[그림 5]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 비중	14
[그림 6]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	15
[그림 7]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변화 (경상가격 기준): 기준연도 2000년	17
[그림 8]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경상가격 기준: 기준연도 2005년)	19
[그림 9] 산업분류 구조	28
[그림 10] 서비스업의 산업대분류별 구성(2005년)	38
[그림 11]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 증감 (2001~2005)	40
[그림 12]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중의 증감폭 (2001 ~ 2005년)	48
[그림 13] 산업대분류별 부가가치 비중	50
[그림 14]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2001 ~ 2005년)	52
[그림 15] 영국의 사회서비스 수행 평가 지표의 역할	97
[그림 16] PSS PAF 평가 결과 예시	98
[그림 17] 스웨덴의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홈페이지	106

제1장 연구 목적 및 개요

1. 연구 배경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으로 빈곤 차별 질병 등 사회적 취약인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 규모와 수혜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발전하여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 사회보험제도가 확장됨에 따라 1997부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예산이 양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미래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최근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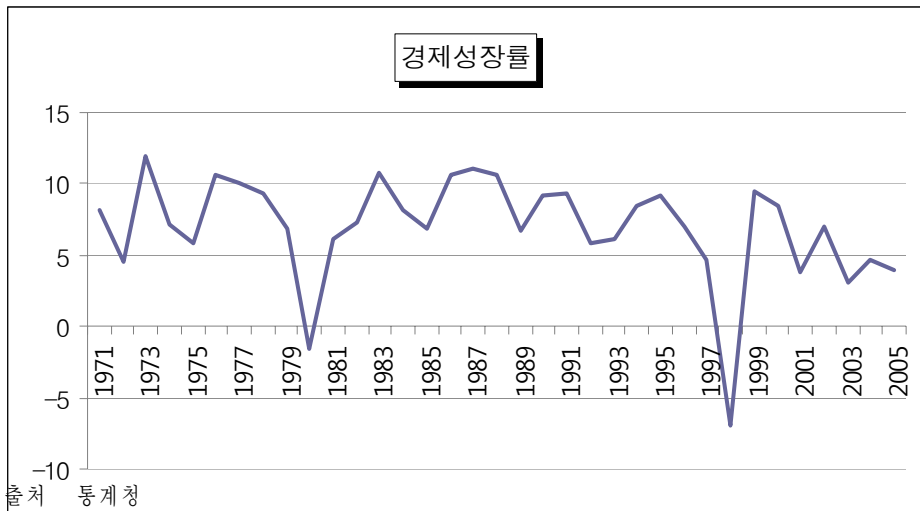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경제보고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대빈곤율 축소를 위해 공적 부조 수혜대상을 확대해 가계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확보해 줘야 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고용유인 축소를 위해 사업장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노동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공공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의 현저한 증가가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양적인 팽창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2 국내외 사회서비스 통계작성 실태 분석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도 성장기를 멈추고 선진국형의 저성장기로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산업화시대 이후 고도성장기가 지나고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확연히 둔화되었으며 특히 지난 12년간 평균 성장률은 4.6%로 이미 저성장의 기조로 접어든 구미선진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1994-2006)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이 기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아일랜드 5.4%, 노르웨이 5.3%, 미국 3.6%, 일본 2.7%, 영국 2.6%, 프랑스 2%, 독일 1.78%, 이탈리아 1%로 저성장률 보이고 있다. 그 기간 신흥 경제권(China 10%, India 8%)은 과거 우리가 겪은 고도 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다. IMF는 1997년 이후 성장률이 현격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 한국 경제 성장률 (GDP 기준)

(단위 : %)



일반적인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게 되면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기에 진입한 선진국형 경제구조로서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시스템에서 가능하던 고용 창출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고 성장이 있으되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1995-2005)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1.3% 수준이었는데 이나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감안하게 되면 고용창출은 1.3%에 있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 중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남성 1.1%, 여성 1.6%의 증가) (김종민,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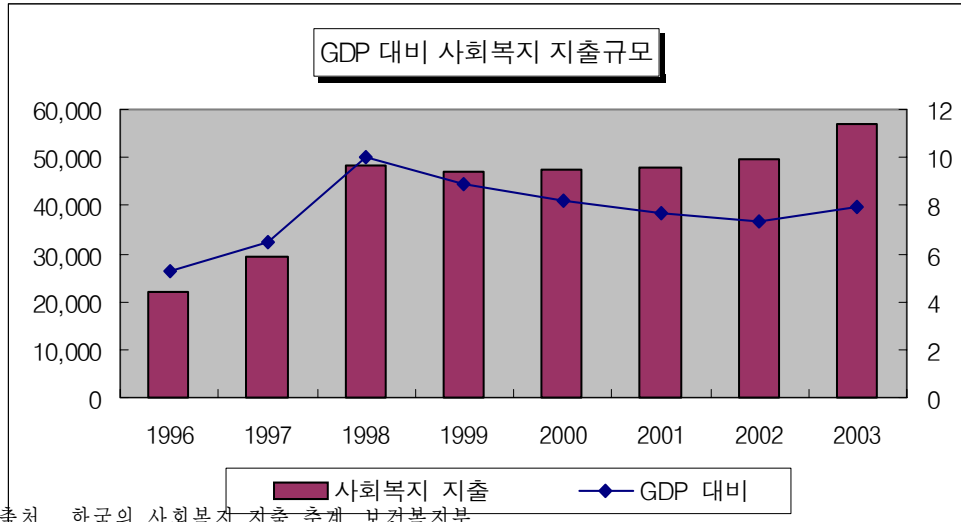
경제학자 Arthur Okun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실업률이 0.2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험연구에 의하면 0.25%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실업률이 0.16-0.18%포인트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Okun's law) (Okun, 2000)

1963~1997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실업률이 0.16-0.18%포인트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1%의 성장과 실업의 관계가 미국보다는 0.16-0.18%포인트만 우리 경제도 성장과 고용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의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그만큼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정의 증가추세를 보면 그림 1과 그림 2 참조.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 재정지출이 인구고령화 (2000년 21.5% → 2020년 27.5%)는 현재의 배인 백 조원을 넘고 2030년에는 백 조~ 백조 5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민, 2004)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재정 지출비중도 2004년에는 1.5%를 넘고 2014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 30%인 외국 20% 서비스 20% 급자들의 수급권 현실로 인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다원화되고 있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국내외 사회서비스 통계작성 실태 분석

[그림 2]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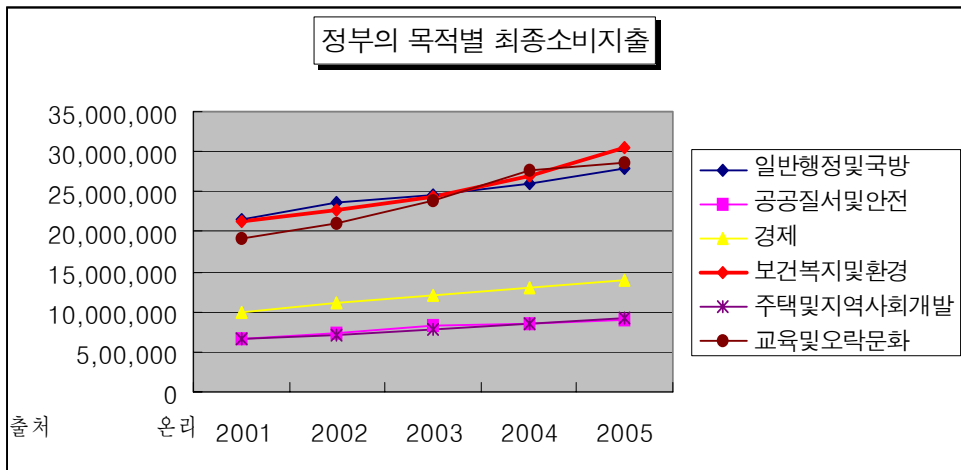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



출처 한국 사회복지 지출 통계 보건복지부

[그림 3] 정부지출에서의 보건복지 부분의 증가 추세

(단위 : 백만원)



이러한 사회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둘러싸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KOSIS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의 확장이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부여하는 정책으로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을 이룬 사회지출이 더욱 확대되어야하고 이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 더 많은 수혜 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 중 사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5%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 20%는 물론이고 우리와 비슷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한편 사회지출의 증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분배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위축 따라서 과도한 사회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성장을 통해 그 혜택이 국민전반에 파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보건복지 및 사회정책효과나 효율성 형평성 등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향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에 비추어 보면 이런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성장이나 분배나 하는 사회정책적인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회정책이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공통적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도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사회정책의 추세가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기반의 안정을 위한 사회정책 부문과 이와 달리 정책적 중심을 기층 취약 계층위주에서 중산층을 위시한 일반 시민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서 사회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시장이라는 매개를 이용한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측면과 사회지출을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의 창출이라는 이중적인 목적성을 가지게 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정책으로서의 보건 복지 및 기타 사회서비스분야를 논하던 패러다임을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로 이해하고 사회정책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정책 혹은 사회서비스 과 성장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상승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회정책 및 사회 서비스

6 국내외 사회서비스 통계작성 실태 분석

스와 기존 시장경제 중심의 산업분야의 상보 (complimentary) 혹은 상승이라 함은 먼저 사회서비스업이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많은 고용을 흡수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회서비스는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대국민 사회서비스의 증대는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킴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공급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초통계작성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통계청의 서비스 산업 분류 체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해외의 서비스 산업 통계작성의 현황을 문헌자료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국내 사회서비스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장에서는 먼저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기존의 연구와 사회정책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개념정립이라는 측면에서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소득 및 경제성장 기여도 그리고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거시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작성 현황을 국내 및 해외 사례 연구 통해 통계청 통계작성 기관 자료 생성 및 관리체계를 파악하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정책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의 의미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첫째 통계청의 고용관련 내부자료 고용통계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여성의 고용증가와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함께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이 된다 둘째 사회서비스업의 분류기준과 범위를 다루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중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알아보고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종류 내용 대상 및 조사주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해외의 사례를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서비스 관련 통계작성 기준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중요성을 국내 사회서비스 분류 원칙과 현황을 조사의 분류기준이 되는 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조사체계를 파악하기로 한다 넷째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업 분류체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사회정책관련 정부 부처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통계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산업관련

통계작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섯째 각국의 사회서비스 통계현황을 구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⁴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현행 서비스 관련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의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등장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해 전통적인 접근은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어 왔으며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이다 특히 보건 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대초부터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바람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를 전통적이고 배타적인 정부의 정책 활동의 일환에 한정하지 않고 하나의 경제 혹은 산업과 고용의 맥락에서 사회 경제의 과급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수상 토니 블레어를 위시하여 일련의 사회 경제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이념과 사회민주주의를 동시에 거부하며 소위 제 3의 길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주창해 왔다 영국 사회학자 기든스는 경쟁 질서생존의 정글식 생존방식을 강요하는 전통적 신자유주의의와 효용성을 희생하는 사회민주주의가 대립하는 과거 냉전시대의 양극체제에 적합했던 사회모델은 즉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민주의적 가치와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 모두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효용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를 포함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비단 영미 몇몇 국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바람은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변져나가고 있다 조현승 (2007) 에 의하면 선진국의 민영화 사례는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우정

이나 교정사업 부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은 이미 국가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으로서 발전해왔다 일반적으로 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주력산업이 차 → 차 → 차 산업으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이 같은 이행절차를 거쳐 왔고 우리나라 역시 차산업이 주산업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단계에 진입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산업구조변화를 보면 개인 및 가사 서비스 유통서비스 등은 저성장 사업서비스업은 중간정도의 성장을 보인데 비해 사회서비스업은 초고속 성장을 계속하여왔다 다시 말해 차 산업으로의 주력산업 전환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서비스업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서비스 부문이 국가경제발전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서비스가 사회정책 혹은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든 전통적인 사회복지 부분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며 복지재정의 확대 자체의 재정 부담과 아울러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측면에서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산업 정책적 차원의 연구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통계의 발전·정비 선진외국의 통계현황 및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2. 사회서비스의 정의

2.1. 서비스산업의 정의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찾기 전에 서비스의 산업적인 정의와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서비스의 사전적 정의 민현주(2007)는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 또는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자체의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개념의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화와의 구분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서비스는 구매 전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를 맡을 수 있는 유형적 대상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체를 객관적으로 느낄 수 없다 무형성
 둘째 서비스는 제품과는 달리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저장할 수 없다 (intangibility).
 셋째 재화는 먼저 생산되고 그 다음에 판매 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성 (perishability). 넷째 서비스는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선호해서 그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이 항상 일정할 수 없다 변동성 (simultaneousness).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에서와 같이 상호 유사한 생산기술 하에서 생산이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각 상품 또는 산업별로 독특하고 상이한 특성과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식어기는 하지만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이라는 의미가 보다 널리 인정되는 개념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하봉찬

서비스산업을 통계적 산업분류상으로 보면 서비스산업은 2006)수산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통신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가 포함된다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산업을 열거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산업을 묶어 이를 구별하여 나열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즉 연구목적에 따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일반서비스업으로 구분하거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기능적 성격에 기준으로 개인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personal services),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producer services), (distributive services),

서비스업은 선진사회로 진입하면 할수록 발전되어가는 업종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문화·레저활동 증가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세계경제의 기초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서비스화는 지식기반화와 더불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70년 생산고용·소비 무역 등 여러 측면에서 꾸준히 높아져 왔다 먼저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현재 명목 기준으로 44.7%에 비해

2006 57.2%(GDP) 1970 44.7%

높아졌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1970년대 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1970년에 16.8%로 낮아진 반면에 금융보험업이 12.5%에서 16.8%로 높아졌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8.5%에서 9.4%로 높아졌고 교육서비스업이 3.7%에서 5.2%로 높아졌고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는 5.2%에서 12.8%로 높아졌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3.7%에서 5.9%로 높아지는 등 거의 대부분 업종의 비중이 상승하여 서비스업이 6.7%에서 7.2%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66.0%로 197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 이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빠르게 이동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제조업의 위축과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2004년 기준으로 프랑스 영국 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은 75.8%를 상회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7.7% 비중이 17%포인트 정도 낮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여전히 GDP 55.5%점만 차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부문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앞으로 선진화에 걸맞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부문을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서비스 고유의 상품적인 특성으로 인해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이 같은 특징은 사회서비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외적 성장에 비례한 실질 산출의 증가나 고용의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비스 사업과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분류를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2. 경제의 서비스화와 산업구조 변화

콜린 클라크는 이미 1950년대에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중심이 차 산업 농림어업 → 차 산업 공업 → 차 산업 서비스업 으로 이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가의 특징을 보면 ① 선진국일수록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② 추세 상으로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경

제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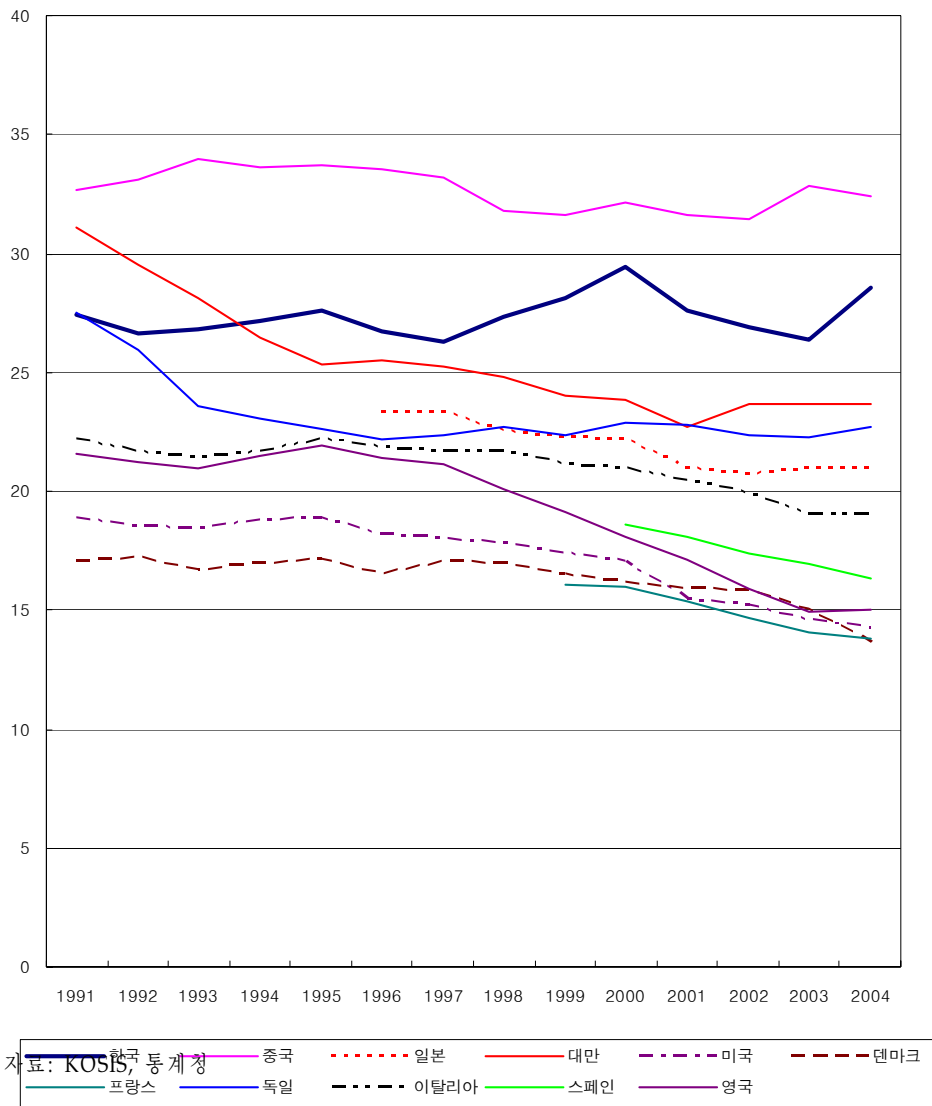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로 보면 현재 급속한 개발단계에 있는 중국이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전후 수준으로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 상으로도 비중저하 폭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비중이 높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제조업 비중이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사례에 속한다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 국가이면서 과거 세계의 공업을 선도하였던 미국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중은 제조업의 비중은 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이 를 차지하여 서비스 산업 중심 20%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미국의 저제조업 고서비스업 현상은 최근에도 급격히 진행되어 년대에 들어서만도 서비스업 비중은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낮은 농림어업 20% 높은 서비스업 비중의 산업구조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일본 등 선진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축소 서비스업 확대 현상은 아직도 제조업에서는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이나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에서조차 발견되는 보편적인 흐름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년간 제조업의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였는데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제구조변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비중은 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나 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제조업비중이 1990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년의 경제침체기 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제회복을 제조업이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찾아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년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았던 대만도 년대 중반이후 제조업 비중이 급감했으며 선진국 가운데서도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비중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가운데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고제조업 저서비스업 현상에 대해 좋고 나쁘다는 식의 일률적 판단은 내리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고 할 것이며 단지 우리 경제의 특징의 한 단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림 4] 주요 국가의 제조업 비중

(단위 : %)



[그림 5]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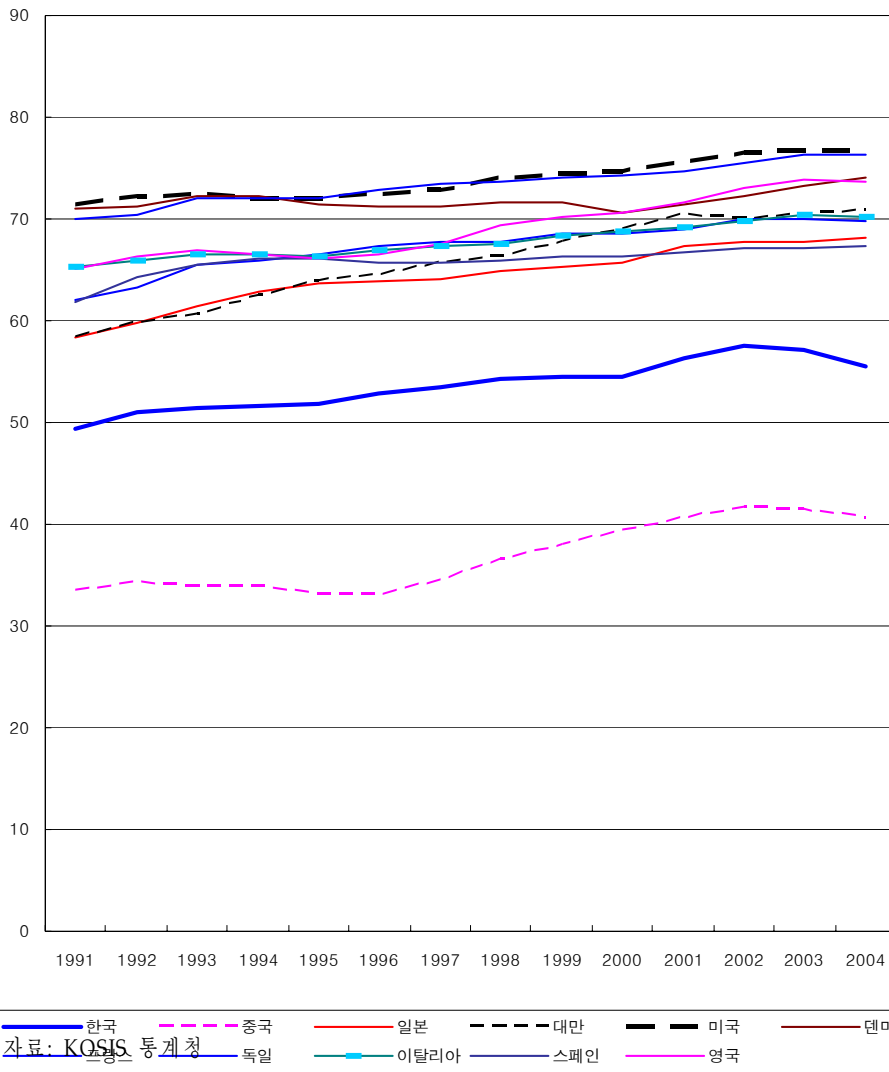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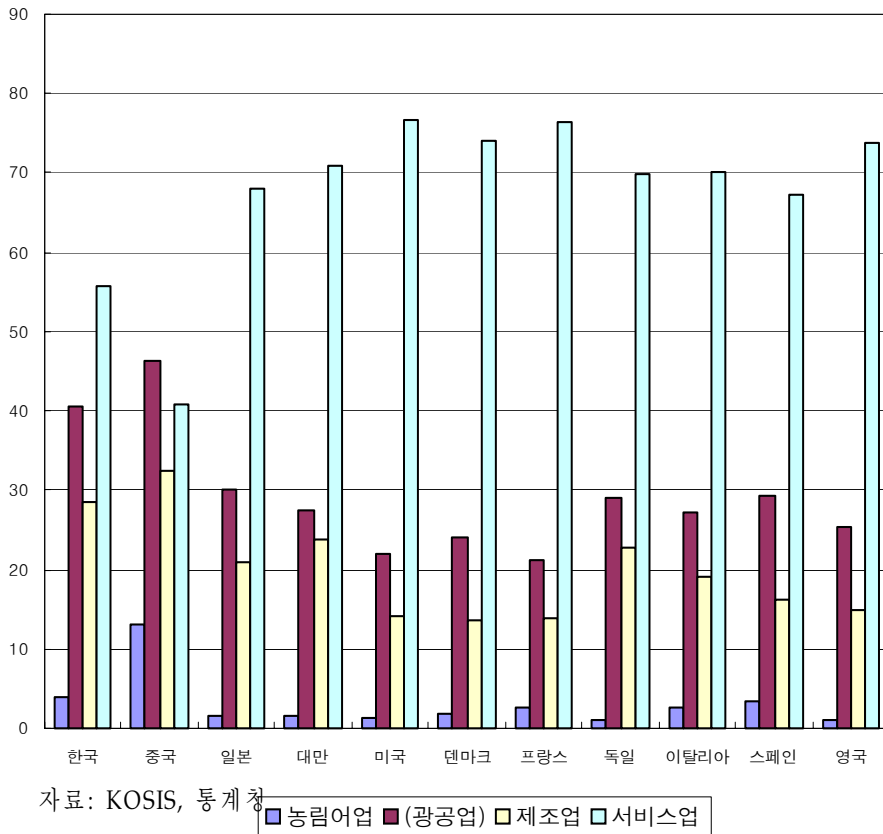


그림 과 표 에는 주요국가의 산업구조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외국 과 비교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 특징이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난다 [6] < 1 > ,

로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건설업 포함) 비중은 40.6%로 인 중국을 제외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과 독일 스페인 정도가 46.2% 전후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그 비중이 훨씬 낮다 제조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

(단위 : %)



〈표 1〉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2004): 경상가격기준 (단위 : %)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	제조업	서비스업
한국	3.8	40.6	28.6	55.6
중국	13.1	46.2	32.4	40.7
일본	1.7	30.2	21.0	68.1
대만	1.6	27.6	23.7	70.8
미국	1.3	22.0	14.2	76.7
덴마크	1.9	24.1	13.6	74.0
프랑스	2.5	21.3	13.8	76.3
독일	1.1	29.1	22.7	69.8
이탈리아	2.5	27.3	19.0	70.2
영국	3.5	29.2	16.3	67.3
자료 통계청	1.1	25.3	15.0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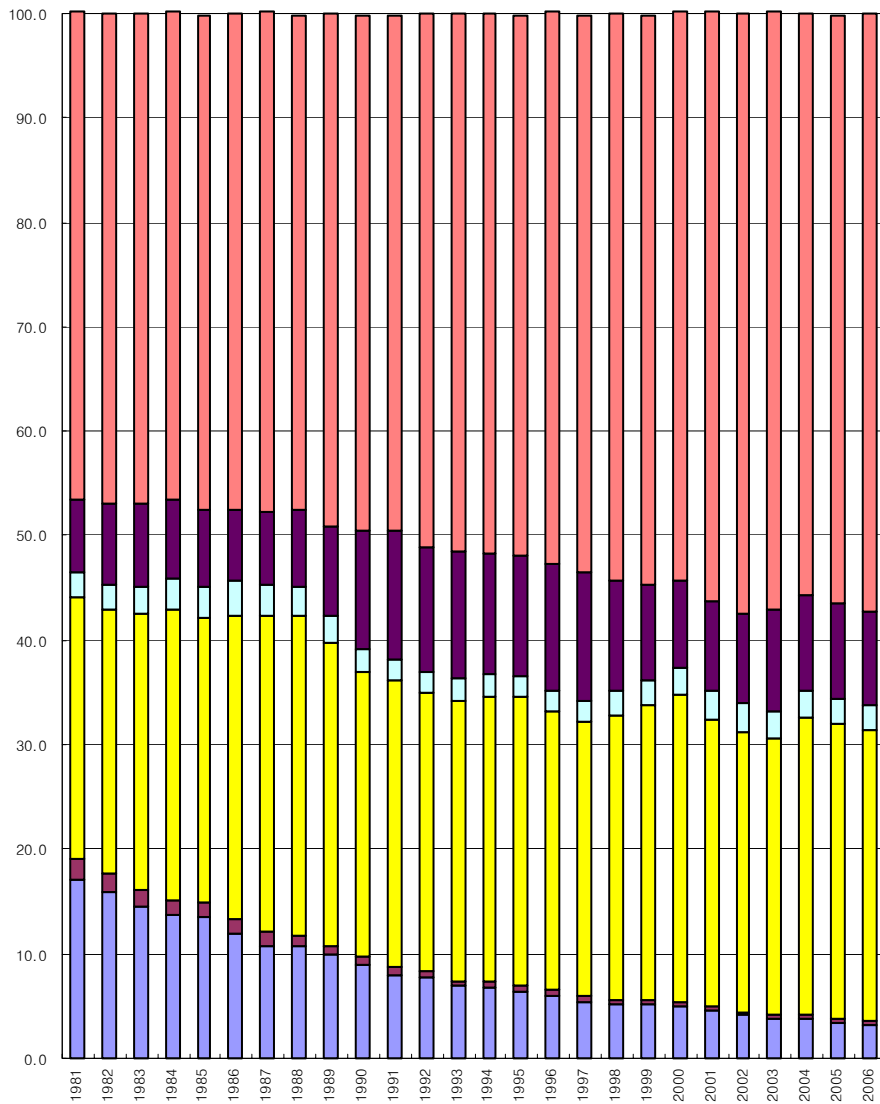
: KOSIS,

2.3.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그림 과 표 에는 년 이후 지난 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가 나타나 있다. 농림어업은 1981 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어 2006년에는 3.2%로 추산되었다. 제조업은 26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1981년에는 28.8%를 넘어섰고 이후 비중은 조금 줄어들어 2006년에는 25.3%로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회복기를 제조업이 주도함으로써 제조업 비중은 2000년경에 다시 선에 근접하였으나 이후 다시 근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2004년 들어 다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1981년 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6년에는 그 비중이 73.7%에 달하였다. 서비스업 비중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변화(경상가격 기준): 기준연도 2000년

(단위 : %)



자료: 「2006년도 국민경제」, ECOS 한국은행

<표 2>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항목명 1	농림어업 생산구조 명목 ()	광업 및 제조업	제조업 ()	전기가스수 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1981	17.0	27.1	25.1	2.4	7.0	46.7
1990	8.9	28.1	27.3	2.1	11.3	49.5
1995	6.3	28.2	27.6	2.0	11.6	51.8
2000	4.9	29.8	29.4	2.6	8.4	54.4
2001	4.5	28.0	27.6	2.7	8.6	56.3
2002	4.1	27.2	26.9	2.6	8.6	57.5
2003	3.8	26.8	26.4	2.7	9.6	57.2
2004	3.8	28.9	28.6	2.4	9.3	55.6
2005	3.4	28.7	28.4	2.3	9.2	56.3
자료 2006	「년도 국가계정」 32	28.2	한국은행 27.8	2.3	9.1	57.2

: 2006,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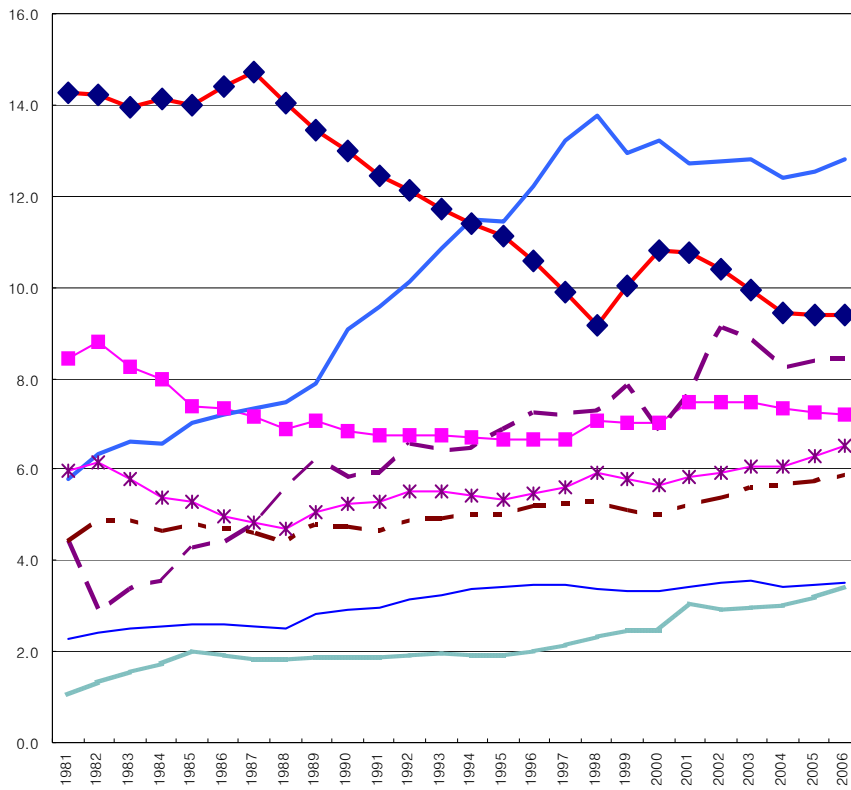
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세부업별로 부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와 표 에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대분류별 비중의 추세가 나타나 있다 8] < 3>

서비스 산업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다 이 산업은 년 로서 당시에는 서비스업 가운데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산업이었다 1981 년에는 한때 가까이 그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경제위기시인 15%년에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회복기에 그 비중이 다시 정도로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다시 정도로 낮아졌다 유통산업과 반대로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다 이 산업의 성장은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발전으로부터 기인된 것인데 년 미만이던 수준에서 년에는 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경제위기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선진국의 예를 통해 볼 때 여전히 그 비중확대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사회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은 지난 년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년대 이후 우리나라 서비

스산업의 구조변화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급격한 비중감소와 여타 서비스 산업의 점진적인 비중증대”라는 한 마디 말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서비스 산업의 구조변화(경상가격 기준: 기준연도 2005년)

(단위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금융보험업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공공행정 및 국방	- - - 교육서비스업
— 기타서비스	

자료: 「2006년도 복원 및 재정회계통계」, 한국은행

〈표 3〉 주요 서비스산업의 비중 (단위 : %)

산업명	198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3	13.0	11.1	10.8	10.8	10.4	9.9	9.4	9.4	9.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금융보험업	8.4	6.8	6.6	7.0	7.5	7.5	7.5	7.3	7.3	7.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4.4	5.8	6.9	6.9	7.7	9.1	8.9	8.2	8.4	8.5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5.8	9.1	11.5	13.2	12.7	12.8	12.8	12.4	12.5	12.8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서비스	6.0	5.2	5.3	5.7	5.9	5.9	6.0	6.1	6.3	6.5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4.4	4.7	5.0	5.0	5.2	5.4	5.6	5.6	5.8	5.9
자료 (「 년도」 국민계정)	1.1	1.9	1.9	2.4	3.0	2.9	3.0	3.0	3.2	3.4
	2.3	2.9	3.4	3.3	3.4	3.5	3.5	3.4	3.5	3.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006 , ECOS,
 그리고 산출 뿐 아니라 투입 면에서도 서비스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표
 의 산업연관표상에서 보면 서비스업이 중간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년 < 4 >
 에서 년 로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년대 이후 나타내고 있는
 법률 회계 컴퓨팅 인적자원관리 청소 유지 광고 마케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아웃소싱 현상도 기업의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표
 에서 보면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사업서비스업 분야가 중간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년 에서 년 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서비스 이외에도 생
 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생산자서비스 분야인 부동산 및 임대업은 동기간동안
 1990 에서 3.7% 로 증가하였고 2003 7.1% 금융·보험업도 동기간동안
 2.1% 3.4% , 4.5% 4.7%

〈표 4〉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의 산업별 비중 추이(단위 : %)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1980	1990	2003	1980	1990	2003	1980	1990	2003
농림어업	12.4	7.4	3.2	4.9	3.1	1.5	8.8	5.3	2.3
광업 제조업	64.1	63.2	59.4	48.3	45.9	40.9	56.4	54.6	49.9
건설업	1.3	1.7	1.2	12.7	16.8	12.5	6.8	9.2	7.0
전기 가스 수도	2.9	2.4	3.0	0.7	0.7	1.1	1.8	1.5	2.0
서비스업	19.3	25.2	33.2	33.4	33.5	44.0	26.1	29.3	3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표 5〉 서비스부문 세부업종별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의 비중 추이 (단위 : %)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1980	1990	2003	1980	1990	2003	1980	1990	2003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0.7	0.8	2.2	1.3	0.9	3.7	1.0	0.8	2.9
운수 및 보관	3.1	2.9	3.5	6.8	4.3	3.4	4.9	3.6	3.5
통신 및 방송	0.8	1.3	2.5	0.4	0.6	1.9	0.6	0.9	2.2
금융 및 보험	3.2	4.5	4.7	0.5	1.0	3.0	1.9	2.8	3.8
부동산 임대업	1.1	2.1	3.4	2.9	4.9	6.6	2.0	3.5	5.0
사업서비스	-	3.7	7.1	-	0.4	2.4	-	2.1	4.7
공공행정 및 국방	0.1	0.0	0.1	6.4	5.8	5.5	3.2	2.9	2.9
교육 및 연구	0.1	0.2	1.6	3.6	4.1	4.9	1.8	2.1	3.3
의료 사회보장	0.2	0.1	0.5	1.1	1.9	4.0	0.6	1.0	2.3
문화오락서비스	0.2	0.2	0.4	0.2	0.3	1.7	0.2	0.3	1.1
기타 서비스	4.7	4.4	4.0	3.0	2.5	2.1	3.9	3.4	3.0
서비스업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기타서비스는 사무용품, 가계 외 소비지출 분류별명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1)

:

2.4. 사회서비스의 정의

지금까지 서비스의 일반적인 정의와 산업적인 특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사회 서비스는 서비스부문 중에서도 고유의 특성을 갖는 분야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는 사회의 경제 및 역사적인 맥락에서 달라지기도 하고 정부의 거시 사회정책이나 경제 산업의 체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사회서비스의 의미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기도 하고 또 그 기능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사회적(social welfare services) 다양한 용어와 혼용(personal services or human services) 서비스는 국제산업표준 분류

에 따라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 개인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하는 협의의 정의로 이해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은 대인서비스 혹은 사회서비스라고 이르고 소득보장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은 제외시킨다 영국의 사회서비스라 하여 소득보장 보건 고용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와 정부 민간 비영리 자원단체를 묶어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의 대인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사회서비스는 기능 내용 방법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의식주등의 기초생활을 위한 생활보장 서비스 정신과 신체의 건강과 활동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교육과 훈련 및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인적자원 서비스 사회적 관계와 참여를 위한 사회자본 서비스 일자리 알선 및 직업유지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일반 행정 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성인 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여성 가족 서비스 노숙인 미혼모 국제결혼 이주민은 위한 특수 취약계층 서비스가 있다

국가 간에도 사회서비스의 구성과 영역에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간호보호서비스 육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인 및 가족보호서비스와 알코올 및 약물남용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자산조사에 기초한 경제적 보조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의 (3)

가지 영역으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정경희 외 (2006) 영국은 사회복지 범위 안에 공적·사적 섹터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문 및 비전문인에 의한 비의료성 서비스 아동·청소년·노인서비스를 사회적 보호 (social care) 라고 이른다.

기능면에서 본다면 서비스는 인간의 사회화와 발달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치료·원조 및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정보·상담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인간의 사회화와 발달 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치료·원조·재활을 위한 (1)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정보·충고 서비스로 구분하(2) 있다 또한 김현용은 보호차원의 서비스, 변화차원의 서비스, 예방차원의 서비스, 생활의 질 향상차원의 서비스로 구(3)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국(4)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집합적 행동에 의해 제공되고 서비스의 목적이 사회적 욕구·사회적 관계의 효과적, 조직에 따라 욕구 충족의 정도가 결정되는 성질의 욕구를 겨냥하고 있으며 상부상조 또는 이타주의와 같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서비스는 재화 또는 생산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생산적인 자원의 투여로 상호작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즉 인간 간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목적을 둔 활동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는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내용별로는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모부자 가정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각 사업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범주별 사회복지서비스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와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서 기원하는 상이한 정의와 명칭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정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및 가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한 돌봄 즉 기초 의식주 보장 보건 의료 교육 고용에 대한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미국과 영국의 사회서비스 정의와 유사한 의미로 (care) 사용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내용 역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모부자 가정 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사업법에 따라서 범주별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한다.

이처럼 사회서비스는 대상·내용 기능에 따라 정의와 범주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가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시장의 상품재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양자 간의 특성을 포괄하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서비스산업의 분류에 관해서는 장 사회서비스의 통계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한다

3. 사회서비스의 성장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 (the socially disfranchised) 이 확대되고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에 대한 미래의 도전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프로그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여전히 가족이 기본 욕구를 책임지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정책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전형적인 가족주의 사회복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결핍된 욕구를 가정의 틀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지만 사회가 공동으로 개인 가정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잔여적 복지에서 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가정하는 제도적인 복지로의 (institutional) 전환에 대한 당위는 복지국가론 이라는 담론으로 이미 (institutionally) 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원(源)은 우리 사회 특히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 욕구중심의 접근으로는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의 취약이라는, 우리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력은 우리사회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미래의 도전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전략과 맞물려있다 일차적으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의 차원에서 고용 잠재력을 지닌 사회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시장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와 사회복지가 모두 취약한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대사회보험제도가 완비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공공 민간 혹은 정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확대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사회서비스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비스일자리 공급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욕구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수요촉진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강혜규 등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부분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경쟁 (, 2007).

체제의 도입이다 과거에는 사회 서비스 공급자들은 정부건 비영리 혹은 영리기관이건 서로 경쟁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자 (service providers) 기부금과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고객을 놓고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다 우선 비영리 복지 기관들 간의 경쟁 (Weinbach, 1998)을 들 수 있다 이는 복지 기관에 대한 공공과 개인 투자가 증가하는 동안 비영리 복지 기관에 대한 투자도 그 만큼 증가하였으며 그들 간의 경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복지 기관을 운영하고 자 하는 민간 소유의 비영리 복지 기관이 늘어나면서 사회 복지 서비스가 구매자가 있는 시장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 기관들은 복지 기관의 계약자와 피 수여자의 측면에서 전보다 더 많은 비용 의식에 관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비영리 복지 기관과 영리 사업체들 간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민간 영리 사업체들은 복지 사업을 잠재력 있는 거대한 미개발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영리 사업체는 여러 주와 도시 (Block and Martin) 관에 Electronic Data System (ED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많은 영리 사업체들이 양육비 지원 탁아소 운영 각 가정으로 음식 배달 연장자와 장애자를 위한 특별 운송 수단 제공 입양 주거, 알선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 기관과 영리 사업체들 (GAO, 1997; Garland, 1997; Martin, 2000a; Wayne, 1998)에서 재무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리 사업체들은 서비스 제공의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비영리 단체들 보다 우위에 있다 영리 사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복지기관과 사회복지 행정가가 비용에 대한 인식이 밝아야 하며 재무 관리를 잘 실행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적 욕구에 관한 경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문제에서 종종 나타나는 점은 복지 기관이 건강 보험 교육 주거 교통 기반 환경과 같은 상이한 사회적 욕구들과 경쟁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복지 기관과 민간 비영리 복지 기관이 재무 관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정책 결정자는 새로운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책정된 사회 복지 기금도 다른 분야로 재배치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전문 직업집단간의 경쟁 예 사회 복지 경영 행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쟁체제에서의 또 다른 측면은 직업 간의 경쟁이다 특히 사회 복지 종사자나 프로그램 기획 관리자들은 사회 복지 관리 지위를 놓고 경영이나 행정을 전공한 사람들과 경쟁 상태에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시화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간 재무 관리나 인사관리 등의 제반 관리업무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없는 전통적인 사회 서비스관리자는 1980년대부터 외부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경영과 행정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황명진 등 (, 2007).

제3장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1. 서비스 분류현황

서비스업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으나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상품이므로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서비스업은 범위가 넓고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해당하는 업종을 분류할 때 단일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서비스업의 분류기준과 포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업을 수요와 공급의 주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서비스 기능에 중점을 두어 재화·사람·돈·정보의 이동 관련 서비스 재화의 대여, 관련 서비스 행위대행 서비스 기술제공 서비스 교육관련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서비스의 행위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서비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서비스 물적 소유물에 대한 서비스 무형자산에 대한 서비스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서비스 사업분야의 유사성에 중점을 두고 건강관리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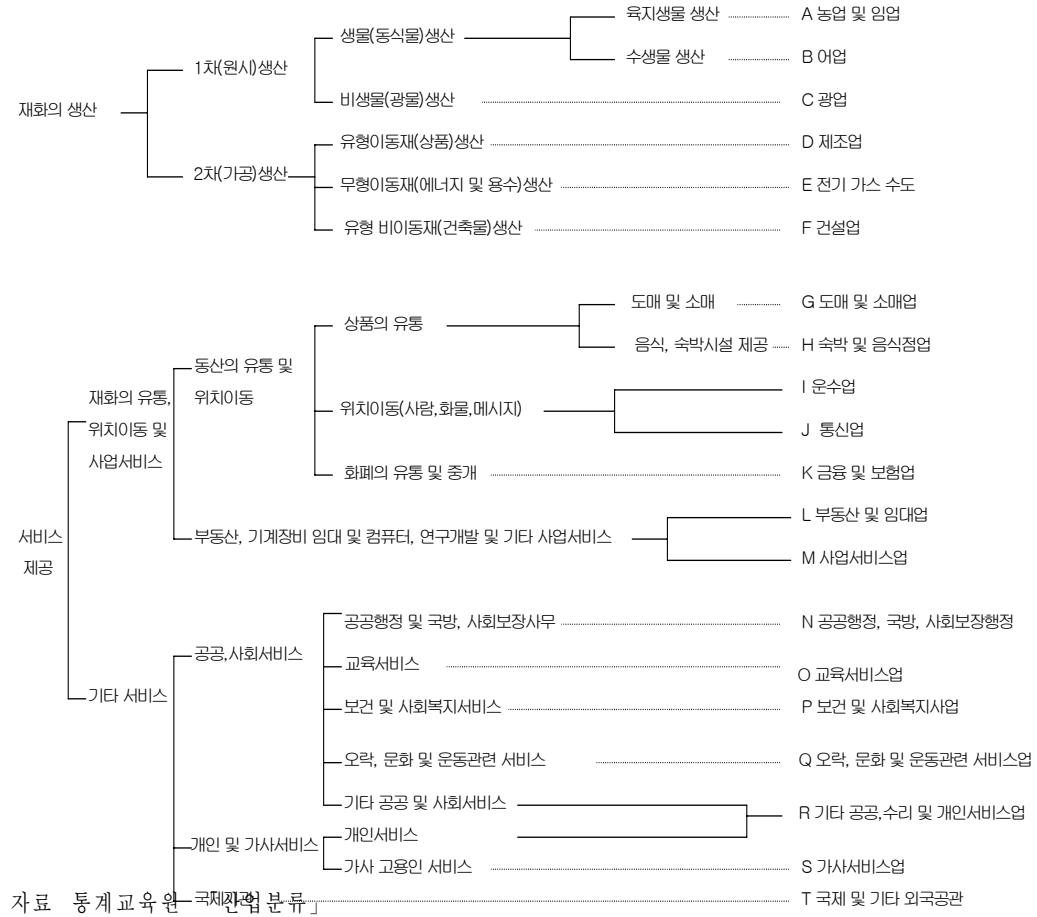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에서는 각 생산주체가 생산하여 다른 경제 주체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종 산업활동은 그림 9와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분류구조에 따라 전체산업을 20개 대분류, 농업, 국제 및 외국기관 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부터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G)

1).

1)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s),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Divisions),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s),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e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es)의 5단계의 분류체계를 사용함.

[그림 9] 산업분류 구조



: ,

서비스 산업별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 50~52)”²⁾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을 말하며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포함한다 숙박업은 일반대중 또는 “H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 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¹⁾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운수업은 각종 운송시설에 의해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⁶⁰⁻⁶³⁾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운송관련서비스업은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여행알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통신업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⁶⁴⁾을 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 시설 소포송달업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포함된다

금융 및 보험업에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⁶⁵⁻⁶⁷⁾이 포함된다

부동산 및 임대업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사업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활동인 사업지원서비스업 ,

2)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계교육원, 「표준분류」 참조

등이 포함된다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에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가 포함된다

“O 교육 서비스업 (80)”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학령 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86)”에는 의료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 활동이 포함된다

“Q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87~88)”에는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 서비스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활동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뉴스제공 운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93)”에는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원단위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

“S 국제 및 외국기관 (99)”에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99)제대사관 및 기타 외국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된다

한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천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류는 서비스산업이다. 1964년 제정초기에는 상업 운수·보관 및 통신업 서비스업의 개 분야로만 분류되었으나 1964년 이후 계속 세분화되어 현재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회사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의 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표 6〉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변천내역

1964.4.1~1970.3.12 (제정~2차 개정판)	1970.3.13~1991.9.8 (3차~5차 개정판)	1991.9.9~2000.1.6 (6차~7차개정판)	2000.1.7~현재 (8차 개정판~)	
대분류0 농업, 임업, 수렵업, 어업	대분류0 농업, 임업, 수렵업, 수산업	A 농업,수렵업 및 임업 B 어업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대분류1 광업	대분류2 광업 및 채석업	C 광업	C 광업	
대분류2~3 제조업	대분류3 제조업	D 제조업	D 제조업	
대분류4 건설업	대분류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대분류5 전기,가스,수도,위생 시설서비스	대분류5 건설업	F 건설업	F 건설업	
대분류6 상업	대분류6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대분류7 운수,보관 및 통신업	대분류7 운수,보관 및 통신업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J 금융 및 보험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8 서비스업	대분류8 금융, 보험, 부동산업 및 용역업	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L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대분류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M 교육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문화및 운동관련서비스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R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R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P 가사서비스업 Q 국제 및 외국기관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대분류9 분류불능산업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대분류0 분류불능산업			

:

2. 사회서비스의 분류

사회서비스 분야는 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에 속해 있다 김혜원 등 (2006) 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 에 서 농업과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제한하고 에서 체계화 된 서비스업의 분류방법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세 개의 분야 생산자서비스 (producer service), 유통서비스 (distributive service), 개인서비스 (personal service) 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서비스의 경제적 기능(주요) 수요자 기업 가계 의 차이, 차등배분에서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정도에 따른 것이다 생산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의 일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데 비해서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가계에 의해 직접 소비된다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요소로서 기능하는데 비해 유통서비스는 상품 사람 정보를 원하는 이에게 이동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전자가 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배분되는데 비해 후자는 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사회서비스에 속 하는 산업들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미 앞부분 사회서비스의 정의 장 참조, 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표준산업분류 제 차 개정 에 따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체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제 차 개정 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의무적 사회보장

ISIC(3) L(교육, 의류 및 사회복지,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M(Education), N(Health and social work)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 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지금까지 사회서비스를 산업분류의 기준으로 한 공식적인 정의 내린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장의 사회통계자료 분석은 자료의 성격 상 협의의 정의 산업분류 기준 보건사회서비스 부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회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의 한 생산과 시장을 통한 배분이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생산 측면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이 정부에 의해 또는 비영리조직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영리기

3) 통계청의 서비스 및 전 산업 분류에 관해서는 첨부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업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어떤 특정 서비스는 영리기업에 의해 주로 생산되기도 한다. 서비스가 영리기업에 의해 생산되더라도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이들의 구매력이 정부에 의해 보조되는 경우가 많다. 수요 측면에서 수요의 재원이 공공적인 기구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의해 보조되거나 전액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소득의 한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보다는 의회 관료제 법률 투표 여론 등 집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통한 결정이 자원배분을 주도한다. 사회서비스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선택에 의해 공급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는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외부효과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장은 적절한 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특정 서비스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견해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경우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는 평등주의적 요구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강하다. 사회서비스 고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서비스업과 차이를 갖는다. 첫째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대인 서비스로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비중이 높다. 의료서비스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를, 중등교육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장애 고령,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성격으로 인해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다. 둘째 사회서비스 중 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 을 시장화 사회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다지 높은 숙련도와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회서비스 중 교육 의료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 대학 이상의 학력 자격증 및 고도의 숙련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3. 사회 서비스 관련 통계

서비스업과 관련한 각종 통계는 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주요 통계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를 조사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및 서비스업동태조사 등과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조사

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인력실태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통계조사에 대한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및 결과제공 등을 살펴보면서 이들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업을 주제로 개별적인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대신 서비스업의 일부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 절에서는 서비스 관련 통계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1. 서비스업총조사

조사연혁 및 목적

3.1.1

통계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수 조사는 1968년 월에 「상업센서스」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1968년에는 조사명칭을 「도·소매업센서스」로 변경하여 1971년까지 약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다. 1986년에는 조사대상 산업을 확대하여 조사를 1982기를 년으로 변경하고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총사업체통계조사와 병행 실시하였으며 5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 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1년에는 조사명칭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로 조사기준일을 조사기준일의 월 일로 변경하고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하여 제 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조사명칭을 「서비스총조사」로 조사기준년을 「 」자년에서 「 」, 2006년으로 변경하여 제 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1,6 0, 5 「서비스업총조사」의 목적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 분포와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의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동부문의 각종 통계조사표본틀 과 수준점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조사의 법적근거로는 「통계법 제 4 조 제 1항 및 제 2 조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제 호」와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제 4 조 제 1항 제 8 호」에 두고 있다.

(10108) 조사방법 (487)

「서비스업총조사」의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란 영리·비영리 또

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개의 경영단위를 말하며 본사·점 지사·점 출장소 영업소 상점 병원 학원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업총조사」는 제 8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중 아래의 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도매 및 소매업
- G 숙박 및 음식점업
- H 통신업
- J 금융 및 보험업
- K 부동산 및 임대업
- L 사업서비스업
- M 교육서비스업
- 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P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 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R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운수업 공
공행정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등의 산업(제
외된다, 또한 교육서비스업 중 군사학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군병원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노점 및 이륜차 판매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및 이륜차 음식점 등의 고정설비가 없는 이륜차량 판매
업자 노점상 등은 제외된다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을 병
행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총 12개 항목 으로 이중 사업체조사항목은 6개항 기업체
조사항목은 6개항으로 구성된다

사업체조사항목의 공통조사항목 4개 항은 다음과 같다 즉 ①사업체명 ②대표자
명 ③창설년월 및 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조직형태 ⑥사업체구분 ⑦사업의 종
류 ⑧종사자수 ⑨영업기간 ⑩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⑪사업장 건물면적 ⑫사업실적

4)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이다
 (사업체조사항목의 특성조사항목 10개 항목으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의 ①상품매입처별 구성비 ②객실석수 ③상품매입처별 구성비 ④체인점 가입여부 ⑤매장면적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의 ①교육시설 ②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 ③경기·오락시설 ④병·의원 입원시설 ⑤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한편 「서비스업총조사」는 「기업체」단위로도 조사하고 있다 「기업체」란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서 자율적으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다. 기업체 조사항목으로서 ①자본금 또는 출자금 ②유형자산 ③무형자산 ④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⑤결산마감월 ⑥본사관할 사업체현황 등이 있다

3.2. 기타 통계청의 서비스 관련 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이외에도 통계청에서는 서비스업 통계의 중요성 인식과 증가되고 있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의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도소매업통계조사 .년 승인 서비스업통계조사 .년 운수업통계조사 .년 도소매업동태조사(1988년 이후, 특히 .년부터 (1988년) 동태조사 .년(1977년) 전자상거래 사이버 .년(1982년) 전자상거래 기업체통계조사 .년 등의 신규통계(1999년)를 개발 작성해오고 있다(2000년), (2001년)

〈표 7〉 통계청의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통계명 (승인년도)	대상업종	주기 및 대상수	조사항목	주관부서
1.서비스업총조사 (1967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대상업종과 J통신업, K금융업, O 교육서비스업	매5년, 257만개 (전수조사)	사업체 개황, 종사자수, 사 업실적, 건물면적, 유·무형 자산, 기술연구개발비 등 28개 항목	서비스업 통계과
2.도소매업통계조사 (1988년)	G 도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매년, 78,000개 (표본조사)	사업체 개황, 영업월수, 영업 시간, 휴무일수, 종사자수 및 급여액, 건물면적, 사업실적 등 20개 항목	
3.서비스업통계조사 (1988년)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복지사업 Q 오락, 문화서비스업 R 수리, 개인서비스업		사업체 개황, 영업월수, 영업 시간, 휴무일수, 종사자수 및 급여액, 건물면적, 사업실적, 전산장비 보유현황 등 14개 항목	
4.운수업통계조사 (1977년)	I 운수업	매년, 7,200개 (표본조사)	사업체 개황, 종사자수 및 급여액, 운수수입 및 비용, 유형고정자산 등 10개 항목	
5.도소매업동태조사 (1982년)	G 도소매업	매월, 5,000개 (표본조사)	사업체 개황, 종사자수, 월간 판매액 등 조사표 종류(3종) 에 따라 4~7개 항목	서비스업 동향과
6.서비스업동태조사 (1999년)	H 숙박·음식점업~ R 수리, 개인서비스업 중N(공공,행정) 제외	매월, 5,000개 (표본조사)	사업체 개황, 종사자수, 월간 매출액 등 조사표 종류(12종) 에 따라 6~8개 항목	
7.전자상거래사이버 쇼핑몰조사(2000 년)	전자상거래(B2C)를 주요하는 사업체	매월, 4,000개 (전수조사)	사업체 개황, 상품군별 매 출액, 지불결제수단 등 16개 항목	
8.전자상거래기업체 통계조사(2001년)	전자상거래(B2B) 유력 대기업 및 상장업체, 유력업종 업체 및 E-마켓플레이스 업체,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매월, 4,000개 (전수조사)	사업체개황, 거래실적, 지불 결제수단 등 조사표 종류(4 종)에 따라 8~17개 항목 ※ B2B, B2G로 구분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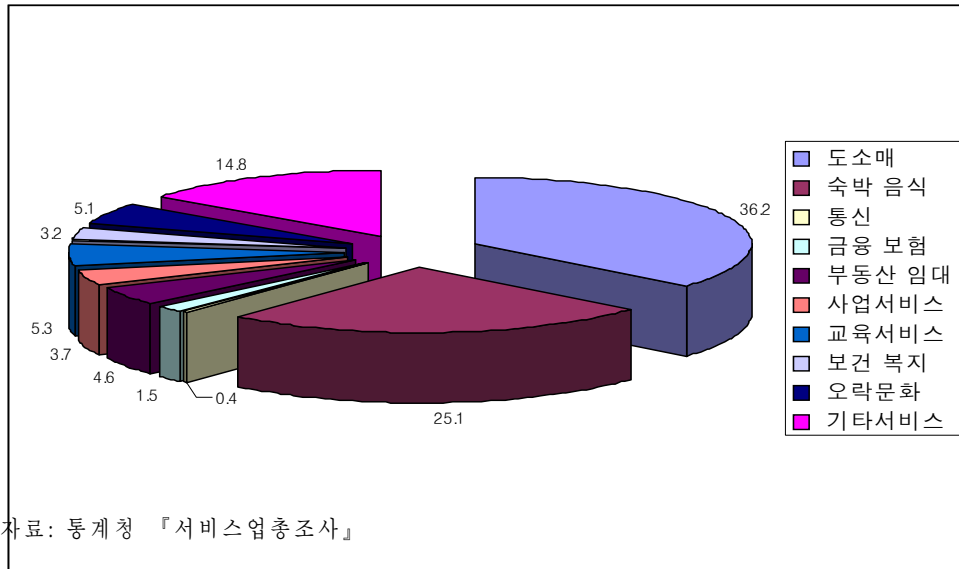
4. 서비스산업과 사회서비스

4.1. 산업별 사업체 분포

우리나라 서비스업총조사를 중심으로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서비스업의 산업적 특성과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손상익·이재형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228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세부산업별로 보면 86.4%의 경우 사회서비스로 분류되는 보건복지 부분은 2.2%로, 도소매업 5.1%, 숙박·음식점업 3.2%, 교육서비스업 3.7%, 오락·문화 4.6%, 운동관련산업 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0.4%, 등에 비해 비(5.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1%), (4.6%)

[그림 10] 서비스업의 산업대분류별 구성(2005년)

(단위 : %)



5)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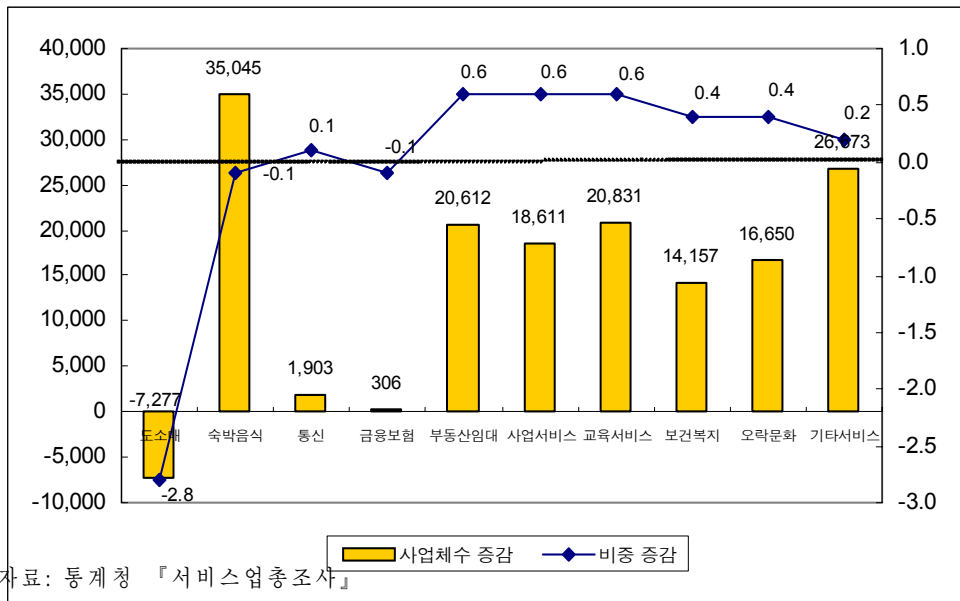
〈표 8〉 산업대 분류별 서비스 사업체수 (단위 : 개, %)

	2001	전체에 대한 비중	2005	전체에 대한 비중
도매 및 소매업	835,414	39.0	828,137	36.2
숙박 및 음식점업	539,558	25.2	574,603	25.1
통신업	7,125	0.3	9,028	0.4
금융 및 보험업	33,598	1.6	33,904	1.5
부동산 및 임대업	85,001	4.0	105,613	4.6
사업서비스업	65,615	3.1	84,226	3.7
교육서비스업	99,890	4.7	120,721	5.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9,947	2.8	74,104	3.2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	100,794	4.7	117,444	5.1
서비스업 전체	312,936	14.6	339,609	14.8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2,139,878	100.0	2,287,389	100.0

구성비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 부문이 포인트 증가했으며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분야가 포인트 늘어났고 오락문화 기타개인서비스 등이 늘어났다 반면에 0.6%업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0.4%) 숙박음식 분야는 (0.2%) 줄어들었고 도소매 분야는 포인트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8%

[그림 11]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 증감 (2001-2005)

(단위: 개, %포인트)



서비스산업은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기능적 성격을 기준으로 개인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personal services), (producer services), (distributive services),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 체계는 학자마다 달리 구분되고 있다. 우선, 유통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보관, 통신업이 포함되며, 생산자서비스에는 금융보험, 부동산, 엔지니어링, 건축서비스, 회계, 법률, 사업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서비스에는 의료, 보건, 교육, 사회복지 및 종교, 비영리기관, 우편, 공공행정 등이 포함되며, 개인서비스에는 가사서비스, 숙박 및 음식, 수리서비스, 영화 및 연예, 기타오락서비스, 기타 대개인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유통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를 상품생산과 관련된 생산관련서비스 분야로,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생산과정의 중간재로 투입되거나 직접적인 소비재로 이용되는 소비관련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는 생산관련 서비스와 소비관련 서비스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ingelmann

이에 따라 Scharpf은 서비스 I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 II (운수·보관, 통신·우편), 서비스 III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서비스 IV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 서비스 I은 유통서비스, 서비스 II는 물류통신서비스, 서비스 III은 생산자서비스, 서비스 IV는 사회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의 분류는 Singelmann의 분류와 비슷하나 가장 큰 차이는 숙박음식점을 개인서비스가 아닌 유통서비스로 분류되고 있고 지역사회 또는 대개인서비스는 사회서비스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유통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는 생산관련서비스로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소비관련서비스로 구분하였다.

<표 9> 서비스산업 분류체계

분류	ISIC Rev.3	해당 산업
Scharpf (1990)	서비스 I (유통)	50~55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 II (물류통신)	60~64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보관 통신 및 우편
	서비스 III (생산자)	65~74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서비스 IV (사회)	75~9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 보건·사회복지, 가사서비스, 기타 지역사회 및 대개인서비스
분류	ISIC Rev.2	해당 산업
Singelmann (1978)	유통서비스	61~62, 71~72 도매 및 소매 운수·보관, 통신
	생산자서비스	81~83 금융보험, 부동산, 엔지니어링·건축서비스, 회계, 법률,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72,91,93 의료보건, 교육, 사회복지 및 종교, 비영리기관, 우편, 공공행정
	개인서비스	63,94~95 가사서비스, 숙박 및 음식, 수리서비스, 영화 및 연예, 오락서비스, 기타 대개인서비스

자료: Schettkat, R., and L.Yocarini (2003), D'Agostino, A., R.Serafini, M.Ward(2006)

Scharpf의 분류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서비스 I 유통서비스가 전체의 61.3%(140,27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 IV(사회서비스)가 28.5%(65,187)개, 서비스 III(생산자서비스)가 9.8%(22,373)개의 순으로 많고 서비스 II(물류통신서비스)는 0.4%(9,028)개에 불과하다.

또한 2001~2005년의 기간 동안 유통서비스는 64.3%로 줄어든 반면 사회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와 물류통신서비스를 합친 생산관련 서비스 분야는 동기간 동안 8.9%에서 10.2%로 늘어났고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IV도 2001-2005년 기간 동안 26.8%에서 28.5%로 높아졌다. 이 서비스 분야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지역사회 및 대개인서비스 등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교육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와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사업유형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단위: 개, 명, 10억원)

년	유통		물류통신		생산자		사회 IV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05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1,402,740	61.3	9,028	0.4	223,743	9.8	651,878	28.5	2,287,389	100.0
매출액	3,952,402	43.5	135,527	1.5	2,025,394	22.3	2,978,526	32.8	9,091,849	100.0
년	551,134	45.1	50,438	4.1	464,762	38.1	154,765	12.7	1,221,099	100.0
2001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1,374,972	64.3	7,125	0.3	184,214	8.6	573,567	26.8	2,139,878	100.0
매출액	3,787,743	47.1	148,825	1.9	1,628,473	20.2	2,477,650	30.8	8,042,691	10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461,562	48.7	35,890	3.8	342,861	36.2	108,080	11.4	948,393	100.0

〈표 11〉 시도별·산업 대분류별 사업체수의 구성비 매트릭스(단위: %)

서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부산	25.7	25.7	19.3	19.1	23.1	24.0	23.9	24.5	30.3	29.1
대구	9.1	8.9	8.4	8.1	7.0	6.4	8.4	8.4	7.6	7.2
인천	5.9	5.7	5.4	5.2	3.8	4.0	5.1	5.1	4.8	4.4
광주	4.3	4.4	4.6	4.6	3.4	3.5	4.0	4.0	5.6	5.2
대전	3.0	3.0	2.8	2.7	3.0	2.9	3.3	3.4	2.8	2.4
울산	3.0	2.9	2.9	2.7	3.1	2.9	3.1	3.0	3.0	2.9
경기	1.9	1.9	2.3	2.4	1.5	1.5	1.9	1.9	1.5	1.6
강원	14.4	15.9	16.5	17.9	13.5	13.0	14.1	15.1	22.2	25.6
충북	3.6	3.5	5.2	5.4	5.2	5.1	4.2	3.8	2.7	2.9
충남	3.1	2.9	3.6	3.4	3.5	3.5	3.6	3.3	2.3	2.4
전북	4.0	4.0	4.4	4.6	4.7	5.2	4.2	4.1	2.9	3.3
전남	4.1	4.0	3.8	3.5	5.4	5.5	4.2	4.0	2.8	2.5
경북	4.6	4.3	4.7	4.3	6.7	6.9	4.8	4.5	2.4	1.7
경남	5.7	5.4	7.1	6.8	7.4	6.6	6.6	6.3	3.4	3.0
제주	6.3	6.2	7.6	7.8	7.3	7.8	6.9	6.9	4.8	5.1
전국	1.3	1.3	1.6	1.6	1.3	1.3	1.7	1.6	0.8	0.8
수도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4.4	46.0	40.4	41.6	40.0	40.5	42.0	43.6	58.1	59.9
서울										
부산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대구	39.2	40.3	19.4	18.2	23.7	22.9	22.9	22.3	19.1	18.7
인천	7.7	7.5	7.7	7.3	8.1	7.2	8.2	7.6	8.4	8.3
광주	5.2	5.1	5.6	5.9	5.6	5.3	5.8	5.6	5.7	5.6
대전	3.5	3.3	4.2	4.0	4.6	4.3	5.0	5.2	4.7	4.7
울산	3.4	3.2	3.6	3.9	2.8	3.0	3.5	3.7	3.3	3.4
경기	3.4	3.0	3.1	3.0	3.4	3.4	3.0	3.0	3.1	3.0
강원	1.8	1.8	2.6	2.8	2.0	2.1	2.4	2.5	2.0	2.1
충북	13.4	15.0	18.3	19.8	18.1	20.7	17.6	20.0	16.7	18.1
충남	2.5	2.5	3.7	3.6	3.3	3.1	3.6	3.5	3.9	3.8
전북	2.5	2.3	3.4	3.4	3.1	3.1	3.0	3.0	3.5	3.5
전남	2.6	2.6	4.1	4.0	3.9	3.9	3.5	3.6	4.6	4.6
경북	3.0	2.5	4.8	4.7	4.3	4.2	4.0	3.4	4.8	4.7
경남	2.6	2.1	4.6	4.3	4.0	3.9	4.0	3.5	5.1	4.9
제주	3.7	3.4	6.1	6.1	5.6	5.3	5.8	5.4	6.7	6.5
전국	4.6	4.3	7.4	7.6	6.4	6.3	6.5	6.3	6.9	6.9
수도권	0.9	0.9	1.4	1.3	1.3	1.4	1.2	1.3	1.4	1.3
주: 색칠한 부분은 2001-2005년 기간 동안 산업별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	36.1	38.6	41.9	42.0	46.4	47.9	45.5	47.5	40.5	41.5

보건복지서비스업 (1.3%) 포인트가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2.4%) 포인트은 크게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는 도소매업 분야가 -2.8% 포인트 감소되었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0.6%, 0.6% 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2. 창설년도별 분포와 사업체 생존

이 절에서는 년도와 년도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창설년도별 사업체수의 분포를 살펴보고 2001년 기준 2005년에서 보면 창설년도를 기준으로 년전 창설 년전 창설의 분류로 사업체수가 구분되어 있다 즉 년 기준일 경우 1년전 창설은 2년에 연도인 년에 년전 창설은 년에 년전 창설은 년에 0창설된 사업체수이다 또한 2001년 기준일 경우 2000년 창설은 2년에 연도인 1999년에 년전 창설은 년에 년전 창설은 년에 0창설된 사업체수이다 2005년 기준일 경우 년전인 2004년 당해연도 창설된 2003년 사업체수는 만 개이며 2004년인 년에 창설된 사업체 2005년 만 개 년전인 년에 36창설된 485사업체수만 2004년 전인 년에 30창설된 429사업체수는 2003년 개 년이상 전에 창설된 사업체수는 2002만 개 로 조사되었다 5,583 (9.8%), 10 50 7,713 (22.2%)

<표 12> 창설년도별 사업체수 (단위:개,%)

합계	2001	구성비	2005	구성비	증감률 ('01~'05)
년전 창설	2,139,878	100.0	2,287,389	100.0	6.9
0년전 창설	411,814	19.2	362,485	15.8	-12.0
1년전 창설	315,222	14.7	301,429	13.2	-4.4
2년전 창설	241,431	11.3	252,973	11.1	4.8
3년전 창설	170,626	8.0	224,583	9.8	31.6
4년 이상 전 창설	147,335	6.9	157,684	6.9	7.0
합계	429,422	20.1	480,522	21.0	11.9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424,028	19.8	507,713	22.2	19.7

또한 2005년의 경우 당해년도에 창설된 사업체수는 총사업체수의 15.8%이며 이는 창업률에 해당한다. 4년전인 2001년의 19.2%와 비교해보면 4년전에 비해 창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전에 비해 4년이상된 사업체수가 10%나 많고 4년이상된 사업체수도 19.7%나 많아 사업체의 생존기간이 4년전에 비해 31.6% 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4년 기준으로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에서 2005년 가 넘는 창업률을 보였다. 표 참조, 4년전과 비교해보면 모든 산업에서 창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4년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4년 총조사시 당해 연도에 창설한 사업체수 개인에 비해 4년 총조사시 2001년 창설한 사업체수는 4개로 나타났다. 41,814라서 지난 2005년 4개의 사업체가 소멸하였고 생존 57,684체는 4개이므로 서비스업 사업체 41,130년 생존률은 38.3%로 추산된다. 157,684

<표 13>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창업률 및 4년 생존률(단위:개,%)

	2004년 사업체 창업률			2005년 사업체 창업률			생존률 (b/a)	
	창설 2001 (a)			창설 2005	창설 2001 (b)			
G	137,265	835,414	16.4	108,008	57,658	828,137	13.0	42.0
H	145,855	539,558	27.0	121,568	41,809	574,603	21.2	28.7
J	964	7,125	13.5	1,064	503	9,028	11.8	52.2
K	3,335	33,598	9.9	2,734	1,693	33,904	8.1	50.8
L	17,393	85,001	20.5	21,352	6,180	105,613	20.2	35.5
M	12,331	65,615	18.8	11,339	6,661	84,226	13.5	54.0
O	17,794	99,890	17.8	21,183	7,866	120,721	17.5	44.2
P	7,776	59,947	13.0	8,303	5,146	74,104	11.2	66.2
Q	25,722	100,794	25.5	27,508	8,093	117,444	23.4	31.5
전체	43,379	312,936	13.9	39,426	22,075	339,609	11.6	50.9

주: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음료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서비스업), O(교육업), P(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Q(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사업체 생존률을 살펴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문이 66.2%로 생존률이 가장 높고 사업서비스 (54.0%), 통신업 (52.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0.9%), 교육서비스업 (44.2%), 도소매업 (42.0%) 등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생명이 활발한 타 서비스업종에 비해 사회서비스 부문의 기업 혹은 공급기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표 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창설년도별 사업체 구성비를 업종별로 구분본 것이다. 표에서 보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 전년에 창설한 사업체수는 전체의 를 차지한 반면 년이상된 사업체는 (2005)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업종의 사업체들은 생존주기가 매우 짧다 숙박 8.2% 식점업도 전년에 창설한 사업체는 전체의 를 차지하며 년이상 전에 창설한 사업체는 0 에 지나지 않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도 전년에 창설한 사업체는 로 높고 11.5% 이상 경과한 사업체는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 , 10 19.9%

<표 14> 2005년 기준 산업 대분류별 창설년도별 사업체 구성비(단위:%)

	0 창설 (2005)	1 창설 (2004)	2 창설 (2003)	3 창설 (2002)	4 창설 (2001)	5~9 창설 년전	10 전 창설 년이상	계
G	13.0	11.3	9.6	9.0	7.0	23.5	26.6	100.0
H	21.2	16.8	13.7	11.6	7.3	18.0	11.5	100.0
J	11.8	9.5	8.6	7.5	5.6	17.5	39.6	100.0
K	8.1	6.9	6.3	6.7	5.0	20.8	46.2	100.0
L	20.2	14.6	13.2	9.7	5.9	16.5	19.9	100.0
M	13.5	12.4	10.8	9.9	7.9	25.2	20.3	100.0
O	17.5	13.6	11.3	9.7	6.5	18.1	23.2	100.0
P	11.2	11.0	9.8	9.4	6.9	22.4	29.2	100.0
Q	23.4	18.8	14.1	11.8	6.9	16.8	8.2	100.0
평균	11.6	10.4	9.3	8.6	6.5	22.8	30.7	100.0

주: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R(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T(부동산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반면에 금융·보험업의 경우 2005 당해 연도에 창설한 기업체수는 전체의 8.1%에 불과한데 비해 10년 이상된 사업체는 46.2%에 달하고 있어 이 업종의 사업체들은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된 사업체 비중은 높은 업종은 통신업 (39.6%)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0.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9.2%) 등으로 분석된다

5. 고용과 생산성

5.1 고용형태와 인력구조

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종사자수는 만 명으로 전산업의 200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서비스업이 4849인 (6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부문은 를 차지했다 114의 26.0%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7.0%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3.1%,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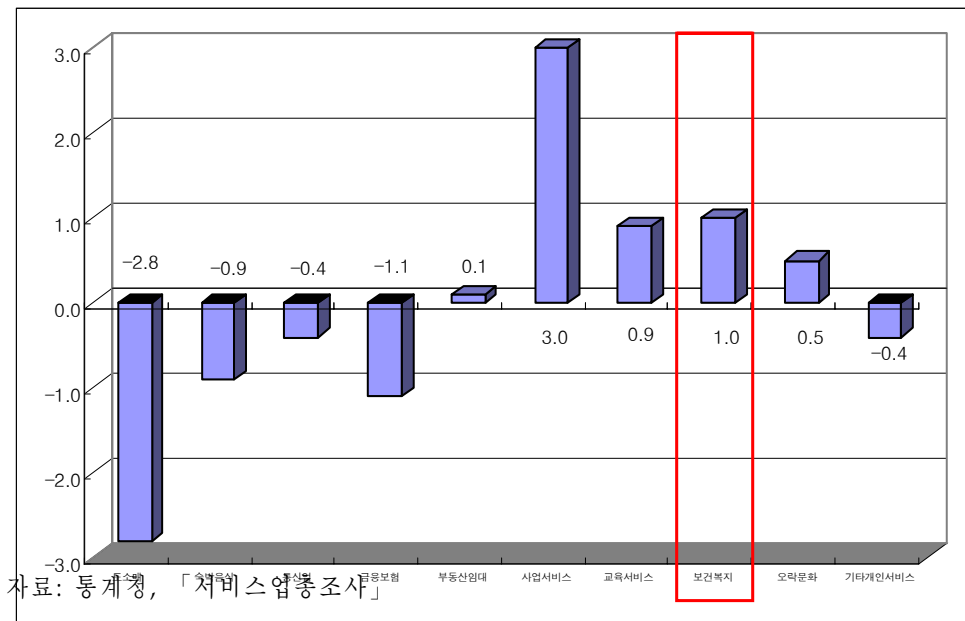
<표 15>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수(단위: 명,%)

	전체에 대한 비중		전체에 대한 비중		종사자수 증감
	2001		2005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2,318,858	28.8	2,366,455	26.0	47,597
통신업	1,468,885	18.3	1,585,947	17.4	117,062
금융 및 보험업	148,825	1.9	135,527	1.5	-13,298
부동산 및 임대업	608,684	7.6	588,080	6.5	20,604
사업서비스업	330,135	4.1	385,147	4.2	55,012
교육서비스업	689,654	8.6	1,052,167	11.6	362,5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84,985	12.2	1,189,784	13.1	204,799
오락 문화 운동관련 서비스	480,706	6.0	638,774	7.0	158,068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	289,989	3.6	370,383	4.1	80,394
서비스업 전체	721,970	9.0	779,585	8.6	57,615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종조사』	8,042,691	100	9,091,849	100	1,049,158

2005년을 2001년의 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4년동안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수는 15만 8,068명이 증가하였고 사업서비스분야가 36만 2,513명 교육서비스 분야도 20만 4,799명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통신업 분야는 36만 2,51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보험업 분야도 2만여명의 증가에 그쳤다

[그림 12]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중의 증감폭 (2001~2005년)

(단위:%포인트)



서비스산업 종사자를 성별로 보면 2001년에 남자가 50.4% 여자가 49.6% 였으나 2005년에는 남자 49.2% 여자 50.8% 로 역전된 현상으로 보였다 여성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또한 2001-2005년 기간동안 남성의 종사자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여성 비율은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되어 여성의 활동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서비스업의 성별 종사자 수(단위: 천명, %)

	남					여				
	2001	비율 (A)	2005	비율 (B)	B-A	2001	비율 (A)	2005	비율 (B)	B-A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1,271	54.8	1,293	54.6	-0.2	1,048	45.2	1,074	45.4	0.2
통신업	483	32.9	511	32.2	-0.7	986	67.1	1,075	67.8	0.7
금융 및 보험업	110	73.9	96	70.7	-3.2	39	26.1	40	29.3	3.2
부동산업 임대업	288	47.3	278	47.3	0.0	321	52.7	310	52.7	0.0
사업서비스업	244	73.9	270	70.1	-3.8	86	26.1	115	29.9	3.8
교육서비스업	472	68.4	696	66.2	-2.2	218	31.6	356	33.8	2.2
보건 사회복지사업	420	42.7	463	39.0	-3.7	565	57.3	726	61.0	3.7
오락·문화관련산업	148	30.9	181	28.3	-2.6	332	69.1	458	71.7	2.6
기타개인서비스업	190	65.7	226	61.0	-4.7	99	34.3	144	39.0	4.7
서비스업 전체	428	59.3	459	58.9	-0.4	294	40.7	320	41.1	0.4
주: *비율은 남녀 전체에 대한 50.4%	4,473	49.2	-1.2	3,987	49.6	4,619	50.8	1.2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5.2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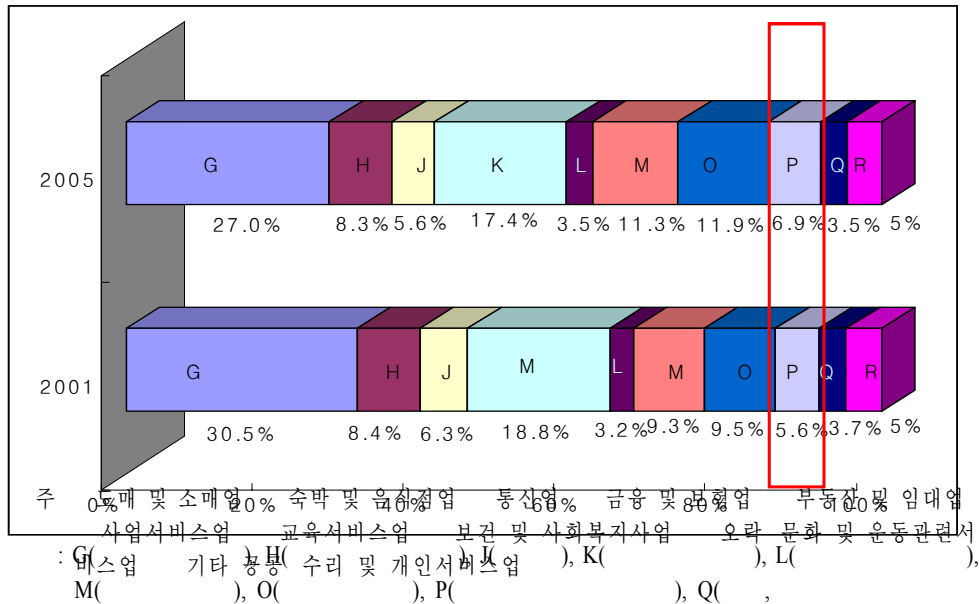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서비스업총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한 후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한 사람이 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부가가치 (labor productivity) 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 (value added) 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stakeholders) 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가가치는 창출 측면과 분배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배측면에서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결과의 영업이익 인건비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대손상각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우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액은 년 기준으로 약 조 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서비스업 조 억원 차지했고 도소매업은 총 조 억원 차지했다.

6) 한국은행의 '부가가치' 정의에 의거함(『기업경영분석』 참조). 이 '부가가치' 정의에는 순금융비용이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며, 경상이익 대신 영업이익으로 추산함.

9,260 억원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0%로 4년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다 그다음 금융보험업이 17.4%, 교육 서비스업이 11.9%, 숙박음식점업이 8.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6.9%, 통신업이 5.6%,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이 5.0%, 오락, 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은 3.5%, 부동산 및 임대업은 3.5%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림 13] 산업 대분류별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액을 종사자수로 나눈 노동생산성을 보면 통신업은 141.8로 단연 가장 높은 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금융 및 보험업도 100.9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업종은 각각 연평균 5.1%, 4.3%의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여타 서비스업종은 이에 비해 17.7 또는 20.2 수준에 불과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1/3 ~ 1/4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30.38에 불과하고 기타 개인서비스 분야에서도 17.7의 낮은 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7> 산업 대분류별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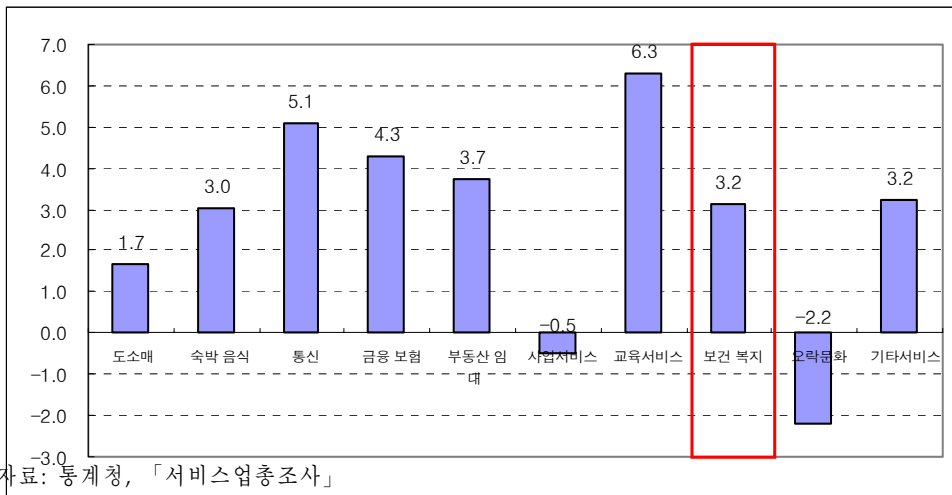
	부가가치 (억 원)		종사자수 (천명)		노동생산성 (백만 원 / 명)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84,325	91,926	2,319	2,366	36.4	38.8
통신업	23,147	28,147	1,469	1,586	15.8	17.7
금융 및 보험업	17,307	19,213	149	136	116.3	141.8
부동산 및 임대업	51,971	59,363	609	588	85.4	100.9
사업서비스업	8,732	11,790	330	385	26.4	30.6
교육서비스업	25,732	38,535	690	1,052	37.3	36.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271	40,503	985	1,190	26.7	34.0
오락 문화 운동관련서비스업	15,579	23,439	481	639	32.4	36.7
기타 공공숙리 및 개인서비스	10,287	12,018	290	370	35.5	32.4
서비스업 전체	12,851	15,756	722	780	17.8	20.2
주: 부가가치액=영업이익+인건비+과세이익	276,201	340,890	8,043	9,092	34.3	37.5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이 연평균 1.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통신 1.1%, 금융보험 0.9%, 부동산 및 임대업 0.8%,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오락문화서비스업(4.3%)은 사업서비스업(3.7%) 분야는 감소세를 보였고 도소매 분야도 0.2%의 부진한 증가율을 보였다.

종사자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1인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의 36.0%로 증가하며 10인 이상의 중기업은 36.0%로 증가하고 1인 이하의 소기업은 27.3%로 감소하였다. 기업당 부가가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12.8%(43,652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1만 원에 달하지만 인미만의 영세기업은 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기업 → 3,890억 원의 비중이 4% 소폭 감소한 반면 중기업 (36.8% → 36.0%) 과 소기업 (23.4% → 22.4%) 의 비중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3% → 28.8%) (12.5% → 12.8%)

[그림 14]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2001~2005년)

(단위 : %)



<표 18> 산업 대분류별 부가가치증가율과 고용증가율 (2001~2005년)

부가가치증가율 (단위: 연평균 %)

산업 대분류	부가가치증가율 (%)	고용증가율 (%)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2.2	0.5
통신업	5.0	1.9
금융 및 보험업	2.6	-2.3
부동산 및 임대업	3.4	-0.9
사업서비스업	7.8	3.9
교육서비스업	10.6	1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4	4.8
오락 문화 운동관련서비스업	10.8	7.4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0	6.3
서비스업 전체	5.2	1.9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5.4	3.1

한편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의 2001 ~ 2005년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여 함께 비교해 보면 표 과 같다 부가가치증가율과 고용증가율 모두 서비스업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18> 업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이것은 해당업종이 '고속성장업종임과' 동시에 고용성장형 업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업과 RMADBD 및 보험업은 부가가치증가율과 고용창출능력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

5.3. 인건비

서비스산업의 인당 인건비는 통신업이 연 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보험업도 연 만원에 달하여 이 4,125종이 고임금 업종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숙박음식점업은 만원에 불과하고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분야와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 543야는 만원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산업간 인건비 차이는 ~ 배의 격차를 1,000이 고 있다

4 8

<표 19> 종사자 1인당 인건비 인건비 억원 종사자수 천명 인당 인건비 천원

	(10)		()		1 ()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21,100	27,280	2,319	2,366	9,099	11,528
통신업	6,802	8,613	1,469	1,586	4,631	5,431
금융 및 보험업	4,969	5,591	149	136	33,387	41,250
부동산 및 임대업	16,298	22,613	609	588	26,776	38,453
사업서비스업	3,617	4,877	330	385	10,958	12,663
교육서비스업	14,420	24,586	690	1,052	20,909	23,36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618	32,520	985	1,190	22,963	27,332
오락 문화 운동관련서비스업	8,583	13,766	481	639	17,855	21,550
기타 개인서비스	2,777	3,941	290	370	9,576	10,640
서비스업 전체	5,449	7,394	722	780	7,548	9,485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151,800명 8,043억 원, 교육서비스업 1,000명 1,538억 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00명 1,000억 원,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00명 1,000억 원
 : G(), H(), J(), K(), L(), M(), O(), P(), Q(), R()

〈표 20〉 산업 대분류별 시도별 1인당 인건비 (2005년) (단위: 백만원)

	합계	G	H	J	K	L	M	O	P	Q	R
전국	16.63	11.53	5.43	41.25	38.45	12.66	23.37	27.33	21.55	10.64	9.48
서울	21.00	17.11	7.66	39.82	47.41	14.97	25.47	27.61	24.99	13.19	11.18
부산	14.84	9.79	4.82	46.66	34.15	12.61	18.85	27.91	21.87	7.92	8.29
대구	14.16	9.09	4.15	44.84	32.51	11.78	17.57	25.74	22.01	8.28	7.61
인천	14.28	9.52	4.80	35.53	33.42	11.32	19.12	26.70	18.92	6.83	9.91
광주	15.54	10.22	4.86	43.72	32.30	12.07	18.03	28.20	20.85	8.10	8.80
대전	17.19	10.66	5.13	55.44	35.00	10.99	26.92	28.36	19.97	10.45	8.96
울산	14.43	9.63	4.23	41.35	34.16	10.25	21.06	23.70	19.18	7.24	9.22
경기	15.56	10.88	5.54	42.97	36.89	11.96	24.11	25.09	19.60	10.70	10.84
강원	14.09	7.02	4.66	41.73	30.69	9.29	18.12	28.87	22.70	17.40	8.38
충북	14.50	7.07	4.49	39.93	31.22	13.75	19.19	29.24	19.59	8.46	9.00
충남	14.14	7.00	4.52	37.36	33.63	8.78	18.73	29.17	19.47	9.22	8.89
전북	14.53	7.15	4.45	37.95	31.58	10.65	15.72	29.16	20.65	8.49	7.47
전남	14.13	6.31	3.65	35.80	30.08	10.24	19.70	30.71	20.52	8.72	8.92
경북	14.08	6.70	3.99	39.23	32.82	9.32	21.90	29.39	20.63	8.35	7.58
경남	13.66	8.14	3.95	36.13	31.65	10.86	19.73	26.28	21.05	7.79	8.03
제주	14.28	8.26	6.88	59.70	31.03	12.27	22.03	27.67	17.82	13.14	7.79
자료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종조사」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만 보면 1인당 인건비가 21,550 원으로 서비스산업 종사자 전체의 평균 16,628 원에 비해서는 높지만 교육 서비스 27,332 원, 사업 서비스 23,367 원 등 유사(서비스) 분야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고용과 처우가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산업대분류별로 1인당 인건비의 연평균상승률을 산출해 보면 2001-2005년 기간동안 연평균 증가되었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연 9.5%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도소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통신업, 보건 및 복지, 교육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 순이며, 사업서비스업(4.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4.1%), 은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상승률을 보였다(2.8%), (2.7%)

6. 해외의 사회서비스 통계현황

6.1. 미국

미국의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와 북미산업 분류체계 (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의 가치로 크게 나뉘고 있다 (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2

표준산업분류

6.1.1.

년대 미 정부기관인 관리회계국 이 미국의 산업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개발하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년 간격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왔다 년에 같은 기관에서 1987 코드체계를 대표수정한 북미산업분류체계 . 1997 SIC 를 공개하면서 체계는 서서 (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미국 노동부 증권거래위원회 등과 NAICS 많은 주요 정부 기관과 공공조직에서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SIC

분류체계는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전체 산업은 알파벳 에서 까지 개의 부문 으로 나뉘며 각 부문은 다시 주요 집단 A 으로 나뉘는 때 전체 주요 집단 (division) 의 수는 개이다 각 주요 집단은 다시 산업집단 (major group) 으로 나누어지고 또 각 산업집단은 개별 산업 (industry group) 으로 나누어진다 코드는 자리수로 표시되며 이 숫자 또한 의 분류체계(SIC)에 맞게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첫째 자리는 부문을 둘째 자리는 주요 집단을 셋째 자리는 산업집단을 넷째 자리는 개별 산업을 나타낸다 SIC

분류체계에서 사회서비스업 은 부문 서비스부문의 주요 집단 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표 (social service) I 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업은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 및 불우집단에게 사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여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나 관련 서비스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을 요청하는 조직도 SIC 83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중 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주요 집단 80() 건강서비스
 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산업 8111() 법률서비스로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은 주요 집단 82() 교육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

<표 21> SIC 산업부문

부문	해당 산업
A	농업, 임업, 어업
B	광업
C	건설업
D	제조업
E	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서비스업
F	도매업
G	소매업
H	금융/보험/부동산업
I	서비스업
J	공공행정업

<표 22> SIC 서비스업 부문 주요 산업집단

70	호텔, 캠프 등 숙박
72	개인 서비스
73	비즈니스 서비스
75	자동차 수리, 주차
76	기타 수리 서비스
78	영화
79	놀이, 여가 서비스
80	건강 서비스
81	법 서비스
82	교육 서비스
83	사회서비스
84	박물관, 화랑, 식물원, 동물원 관련 서비스
86	회원제 조직
87	공학, 회계, 연구, 관리 관련 서비스
88	개인 주택
89	기타 서비스

<표 23> SIC 사회서비스 산업집단 및 산업

산업집단 코드	해당 산업집단	소속 산업 코드 및 종류
832	개인 및 가족 사회서비스	8322: 개인 및 가족 사회서비스
833	직업 훈련 및 재취업 서비스	8331: 직업 훈련 및 직업 재활서비스
835	아동 보육 서비스	8351: 아동 보육 서비스
836	거주형 보호	8361: 거주형 보호
839	기타 사회서비스	8399: 기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업은 개인 및 가족 사회서비스 직업 훈련 및 재취업 서비스 아동 보육 서비스 거주형 보호 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의 가지 산업집단으로 나뉘며 각 산업집단은 동일한 명칭을 가진, 개씩의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참조

1

(< 23>).

개인 및 가족 사회서비스

6.1.1.1

에 따르면 개인 및 가족 사회서비스업은 난민(SIC)에 난 구호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Individual and Family Social Services) 복지 소개 서비스의 제공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 산업은 상담, 소개, 기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도 포함한다 복지 원조, 식량카드, 집세 보조, 케이스워크의 지급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개인과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정부 기관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국은 공공행정업의 산업 사회적 및 인적 자원과 소득 유지 프로그램 행정로 분류되어 있다 직업 재활이나 상담의 제공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은 산업 직무 훈련 및 직업 재활서비스로 친목 시립 사회 단체는 산업 친목 시립 사회 단체로 분류되어 있다 8331() 8641() 개인 및 가족 사회서비스에 포함된 세부 산업은 다음과 같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활동센터

입양 서비스

- 성인보호 센터 (activity centers, elderly or handicapped)

- (adoption services)

- (adult day care centers)

- 아동부양가족 지원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
- 의료치료를 제외한 비거주형 알코올중독 상담 (alcoholism counseling, nonresidential: except medical treatment)
- 노인센터 (centers for senior citizens)
- 어린이 지도센터 (child guidance agencies)
- 지역사회 센터 (community centers)
- 상담 센터 (counseling centers)
- 위기 센터 (crisis centers)
- 위기 개입 센터 (crisis intervention centers)
- 성인 및 장애인 보호 센터 (day care centers, adult and handicapped)
- 재난 서비스 (disaster services)
- 긴급 쉼터 (emergency shelters)
- 가족 상담 (family counseling services)
- 가족 찾아주기 (family location services)
- 가족 서비스 기관 (family service agencies)
- 비의료형 위증서비스 (helping hand services)
- 핫라인 (homemaker's services, primarily nonmedical)
- 결혼 상담서비스 (marriage counseling services)
- 식사 배달 프로그램 (meal delivery programs)
- 근린 복합서비스 센터 (neighborhood centers)
- 근린센터 (neighborhood centers)
- 범죄자 재활기관 (offender rehabilitation agencies)
- 범죄자 자조기관 (offender self-help agencies)
- 노인 지원 (old age assistance)
- 아웃리치 프로그램 (outreach programs)
- 가석방 기관 (parole offices)
- 보호관찰 기관 (probation offices)
- 공공복지 센터나 기관 (public welfare centers, offices of)
-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를 위한 소개서비스 (referral services for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 난민서비스 (refugee services)
- 일시적 구호서비스 (relief services, temporary)
- 알코올중독자와 도박중독자를 위한 자조 조직 (self-help organizations for alcoholics and gamblers)
- 노인 단체 (senior citizens associations)
- 서비스 연맹 (service leagues)
- 인보관 (settlement houses)
- 사회서비스 센터 (social service centers)
- 전화상담 센터 (telephone counseling service)
- 여행자 지원 센터 (traveler's aid centers)
- 청년 자조조직 (youth centers)
- (youth self-help organizations)
- 직업 훈련 및 직업 재활서비스

6.1.1.2

에 따르면 직업 훈련 및 직업 재활서비스

SIC 업은 실업자, 불안전취업자, 장애인, 그리고 (job training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인력시장에서 불리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력훈련과 직업 재활 및 교육 서비스의 제공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 산업은 직업 업그레йд 및 개발 서비스, 기술훈련, 직업세계에 대한 지향, 직업재활 상담도 포함한다. 또한 이 산업은 재활과 직업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기관과 재활자의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직업 훈련 및 직업 재활서비스에 포함된 세부 산업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서비스 취업훈련 프로그램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 직업 상담 (job counseling)
- 직업 훈련 (job training)
- 인력 훈련 (manpower training)
- 직업 재활 상담과 훈련 (rehabilitation counseling and training, vocational)
- 보호작업장 (sheltered workshops)
- 기술훈련센터 (skill training centers)

- 직업재활 기관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 직업재활 상담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ing)
- 학교 이외의 직업훈련 기관 (vocational training agencies, except schools)
- 직무경험 센터 (work experience centers)

아동 보육서비스

6.1.1.3.

에 따르면 아동 보육서비스 업은 의료관리나 일탈자 교정 업무가 아닌 시설로 유아나 아동의 보살핌 또는 유치원 취학전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교육 본래의 프로그램을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이 시설은 일반적으로 취학전 아동을 돌보지만 방과후의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다 아기봐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산업 기타 개인서비스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유치원은 산업 초중등(2299)로 분류되어 있다 , 8211(

아동 보육서비스에 포함된 세부 산업은 다음과 같다

- 아동 보호센터
- 아동 보육 센터(child care centers)
- 집단 아동 보호 센터 (day care centers, child)
- 학교와 연계되지 않은 유치원 (group day care centers, child)
- 보육원 (head start centers, except in conjunction with schools)
- 취학전 센터 (nursery schools)
- (preschool centers)
- 거주형 보호

6.1.1.4.

에 따르면 거주형 보호 업은 의료관리가 주 업무가 아닌 시설로 아동 노인 자신을 돌보는 능력에 있어 한계가 있는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거주형 사회적 및 개인적 보호를 제공해주는 데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어린이를 '위해' 년 일 시간 보호를 제공해주는 시설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학교는 산업 초중등학교로 간호와 건강관련 개인적 보호를 제공해주는 데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은 산업집단 간호 및 개인적 보호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8211() , 805()

거주형 보호업에 포함된 세부 산업은 다음과 같다

-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거주형 알코올중독 재활센터
(alcoholism rehabilitation centers, residential: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다량아수용소 (boys' town)
- 아동 기숙가정 (children's boarding homes)
- 어린이집 (children's home)
- 어린이 마을 (children's villages)
- 부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거주형 약물 재활센터
(drug rehabilitation centers, residential: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집단 위탁 가정 (group foster homes)
-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중도 집단가정
(halfway group homes for persons with social or personal problems)
- 부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halfway homes for delinquents and offenders)
- (homes for children, with health care incidental) 위한 집
- 부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노숙인용 집 (homes for destitute men and women)
- (homes for the aged,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부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청각이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집
(homes for the deaf or blind,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부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정신 장애인을 위한 집
(homes for the emotionally disturbed,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부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집
(homes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homes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청소년 교정을 위한 집 (juvenile correctional homes)
- 노병을 위한 집 (old soldiers' homes)
- 고아원 (orphanages)
- 부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거주형 재활센터
(rehabilitation centers, residential:

- with health care incidental)
부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요양소 (rest homes,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조 집단가정 (self-help group homes for persons with social or personal problems)
- 일탈자를 위한 훈련학교 (training schools for delinquents)

기타 사회서비스

6.1.1.5.

에 따르면 기타 사회서비스 업은 지역사
회 SIC (social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회
주요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신들을 위한 기부를 부탁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에 종사하는 다른 기관들의 경비를 관리하고 이들에게 기금을 할당하는 데 종사하
는 조직도 포함된다 하지만 재단과 자선기금은 금융산업 교육적 종교적 자선
적 기금 로 분류된다. 시립 사회 친목 조직은 산업 시 632(사회 친목 단체)로 분
류되며 계약위주로 기금을, 모집하는 시설은 산업 864(기타 비즈니스서비스)로 분류
된다 7389()

기타 사회서비스에 포함된 세부 산업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단체
- 반빈곤 협회 (advocacy groups)
- 지역사회 행동 기관 (antipoverty boards)
- 지역사회 구제기금 (community action agencies)
- 지역사회 개발 단체 (community chests)
- 사회 기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빈곤을 위한 협회 (community development groups)
- 계약이나 수수료에 기초하지 않는 기금모집 조직 (councils for social agencies, exceptional children, and poverty)
- 건강과 복지 협회 (fundraising organizations, except on a contract or fee basis)
- 건강체계 기관 (health systems agencies)
-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역계획 조직 (health systems agencies)
- 사회변화 단체 (regional planning organizations, for social services)
- (social change associations)

- 알코올중독, 약물중독과 같은 사회서비스정보 교환 (social service information exchanges: e.g. alcoholism, drug addiction)
- 연합 기금 협회 (united fund councils)

6.1.2. 북미산업분류체계

북미산업분류체계 (NAICS)는 북미지역의 경제활동을 분류하고 측정하며 또한 통계계에 있어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협력하여 발전시킨 산업분류체계이다. 현재 미국의 정부기관과 기업은 기존의 SIC 대신에 NAICS를 점차 많이 사용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NAICS (United Nations Statistical Office)의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에 의해 1992년 경제분석국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센서 (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 (Census Bureau)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ECP: Economic Classification Policy Committee)과 2년에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는 세 번째로 1997년 사용되고 있다. 2002년, 2007년

번호체계는 자리 숫자로 되어있다. 앞 자리 수는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에 공통되고, 마지막 번째 자리 수는 개별 나라의 특정 산업에 해당된다. 앞의 자리 수 가운데 첫 번째 6자리 수는 대산업 부문을 세 번째 수는 하위부문을, 2번째 수는 산업집단 (largest industry sector)을 나타낸다. (industrial group)을 나타낸다. (subsector), 대산업 부문은 총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서비스업은 7개와 달리 (particular industry)에서는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대신 SIC의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문은 건강 관리 및 사회지원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부문 코드 80-99에 속해 있다. (참조)

SIC (62) (< 24>)

〈표 24〉 NAICS 대산업 부문

부문 코드	산업 부문
11	농업, 임업, 어업, 수렵
21	광업
2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3	건설업
31-33	제조업
42	도매업
44-45	소매업
48-49	교통 및 창고업
51	정보업
52	금융 및 보험업
53	부동산 및 임대업
54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55	기업 관리업
56	행정, 지원,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서비스업
61	교육서비스업
62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업
71	예술, 오락, 레크리에이션업
72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
81	공공행정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
92	공공행정업

에 따르면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 부문은 개인에게 건강관리와 사회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 부문이 건강관리와 사회지원을 같이 포함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활동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문에 속한 산업은 의료 관리만을 전적으로 하는 산업에서부터 건강관리와 사회지원을 같이 제공하는 산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지원만을 제공하는 산업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부문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전달된다 이 부문의 모든 산업은 이러한 과정상의 공통성 다시 말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건강관련 종사자나 사회복지사의 노동투입이라고 하는 공통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이 부문의 많은 산업은 해당 산업에 포함된 종사자가 지닌 학위에 기초해서 규정된다 이 부문에 속하지 않는 유사 산업은 에어로빅산업 오락 도박 레크리에이션 산업 비의료 다이어트 및 체중감량 시설 개인 및 세탁 서비스업이다 비록 이들 산업이 건강서비스업으로 보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서비스 대부분이 건강 관련 전문종사자에 의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 부문에 속하지 않는다

〈표 25〉 NAICS 사회서비스 관련 부문 분류

코드	산업 하위부문	코드	산업집단	코드	특정산업	
623	간호 및 거주형 관리 시설	6231	간호관리 시설	6231 1	간호관리 시설: 간호 관리 시설 (623110)	
		6232	거주형 정신지체, 정신건강, 약물남용 시설 노인을 위한	6232 1	거주형 정신지체 시설: 거주형 정신지체 시설(623210)	
				6232 2	거주형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시설: 거주형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시설(623220)	
		6233	지역사회 관리 시설	6233 1	지속적인 은퇴자 관리 지역사회 (623311), 노인을 위한 가정(623312)	
		6239	기타 거주형 관리 시설	6239 9	기타 거주형 관리 시설: 기타 거주형 관리 시설(623990)	
624	사회지원	6241	개인 및 가족 서비스	6241 1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624110)	
				6241 2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624120)	
				6241 9	기타 개인 및 가족 서비스: 기타 개인 및 가족 서비스(624190)	
				6242 1	지역사회 식량서비스: 지역사회 식량서비스(624210)	
		6242	지역사회 식량, 주택, 긴급, 기타 구제 서비스	6242 2	지역사회 주택서비스: 임시 쉼터 (624221), 기타 지역사회 주택서비스(624229)	
				6242 3	긴급 및 기타 구제 서비스: 긴급 및 기타 구호 서비스(624230)	
		6243	직업 재활서비스	6243 1	직업 재활서비스: 직업 재활서비스 (624310)	
		6244	아동 보육서비스	6244 1	아동 보육서비스: 아동 보육서비스 (624410)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부문은 외래 건강관리서비스(ambulatory health care services) 부문 코드 (621), 병원 (hospitals) 부문 코드 (622), 간호 및 거주형 관리 시설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623), 사회지원 (social assistance) 부문 코드 (624) 의 4 개 하위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문은 간호 및 거주형 관리 시설 하위부문과 사회지원 하위부문이다 표 참조 (< 25>).

간호 및 거주형 관리 시설 하위부문

6.1.2.1.

간호 및 거주형 관리 시설 하위부문은 거주자가 요구하는 간호 감독 또는 다른 유형의 관리와 결합된 거주형 관리를 제공한다 이 부문의 시설은, 생산과정의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제공되는 관리는 상당한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지닌 건강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혼합체이다

간호 및 거주형 관리 시설 하위부문은 간호관리 시설 (nursing care facilities) 산업집단 코드 (6231), 거주형 정신지체 정신건강 약물남용 시설 (residential mental retard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facilities) (산업집단 코드 (6232), 기타 거주형 관리 시설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코드 (6233) 산업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other residential care facilities) (6239) 4

간호관리 시설 산업집단

6.1.2.1.1.

간호관리 시설 산업집단은 같은 류의 산업 코드 과 해당 국가 산업 코드 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 따르면 이 산업은 입원환자 간호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서비스는 간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장기간 제공된다 이러한 시설은 간호 및 지속적인 개인 관리 서비스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제공하는 정규직의 등록된 또는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두고 있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 이외의 요양소 또는 요양 병원

- 장애인을 위한 간호관리 집단가정 (convalescent homes or convalescent hospitals [except psychiatric])
- (group homes for the disabled with nursing care)

- 노인을 위한 간호관리 가정 (homes for the aged with nursing care)
- 노인을 위한 간호관리 가정 (homes for the elderly with nursing care)
- 입원환자 관리 호스피스 (hospices, inpatient care)
- 간호 관리 시설 (nursing care facilities)
- 요양원 (nursing homes)
- 간호관리 요양소 (rest homes with nursing care)
- 간호관리 은퇴자 가정 (retirement homes with nursing care)
- 숙련된 간호 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ies)

거주형 정신지체 정신건강 약물남용 시설 산업집단

6.1.2.1.2.

거주형 정신지체 정신건강 약물남용 시설 산업집단은 거주형 정신지체 시설 , , 산업 코드 과 거주형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시설 (residential 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62321) 산업 의 개 산업 으로 이 (residential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facilities) 국가 (62322) 코드2

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주형 정신지체 정신건강 약물남용 시설 산업(62321), (62322) 정신질환 약물남용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가된 병원 관리가 아닌 거주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거주형 정신지체 시설은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거주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집단가정 병원 중간 관리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비록 초점이 숙식 보호감독 상담에 두어져 있지만 약간의 건강 관리도 제공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자를 위한 집단가정

- 정신지체자를 위한 가정 (group homes, mental retardation)
- 정신지체자를 위한 병원 (homes with or without health care, mental retardation)
- 정신지체자를 위한 중간 관리 시설 (hospitals, mental retardation)
- 정신지체 중간 관리 시설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mental retardation)
- 가정 병원 중간 관리시설과 같은 정신지체자를 위한 거주형 시설 (mental retardation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 정신지체자 가정 (mental retardation facilities[e.g., homes, hospitals,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 (mental retardation homes)

- 정신지체자 병원 (mental retardation hospitals)

거주형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시설은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거주형 관리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숙식 감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 서비스는 상담 정신재활 기타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에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상담에 부가해서 광범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인가된 병원을 제외한 거주형 알코올중독 재활시설 (alcoholism rehabilitation facilities[except licensed hospitals], residential)
-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나 병원 (convalescent homes or hospitals for psychiatric patients) 병원을 제외한 거주형 마약중독 재활시설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facilities[except licensed hospitals], residential)
- 알코올중독 마약중독과 같은 약물남용자를 위한 중도 가정 (halfway houses for patients with mental health illnesses)
- 정서장애 성인이나 아동을 위한 가정 (halfway houses, substance abuse[e.g., alcoholism, drug addiction])
- 정신질환 요양소 (homes for emotionally disturbed adults or children)
- 정신질환 요양 병원 (homes, psychiatric convalescent)
- 거주형 정신건강 시설 (hospitals, psychiatric convalescent)
- 정신건강 중도 가정 (mental health facilities, residential)
- 정신질환자 요양소나 병원 (mental health halfway houses)
- 정서장애자를 위한 거주형 집단가정 (psychiatric convalescent homes or hospitals)
- 알코올중독 마약중독과 같은 약물남용자 중도 가정 (residential group homes for the emotionally disturbed)
- 거주형 약물남용 시설 (substance abuse[i.e., alcoholism, drug addiction] halfway houses)
- (substance abuse facilities, residential)

6.1.2.1.3.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 시설 산업집단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 시설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산업집단은 같은 류의 산업 코드 (62331)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산업은 다시 지속적인 은퇴자 관리 지역사회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산업 코드 과 노인을 위한 가정 (homes for the elderly) (623312) 을 개 (623311) 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 (시설은 (1) 자신을 온전히 돌볼 수 없는 노인 및 기타 사람과 독립적으로 살길 바라지 않는 (2) 노인 및 기타 사람을 위하여 거주형 및 개인적 관리 (3)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공되는 관리는 대개 숙식 감독 가사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상의 지원을 포함한다 때에 따라 이러한 시설은, 따로, 떨어진 현장시설의 거주자에게 숙련된 간호관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은퇴자 관리 지역사회 산업은 자신을 온전히 돌볼 수 없는 노인 및 기타 사람과 독립적으로 살길 바라지 않는 (1) 노인 및 기타 사람을 위하여 현장 간호관리 시설과 (2) 함께 광범위한 거주형 및 개인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의 개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식사 가사 사회적 여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거주 환경에서 살아간다, 현장, 간호관리 시설을 갖춘 개호생활 (3) 시설도 이 산업에 속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assisted-living)

현장 간호시설을 갖춘 개호생활 시설

- (assisted-living facilities with on-site nursing) 지속적인 은퇴자 관리 지역사회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 (retirement communities, continuing care)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은퇴자 지역사회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 노인을 위한 가정 산업은 자신을 온전히 돌볼 수 없는 노인 및 기타 사람과 독립적으로 살길 바라지 않는 (1) 노인 및 기타 사람을 위하여 현장 간호관리 시설을 동반하지 않는 (2) 거주형 및 개인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공되는 관리는 대개 숙식 감독 가사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상의 지원을 포함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현장 간호시설이 없는 개호생활 시설 (assisted-living facilities without on-site nursing facilities)
- 노인을 위한 간호관리 없는 가정 (homes for the elderly without nursing care)
- 간호관리 없는 노년층 가정 (old age homes without nursing care)
- 간호관리 없는 노병 가정 (old soldiers' homes without nursing care)
- 간호관리 없는 휴양소 (rest homes without nursing care)
- 간호관리 없는 은퇴자 가정 (retirement homes without nursing care)
- 간호관리 없는 노인 가정 (senior citizens' homes without nursing care)

기타 거주형 관리 시설 산업집단

6.1.2.1.4.

기타 거주형 관리 시설 산업집단은 같은 류의 산업 코드 과 해당 국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산업집단은 거주형 정신지체(62309) 건강 약물남용 시(23990)인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 시설을 제외한 거주형 관리, 시설을 포함한다 기타 거주형 관리 시설 산업은 거주형 정신지체 시설 거주형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시설 지속적인 은퇴자 관리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가정을 제외한 거주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감독과 개인적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일탈 청소년을 위한 훈련캠프

- 가정 목장 마을과 같은 거주형 남녀 청소년 시설 (boot camps for delinquent youth)
- (boys' and girls' residential facilities[e.g., homes, ranches, villages])
- (camps, boot or disciplinary[except correctional], for delinquent youth)
- 어린이 마을 (child group foster homes)
- 일탈 청소년 중도 집단가정 (children's villages)
- 간호관리를 해주지 않는 장애인 집단가정 (delinquent youth halfway group homes)
- (disabled group homes without nursing care)
- 일탈 청소년을 위한 훈육캠프 (disciplinary camps for delinquent youth)
- (group foster homes for children)

- 간호관리를 해주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집단가정 (group homes for the disabled without nursing care)
 - 청각장애인을 위한 집단가정 (group homes for the hearing impaired)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집단가정 (group homes for the visually impaired)
 - 일탈자와 전과자를 위한 중도 집단가정 (halfway group homes for delinquents and ex-offenders)
 - 추가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아동을 위한 가정 (homes for children with health care incidental)
 - 미혼모를 위한 가정 (homes for unwed mothers)
 - 청소년 중도 집단가정 (juvenile halfway group homes)
 - 고아원 (orphanages)
- 사회지원 하위부문

6.1.2.2.

사회지원 하위부문에 속하는 산업은 수혜자에게 광범위한 사회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기체류 형태를 제외하곤 거주형 또는 숙박형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하위부문은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산업집단 코드 지역사회 식량 주택 긴급(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 (6241), , , , 산업집단 코드 (community food and housing, and emergency and other relief services) (아동 보육서비스 (child day care services) (6242),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의 개 산업집단(6243), 이루어져 있다 (6244) 4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산업집단

6.1.2.2.1.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산업집단은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child and youth services) 산업 코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led) (6241), 기타 개인 및 가족 서비스 (other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 (6242), 의 가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산업은 같은 류의 해당 국가 산업 코드 (62419) 3 으로 이루어져 있다. (624110, 624120, 624190)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산업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비거주형 사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입양과 위탁관리 마약예방 생활기술 훈련 긍정적인 사회발달과 같은 영역에서 아동 복지를 제공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입양기관 (adoption agencies)
- 아동 입양서비스 (adoption services, child)
- 부양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지원)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
- 아동 지도 기관 (child guidance agencies)
- 아동복지 서비스 (child welfare services) 청소년 지역사회 센터
- (community centers [except recreational only], youth)
- 양육가정 소개 (foster care placement agencies)
- 청소년 자조 조직 (foster home placement services)
- 청소년 아웃리치 (self-help organizations, youth)
- 레크리에이션만을 위주로 하지 않는 청소년 센터 (teen outreach services)
- (youth centers[except recreational only])
- 청소년 지도 기관 (youth guidance agencies)
- (youth self-help organizations)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산업은 노인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람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거주형 사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보육 비의료적 가정 관리나 가정부 서비스 사회적 활동 집단 지지 교우관계와 같은 영역에서 이들의 복지를 준비해준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노인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람을 위한 활동센터 (activity centers for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and persons diagnosed with mental retardation)
- 레크리에이션만을 위주로 하지 않는 성인 지역사회 센터 (centers, senior citizens')
- (community centers)

- [except recreational only], adult)
장애인 노인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람을 위한 교우 서비스 (companion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and persons diagnosed with mental retardation)
- 장애인 노인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람을 위한 보육센터 (day care centers for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and persons diagnosed with mental retardation)
- 장애인 보육센터 (day care center, adult)
- 장애 지지 단체 (disability support group)
- 노인을 위한 비의료적 가정관리 (home care of elderly, non-medical)
-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비의료적 가정부서비스 (homemaker's services for elderly or disabled persons, non-medical)
- 장애인 노인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람을 위한 자조조직 (self-help organizations for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and persons diagnosed with mental retardation)
- 노인센터 (senior citizens activity centers)
- (senior citizens centers)

기타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산업은 특별히 아동 노인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람 장애인을 지향하지 않는 비거주형 개인 및 가족, 사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자조조직 (alcoholism and drug addiction self-help organizations)
- 의료를 제외한 비주거형 알코올중독 상담 (alcoholism counseling[except medical treatment], nonresidential)
- 지역사회 행동서비스 기관 (alcoholism self-help organizations)
- 상담 서비스 (community action service agencies)
- 약물중독 자조조직 (counseling services)
- 전과자 재활기관 (drug addiction self-help organizations)
- 전과자 자조조직 (exoffender rehabilitation agencies)
- 가족 사회서비스 기관 (exoffender self-help organizations)
- 가족 복지서비스 (family social service agencies)
- (family welfare services)

- 핫라인 센터 (hotline centers)
- 다목적 개인 및 가족 사회서비스 (individual and family social services, multi-purpose)
- 정신건강 종사자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의한 결혼 상담 서비스 (marriage counseling services[except by offices of mental health practitioners])
- 중재 사회서비스 가족 기관 (mediation, social service family, agencies)
- 근린' 복합서비스 '센터 (multiservice centers, neighborhood)
- 범죄자 자조조직 (offender self-help organizations)
- 양육 지지 서비스 (parenting support services)
- 민간 가석방 관리 (parole offices, privately operated)
- 민간 집행유예 관리 (probation offices, privately operated)
- 강간 위기센터 (referral services for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위한 재활기관
- 장애인 노인 정신지체 재활기관에 의한 자조조직 (self-help organizations[except for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and persons diagnosed with mental retardation])
- 다목적 사회서비스 센터 (social service agencies, family)
- 자살 위기센터 (social service centers, family)
- 지지 집단 서비스 (suicide crisis centers)
- 전화상담 서비스 (support group services)
- 여행자 지원센터 (telephone counseling services)
- 복합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센터 (travelers' aid centers)
- 지역사회 식량 주택 긴급 기타 구호 서비스 산업집단 (welfare service centers, multi-program)

6.1.2.2.2 지역사회 식량 주택 긴급 기타 구호 서비스 산업집단은 지역사회 식량서비스 산업 코드 지역사회 주택서비스

산업 코드 ' 긴급 및 기타 구호 서비스 (community food services) (community housing services) 의 개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emergency and other relief services) (62422), (62421) (62423) 3 .

과 긴급 및 기타 구호 서비스 산업은 같은 류의 해당 국가 산업 코드 각 624210, 624230)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사회 주택서비스 산업은 임시 쉼터 (temporary shelters) 산업 코드 624221) 과 기타 지역사회 주택서비스 (other community housing services) 산업 코드 624229) 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사회 식량서비스 산업은 빈곤자를 위한 식량 모집 준비 전달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 산업의 시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옷과 담요를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시설은 또한 노령 장애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음식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배달하며 구호식량이나 기증식량을 배급하고 지정된 장소나 이동 장소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제공하기도 한다 식량은행 음식 배달 프로그램 무료급식소는 이 산업에 포함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음식 사회서비스

- 식량은행 (community meals, social services)
- 음식 배달 (food banks)
- 이동 무료급식소 (meal delivery programs)
- 무료급식소 (mobile soup kitchens)
- (soup kitchens)

지역사회 주택서비스 산업은 한 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정폭력 성폭행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단기 임시 쉼터

- (1) 노숙자 가출청소년 의료위기에 빠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임시 주거쉼터
- (2) 저소득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임시 주택
- (3) 건설이나 수리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주택소유자와 함께 하는 저렴한 주택 자원 건설이나 수리
- (4) 노인이나 장애인 주택소유자를 위한 집수리 (low cost housing)

(5) 이러한 시설은 자기 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기존의 주택 아파트 호텔 모델을 이용하여 주택을 보조하기도 하며 저비용 담보대출이나 노동제공출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work[sweat] equity)

임시쉼터 산업은 (1) 가정폭력 성폭행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단기 긴급 쉼터와 노숙 개인이나 가족 가출청소년 의료'위기에 빠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임시 주거 쉼터(2)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자기 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기존의 주택 아파트 호텔 모텔을 이용하여 주택을 보조하기도 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매맞는 여자를 위한 쉼터

- 국내적 또는 국제적 재난이나 갈등의 피해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긴급쉼터 (battered women's shelters)
- (emergency shelters[except for victims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disasters or conflicts])

- 가출청소년 (homeless shelters)

- 국내적 또는 국제적 재난이나 갈등의 피해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긴급쉼터 (runaway youth shelters)

(shelters[except for victims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disasters or conflict], emergency shelters)

- 노숙자 쉼터 (shelters, battered women's)

- 가출청소년 쉼터 (shelters, homeless)

- 매맞는 여자 노숙자 가출청소년 등을 위한 임시 쉼터 (shelters, runaway youth)

(shelters, temporary[e.g.,

battered women's, homeless, runaway youth])

- 매맞는 여자 노숙자 가출청소년 등을 위한 임시 쉼터 (temporary housing for families of medical patients)

(temporary shelters[e.g.,

battered women's, homeless, runaway youth])

- 기타 지역사회 주택서비스 산업은 한 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주택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저소득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임시 주택

건설이나 수리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주택소유자와 함께 하는 저렴한 주택

(1) 자원 건설이나 수리

(2) (low

cost housing)

(3) 노인이나 장애인 주택소유자를 위한 집수리

이러한 시설은 기존의 주택 아파트 호텔 모텔을 이용하여 주택을 보조하기도 하며 저비용 담보대출이나 노동'제공출자' 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설은 또한 저소득 가족에게 가구와 가정용품을 제공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지원프로그램 (energy assistance program)
- 노동제공출자 주택건설 조직 (home construction organizations, work[sweat] equity)
- 주택 지원 기관 (housing assistance agencies)
- 임시주택 기관 (housing repair organizations, volunteer)
- 자원 주택수리 (transitional housing agencies)
- 노동제공출자 주택건물 수리 (volunteer housing repair organizations)
- (work[sweat] equity home construction organizations)

긴급 및 기타 구호 서비스 산업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갈등의 피해자들에게 식량 쉼터 옷 의료구호 재정착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재난 구호서비스 (disaster relief services)
- 국내적 또는 국제적 재난이나 갈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 쉼터 (emergency relief services)
- (emergency shelters)
- 이주자 재정착 서비스 (immigrant resettlement services)
- 난민 정착 서비스 (refugee settlement services)
- 재난 구호서비스 (relief services, disaster)
- 긴급 구호서비스 (relief services, emergency)
- 국내적 또는 국제적 재난이나 갈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 쉼터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disasters or conflicts, emergency)

6.1.2.2.3. 직업 재활서비스 산업집단

직업 재활서비스 산업집단은 같은 류의 산업 코드 과 해당 국가 산업 코드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산업은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장애인 교육 (직업
 624310) 기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사람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직무경험과 같은 직업재활이나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
 사하는 시설과 장애인에게 훈련과 취업을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학교 (2)의 직업 재활 및 직업훈련 시설과 직무경험 센터와 같은 보호작
 업장은 이 산업에 포함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직업 교육 상담 훈련
- 직업 재활, 교육, 상담 (habilitation job counseling and training, vocational)
- 직업 재활, 교육, 훈련 (job counsel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or habilitation)
- 직업 재활, 상담, 훈련 (job trai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or habilitation)
- 직무경험 센터와, 같은 (rehabilitation job counseling and training, vocational)
- 직업 교육 상담 (sheltered workshops[i.e., work experience centers])
- 학교를 제외한 (vocational habilitation job counseling)
- (vocational habilitation job training facilities
- 직업재활기관])
- 직업 재활 상담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 학교를 제외한 직업 재활 훈련 시설 (vocational rehabilitation job counseling)
- (vocational rehabilitation job training facilities
- 직업 상담과 훈련 직무경험과 같은 직업 재활이나 교육 서비스
- (vocational rehabilitation
- 보호작업장과 같은 직무경험 센터 or habilitation services[e.g., job counseling, job training, work experience])
-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work experience centers[i.e., sheltered workshops])
- (workshop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6.1.2.2.4. 아동 보육서비스 산업집단

아동 보육서비스 산업집단은 같은 류의 산업 코드 과 해당 국가 산업 코드 624410)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산업은 유아나 아동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에 주로 종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취학이전 아동을 돌보지만 방과 후의 취학아동을 돌보거나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산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자기 집에서 아기봐주기 서비스 (babysitting services in provider's own home, child day care)
- 아기봐주기 서비스 (babysitting services, child day care)
- 아동 보육센터 (child day care centers)
- 아동 보육서비스 (child day care services)
- 자기 집에서 아동 보육 서비스 (child day care services in provider's own home)
- 학교 이외에서의 방과 전후 아동 보육 서비스 (child day care services in provider's own home)
- (child day care, before or after school, separate from schools) 보육센터
- 아동 및 유아 보육서비스 (day care centers, child and infant)
- 아동 및 유아 집단 보육 서비스 (day care services, child and infant)
- 학교 이외의 유치원 프로그램 (group day care centers, child and infant)
- 유아 보육센터 (head start programs, separate from schools)
- 유아 보육서비스 (infant day care centers)
- 보육원 (infant day care services)
- 초등학교체계의 일부가 아닌 유아원 (nursery schools)
- (pre-kindergarten centers[except part of elementary school system])
- (preschool centers)

6.2. 일본

개요

6.2.1.

일본 표준산업분류 (ISIC: Japanes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통계조사 결과를 산업별로 표시할 때 사용되는 통계기반으로 각 사업체에서 사회적인 분업으로 행해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혹은 제공에 관한 모든 경제활동을 분류해준다. 이 분류체계의 목적은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통계의 상호비교성과 이용의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일본 표준산업분류체계는 1949년에 처음 설정되어 지금까지 11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3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근의 정보통신의 고도화, 경제활동의 소프트화·서비스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이행 등에 따르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일본의 표준 산업분류체계는 개정에 있어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미국의 북미산업분류체계 (NAICS)와 국제연합의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의 산업분류체계를 함께 고려했다.

일본표준산업분류는 사업소에 따라 행해지는 경제 활동 즉 산업을 다음과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구별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한다.

생산되는 재화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용도, 기능 등

- (1) 재화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방법, 설비, 기술 등,
- (2) 원재료의 종류 및 성질, 서비스의 대상 혹은 취급되는 것, 상품 등의 종류
- (3) ()

이밖에 분류 항목의 설정에 있어 사업소의 수, 종업자의 수, 생산액 또는 판매액 등도 고려한다.

일본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류의 종류는 대분류 10개, 중분류 100개, 소분류 400개, 세분류 1,269개로 이루어져 있다. 표 참조.

일본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호는 대분류 19, 중분류 97, 소분류 420, 세분류 1,269로 이루어져 있다. (<26>)

〈표 26〉 일본 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A 농 업	1	4	20
B 임 업	1	5	9
C 어 업	2	4	17
D 광 업	1	6	30
E 건 설 업	3	20	49
F 제 조 업	24	150	563
G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4	6	12
H 정 보 통 신 업	5	15	29
I 운 수 업	7	24	46
J 도 매 · 소 매 업	12	44	150
K 금 융 · 보 험 업	7	19	68
L 부 동 산 업	2	6	10
M 음 식 점, 숙 박 업	4	12	18
N 의 료, 복 지	4	15	37
O 교 육, 학 습 지 원 업	3	12	33
P 복 합 서 비 스 사 업	3	4	8
Q 서비스업(달리 분류 되지 않은 것)	15	68	164
R 공무(달리 분류 되지 않은 것)	2	5	5
S 분 류 불 능 의 산 업	1	1	1
(계) 19	97	420	1,269

사회서비스업

6.2.2.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있어 사회서비스업은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대신 사회서비스업 관련 분야는 대분류에 있어 의료 복지업 에 속해 있다 의료 복지 분야는 2002 년의 제 1 차 개정 전까지는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비스업의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이 분야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개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다양화되고 생산규모도 확대되면서 2002 년의 새로운 개정에서 서비스업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대분류로 신설되었다 2002 통해 일본표준산업분류의 의료 복지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보건위생 및 사회사업 과 북미산업분류체계의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업 에 유사하게 설정되어 산업분류의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향상되었다 (62)

의료 복지업은 의료 보건위생 사회보험 사회복지 및 개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분류로서, 의료업 보건위생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 의 가지 산업을 포함한다 이 가 (73), 사회서비스(74)에 해당되는 산업은/보건위생(75)과 사회복지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이다

보건위생업이란 보건소 건강상담 시설 검역소 동물검역소 식물방역소를 제외함 등 보건위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이란 공적연금 공적의료보험 공적개호보험 노동화재보상 등의/사회보험사업을 행하는 사업소 및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개호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보건위생업

6.2.2.1.

이 중분류에서는 보건소 건강상담 시설 검역소 동물검역소 식물방역소는 제외함 등의 보건위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가 포함된다 ()

소분류번호	세분류번호
	보건소
741	보건소

7411

- 상담소를 말한다
 ○ 보건사 주재소 시 군 동 보건센터
 농어촌진간센터 건강과학센터
 보건소
 × (7411)
- 749 이 외의 보건위생
- 7491 검역소 동물검역소 식물방역소는 제외함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감염증의 병원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한 감염증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검역소 검역소지소 검역 출장소
 보건소; 동물검역소 식물방역소
 × (7411); (9399); (9399)
- 7492 검사업
 역병의 예방 건강관리 건강의 증진 환경위생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검사 시험을 실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기생충란 검사업 수질 검사업 식육위생검사소
 위생연구소 시험소 위생검사소
 × () (8114); (7369)
- 7493 소독업
 감염증의 예방을 위해 보건위생상 필요한 소독을 행
 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농작물의 해충구제를 시행하는
 사업소는 대분류 농업 에 건물의 소독 및 환개
 미 등의 해충구제를 담당하는 사업소는 중분류
 에 분류되어진다 (013)
 ○ 시 군 동 소독처 물품 소독업 전화기 소독업
 (9049) 농작물 해충구제업 건물의 소독 해충 구제
 업
 × (013);
 이 외에 (9019) 분류되어 있지 않은 보건위생
- 7499

이 외에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건위생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개 관리소 개 관리사업소

사회보건 사회복지 개호사업

6.2.2.2.

이 분류에서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또는 개호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소 및 재생 보호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소가 포함된다

소분류번호 세분류번호

751		사회보험 사업단체
	7511	사회보험 사업단체 공적연금 공적의료보험 공적개호보험 노동 화재 보상 등의 사회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건강보험조합 국가 지방 공무원공제조합 진료보수지불연금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사회보험사업소 ; 지방공무원화재보상연금; 석탄 광업 연금기금 농업자연금기금 ; ; 연금자금운용기금 × (7599) 복지사무소
752		복지사무소
	7521	각 지방의 시 도 군 및 특별도가 설치한 복지에 관련된 사무소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사무소 아동복지사업 ;
753		

7531	<p>보육원 일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소를 지칭한다 ○ 보육소 위탁소 유치원 ; × (7661)</p>
7539	<p>이 외의 아동복지사업 이 외에 영아 유아 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나 분류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를 말한다 , ○ 아동상담소 영아원 모자 생활 지원시설 아동후생시설 아동관 ;아동양호시설 ; 지적장애아시설 (맹아);농아시설 ; 지적부자유아 시설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아동가정지원센터 ;모자복지센터 ; 모자 휴양홈 ; ;</p>
754	<p>노인복지 개호사업 방문 개호 사업은 제외함 ()</p>
7541	<p>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를 항시 필요로 하고 재택개호가 곤란한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일컫는다 ○ 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노인복지시설</p>
7542	<p>개호노인보건시설 ; 증상이 안정기에 있으나 아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 관리 하에 있는 개호 및 기능 훈련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한 의료</p>

치료까지 담당하는 사업소를 지칭한다

○ 개호노인보건시설

7543

통원 단기입원개호시설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통원 또는 단기입원의 형태를 취해 개호 등 일상생활상의 보살핌이나 기능훈련까지 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노인 서비스 센터 노인 단기 입원 시설

7544

인지증 노인 그룹홈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으나 아직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형태로 개호 등의 일상생활의 보살핌과 더불어 기능훈련을 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

7545

유료 노인홈

입주 시 요금을 징수하여 노인을 입주시키고 식사 제공 및 그 이외의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편의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소를 말한다

○ 유료 노인홈

7549

이 외의 노인복지 개호사업

이 외에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노인복지 개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소를 말한다

○ 양호 노인홈 경비 노인홈 케어하우스

노인복지센터 고령자생활복지센터

노인들의휴식 공간 노인 개호지원센터

방문개호사업소

장애인 복지사업 (7592)

- 7551 신체장애자복지사업
신체장애자에 대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신체장애자갱생시설 신체장애자의호시설
신체장애자수산시설 신체장애자복지센터 ;
신체장애자 복지홈 ;
지체부자유아시설 맹아 농아시설
× (7539); (7539)
- 7552 지적장애자 복지사업
지적장애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소를 지칭한다
○ 지적장애자원호시설 지적장애자갱생상담소
지적장애아시설 ; 정신병원
정신장애자생활훈련시설 (7312);
정신장애자수산시설 (7553);
(7553)
- 7553 정신장애자 복지사업
정신장애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정신장애자생활훈련시설 정신장애자 복지홈
정신장애자수산시설 정신장애자복지공장 ;
정신장애자 지역생활 지원센터 정신장애자그룹홈
정신병원 ;
× (7312)
이 외의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
- 759
- 7591 갱생보호사업
보호관찰대상자 형무소 출소자의 갱생을 도와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갱생보호시설, 갱생보호협회 ;
보호관찰소 ;
× (9531)

- 7592 방문간호사업
노인, 장애인 등의 주택에 있어서 입욕, 식사 등의
개호와 그 이외의 일상생활상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 방문개호사업소, 방문입욕개호사업소
방문개호 스테이션
× (7342)

- 7599 이 외에 분류되지 않은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이 외
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를 가르친다.
노동자를 위한 복리후생사업 및 특정단체소속인
그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소의 경우 그에 따른 주된 사업 내용에 의해 각각 세분
화되어진다
○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선의은행
수산소, 연금자금운용기금 ; ;
심신장애자 복지협회, 국민보호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연구진흥조사기구
부인상담소 ; ;

이 중분류에서는 보건소, 건강 상담 시설, 검역소, 동물검역소, 식물방역소는 제외함
등의 보건위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가 (포함된다 ,)

6.3. 영국의 산업분류 체계에 있어서의 사회서비스

영국의 표준산업분류는 1948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수차례 걸쳐 개정되었다. 이
러한 개정은 새로운 제품과 산업의 등장 및 기존 산업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였으며 특히 1948년 1월 1일 유럽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제활동

의 새로운 통계분류법 (NACE Rev. 1, Nomenclature général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es Communautés européennes) 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03년 1월에는 NACE Rev. 1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 NACE Rev. 1.1이 도입되었고 최근 이 법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가한 NACE Rev. 2가 도입되어 2008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유럽공동체의 법률은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그 법안의 효력은 회원국의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 관련 법률에 따라 영국은 NACE Rev. 1에 기초하여 UK SIC(92)를 도입하였으며 NACE Rev. 1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유럽공동체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왔다. 관련 법률은 자체의 경제활동 뿐 아니라 회원국 간의 경제활동 분류 및 NACE 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NACE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SIC 2007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s, ISIC) 4와 동일하다.

영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NACE Rev. 1은 기본적으로 4단계 단계까지는 SIC 2007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NACE Rev. 1은 SIC 2007의 4단계 분류를 추가함으로써 NACE Rev. 1은 5단계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의 표준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계층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4단계로 모두 21개의 섹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개 섹션은 각각 1부터 21까지의 한 글자의 알파벳으로 표시되는데 그 내용은 표 2-27과 같다. 각각의 섹션은 자리의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 (division)으로 나누어 지는데, 모두 27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부분은 다시 집단 (group)으로 각 집단은 다시 계급 (class)으로 나뉘지며 각각 세 자리 및 네 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표 27〉 영국 표준산업분류(UK SIC 2007)의 Section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및 채석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냉난방 공급
E	급수, 하수, 쓰레기 관리 및 개선
F	건설
G	도소매; 자동차 및 이륜차 수리
H	숙박 및 음식 서비스 활동
I	운송 및 창고
J	정보 및 통신
K	금융 및 보험 활동
L	부동산
M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활동
N	행정 및 지원 서비스 활동
O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적 사회보장
P	교육
Q	보건 및 사회사업 활동
R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여가
S	기타 서비스 활동
T	고용주로서의 가사활동
U	국외 조직 및 단체 활동

이 가운데 건강 및 사회사업 활동 가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인간 건강을 위한 각종 의료 활동과 사회사업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 섹션은 병원과 기타 유사 시설에서 훈련된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헬스 케어에서부터 일정 정도의 헬스 케어 활동을 포함하는 수용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하여 의료 전문가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사회사업 활동 등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 전문가들의 진료 및 치료 행위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산업 분류는 섹션의 후반부인 사회

사업 활동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87 수용 보호 활동 (Residential care activities)

이 부문은 피수용자들에게 필요한 간호 감독 혹은 다른 유형의 보호 활동을 포함하는 수용 보호 제공을 포함한다 시설이 생산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제공되는 보호의 내용은 일정 수준의 간호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가 혼합되어 있다

수용 간호 보호 활동

87.1 (Residential nursing care activities)

수용 간호 보호 활동

이 계급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Residential nursing care activities)

- 간호 (class)를 포함하는 노인 수용 시설.
- 회복환자 수용 시설 (homes of the elderly with nursing care)
- 간호 보호가 제공되는 시설 (residential nursing homes)
- 간호 보호 시설 (rest homes with nursing care)
- 양로원 (nursing care facilities)

의료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 간호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노인 수용 시설 활동 아동 수용 시설이나 임시 노숙자 수용시설 등과 같이 숙박이 제공되는 사회사업 활동은 이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지체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을 위한 수용 보호 활동

87.2 (Residential care activities for mental retard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정신지체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을 위한 수용 보호 활동

이 계급은 정신지체 정신 질환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수용 보호 면허를 받은 병원 보호는 제외 제공을 포함한다 시설은 숙박 보호 (class)

이 부분은 () 의 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

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UK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2007 (SIC 2007) : Structure and Explanatory Notes* pp. 257-259

로 감시 상담 및 일정 수준의 의료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 문제를 지닌 환자들에 대한 수용 보호 및 치료의 제공도 포함한다

이 계급에 포함되는 활동은

- 알코올 혹은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시설 (facilities for alcoholism or drug addiction treatment)
- 정신 질환에서 회복 중인 환자를 위한 수용 시설 (psychiatric convalescent homes)
-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단 수용 시설 (residential group homes for the emotionally disturbed)
- 정신지체자 수용 시설 (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정신병원 및 임시 노숙자 (mental health halfway house)에 제공되는 사회사업활동은 이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수용 보호 활동

87.3 (Residential ca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수용 보호 활동

87.30 (Residential ca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이 계급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없거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수용 및 개인 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제공되는 보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숙박 감독 가사 서비스 등과 같은 일상 생활 보조를 포함한다 일부의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숙련된 간호 보호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 계급에 포함되는 활동은

- 생활 지원 시설
 - 지속적인 보호가 제공되는 은퇴 커뮤니티 (assisted-living facilities)
 - 최소한의 간호 보호가 제공되는 노인 수용 시설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homes for the elderly with minimal nursing care)
- 간호 보호가 제공되는 노인 수용 시설과 치료 혹은 교육이 주요 내용이 아닌 시설의 사회사업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rest homes without nursing care)

87.9 기타 수용 보호 활동 (Other residential care activities)

기타 수용 보호 활동

87.90 이 계급 (Other residential care activities)

이 계급은 노인과 장애인을 제외한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없거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을 위한 수용 및 개인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 계급은 아동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는 특정 범주의 개인들에게 시간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의료적 치료나 교육이 주요한 요소가 아닌 시설에서의 활동을 포함한다

- 아동 기숙 보호 시설
- 임시 노숙자 보호 시설 (children's boarding homes and hostels)
- 미혼모와 자녀를 보호하는 시설 (temporary homeless shelter)

(institutions that take care of unmarried mothers)

이러한 활동은 공공 기관이나 민간 조직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 밖에 이 계급에 포함되는 활동은

- 사회적 혹은 개인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갱생 집단 시설

(halfway group)

-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을 위한 갱생 시설 (homes for persons with social or personal problems)

(halfway homes for delinquents and offenders)

- 청소년 교정 시설 (juvenile correction homes)

의무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재워 확보 및 행정 활동 간호 보호 시설 활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수용 보호 활동 (87.10), 입양 활동 (84.30), 재난 피해자

를 위한 단기 보호 활동 (87.10), 는 이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87.30), (88.99),

(88.99)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

이 부문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숙박을 제외한 수용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division)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

이 계급에 포함되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상담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의뢰 및 기타 서비스

88.10 (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

스로서 정부 기관 민간 조직 전국적 혹은 지역 자조 조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 노인 및 장애인 방문 (visiting of the elderly and disabled)
- 노인 혹은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위한 일상 보호 (day-ca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or for disabled adults)
- 교육적 요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및 사회 복귀 훈련 활동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habilitation activities for disabled persons provided that the education component is limited)

이러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의 재원 확보 및 행정 활동 이 계급에 포함되는 활동과 유사하나 숙박이 제공되는 활동 장애 이(84.30)위한 일상 보호 활동은 이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87.30), (88.91)

기타 비수용 사회 사업 활동

88.9 (Other 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

아동 일상 보호 활동

88.91 계급은 장애 아동의 일상 (Child day-care activities) 주간 보육 활동을 포함한다

기타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

88.91 계급에 포함되는 것은 개인과 (Other 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거주하는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상담 서비스 복지 서비스 난민 서비스 의뢰 및 기타 서비스로서 정부 기관 민간 조직 재해 구조 조직 전국적 혹은 지역 자조 조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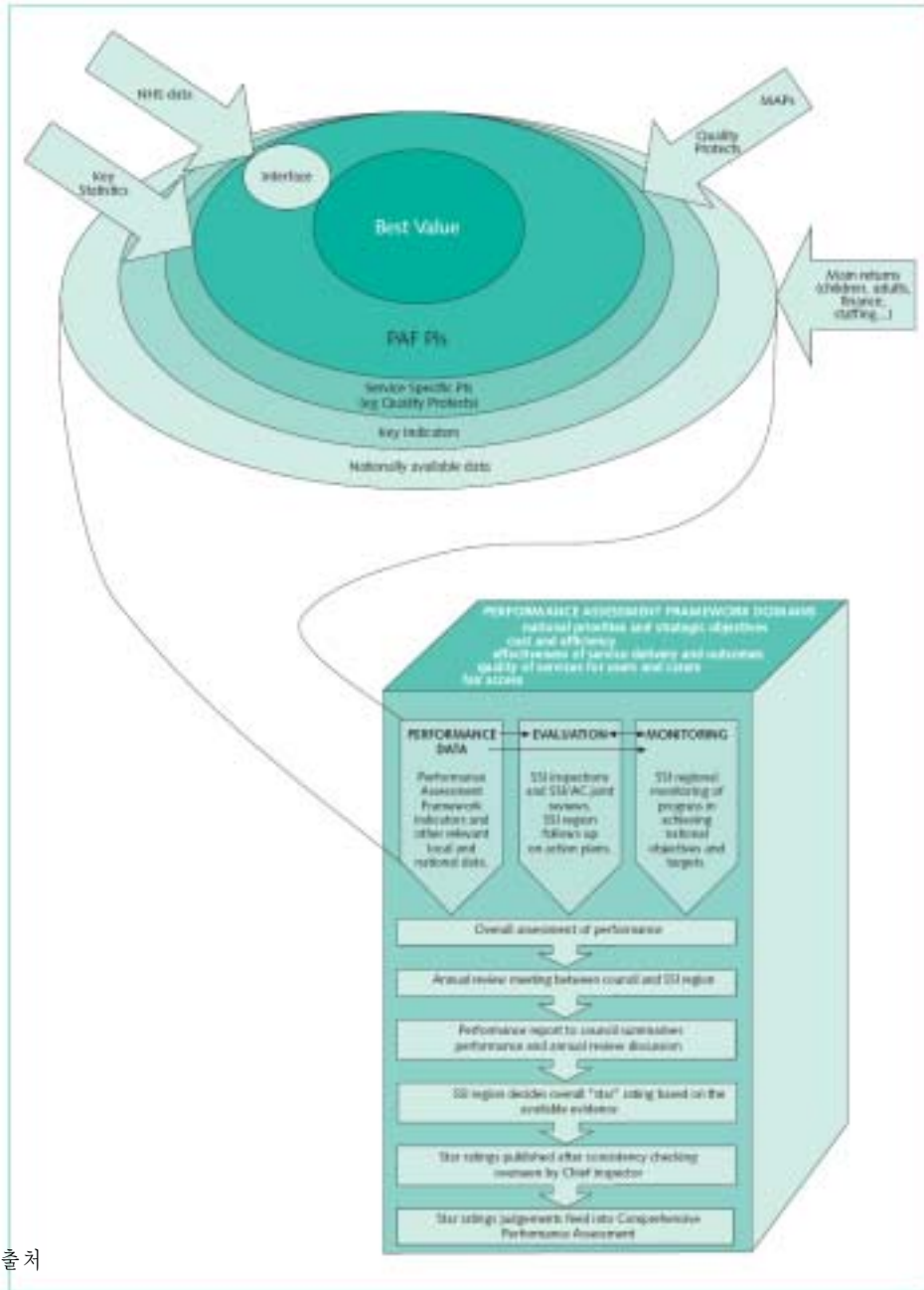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지도 활동 (welfare and guidance activit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입양 활동 아동 및 기타 개인에 대한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adoption activities, activities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and others)
- 가구 예산 상담 결혼 및 가족 지도 신용 및 부채 상담 서비스 (household budget counselling, marriage and family guidance, credit and debt counselling services)
- 지역 사회 및 이웃 활동 (community and neighborhood activities)
- 재해 피해자 난민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임시 혹은 장기 보호 시설을 포함

(activities for disaster victims, refugees, immigrants, etc., including temporary or

extended shelter for them)
 . 교육적 요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 재할 및 사회
 복귀 훈련 활동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habilitation activities for unemployed
 persons provided that the education component is limited)
 . 복지 지원, 월세 보조금, 푸드스탬프와 연관된 자격 결정 (eligibility determination
 in connection with welfare aid, rent supplement, or food stamp)
 . 노숙자 및 기타 사회적 약자 집단을 위한 일일 시설 (day facilities for the homeless
 and other socially weak groups) 혹은 기타 사회 사업을 위한 지원 활동 (charitable
 activities like fundraising or other supporting activities aimed at social work)
 의 부차적 프로그램의 제공을 포함하는 활동 (84.30) 장애인(84.30) 위한 일상 보호 활동
 활동과 유사하나 숙박이 제공되는 활동 (87.30), 은 이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87.30),
 (88.91)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이 서
 비스의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민간 부문이 실제 서비스 공급을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적극적
 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사회서비스 표준 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심사하거나 공급자격을 유지하는 평가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평가 도구로 영국은 개로 구성된 (National Standards)
 ,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Social Service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PAF) .8)

8) Department of Health(2003). *Social Services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Indicators 2002-2003*. London: Department of Health Publications

[그림 15] 영국의 사회서비스 수행 평가 지표의 역할



출처

: Department of Health(2003), p. 9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150여개의 위원회는 각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및 각 지역의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 특히 각 지역은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행 정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타 지역의 상황을 벤치마킹하며 향상이 필요한 영역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5는 이러한 전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5]

각 지방 정부가 50개의 Personal Social Services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PSS PAF)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동안 중앙정부의 Department of Health가 제공하는 일련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행 정도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지역 간 및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Social Services Inspectorate (SSI)의 감사와 SSI Audit Commission Joint Review of Social Services를 모니터하고 있다

[그림 16] PSS PAF 평가 결과 예시

England

Indicator	99-00	00-01	01-02	02-03	Performance change (01-02 to 02-03)	Average council banding ¹ (02-03)	% councils above ² ●●● or above ³	% councils awarded top band ⁴	% councils showing improvement (01-02 to 02-03) ⁵
CF/A1 Stability of placements of children looked after ⁶	18.5%	16.6%	15.0%	15%	→	●●●●●	92%	92%	64%
CF/A2 Educational qualifications of children looked after (joint working)	31%	37%	41%	44%	↑	●●	44%	1%	65%
CF/A3 Re-registrations on the Child Protection Register	14%	14%	14%	13%	→	●●●●	81%	46%	50%
CF/A4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for care leavers (joint working)	-	-	46%	49%	↑	●●●	68%	42%	65%

출처 : Department of Health(2003), p. 16

이러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데 • 즉시 조사 해당 지표 관련 관행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 수행 정도에 대한 제반 질문 제기 해당 지표의 수행 과 관련된 심각한 질문을 ()

(

제기하고 해결 방안 강구, . . . (수용 가능하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양호, 그리고), 매우 양호,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한 예시가 그림 16에 나타나있다

[그림 16] 을 살펴보면 각각의 지표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수행변화 1999 2003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수행 정도의 변화를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표의 타 지역의 수행 정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지역의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행 정도를 타 지역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행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를 구성하는 개의 지표는 크게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로 시작하는 지표들이 이에 해당하며 성인 및 노인을 위한 영역은 로 시작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 | | |
|--------|--|
| AO | 50 |
| CF/A1 | 보호 아동의 시설 배치 안정성 (Stability of placements of children looked after) |
| CF/A2 | 아동 보호 등록부에의 재등록 (Educational qualifications of children looked after) |
| CF/A3 | 보호를 의뢰하는 사람의 고용, 교육 및 훈련 (Re-registrations on Child Protection Register) |
| CF/A4 |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for care leavers) |
| CF/B7 | (Children looked after in foster placement or placed for adoption) |
| CF/B8 | 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비용 (Cost of services for children looked after) |
| CF/B9 | 아동의 수용 보호 단위 비용 (Unit cost of children's residential care) |
| CF/B10 | 위탁 보호의 단위 비용 (Unit cost of foster care) |
| CF/C18 | / (Final warnings/ reprimands and convictions of children looked after) |

9) Department of Health(2003) pp. 16~18

- CF/C19 보호 아동의 건강 (Health of children looked after)
- CF/C20 아동 보호 사례의 리뷰 (Reviews of child protection cases)
- CF/C21 아동 보호 등록부에의 등록 기간 (Duration on the Child Protection Register)
- CF/C22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거나 입양을 위해 맡겨진 유아 (Young children looked after in foster placement or placed for adoption)
- CF/C23 보호 아동의 입양 (Adoption of children looked after)
- CF/C24 보호 아동의 학교 결석 (Children looked after absent from school)
- CF/D35 가족 지지에 대한 상대적 (Long-term stability of children looked after)
- CF/E44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인종 (Relative spend on family support)
- CF/E45 응급 입원 (Ethnicity of Children in need)
- AO/A5 응급 정신과 입원 (Emergency admissions)
- AO/A6 중환자 재가 및 수용 (Emergency psychiatric admissions)
- AO/B11 (Intensive home care and a percentage of intensive home and residential care)
- AO/B12 (Cost of intensive social care for adults and older people)
- AO/B13 (Unit cost of residential and nursing care for older people)
- AO/B14 (Unit cost of residential and nursing care for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AO/B15 (Unit cost of residential and nursing care for adults with mental illness)
- AO/B16 (Unit cost of residential and nursing care fo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AO/B17 (Unit cost of home care for adults and older people)
- AO/C26 65 세 거주자의 재가 간호 보호 입원 (Admissions of supported residents aged 65 or over to residential/nursing care)
- AO/C27 18~64 중환자 재가 보호 (Admissions of supported residents aged 18-64 to residential/nursing care)
- AO/C28 (Intensive home care)

- AO/C29 가정에서 살도록 도움을 받는 신체장애 성인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helped to live at home)
- AO/C30 가정에서 살도록 도움을 받는 학습 장애 성인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helped to live at home)
- AO/C31 가정에서 살도록 도움을 받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지닌 성인 (Adult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helped to live at home)
- AO/C32 노인 대상 회피 가능한 부상 낙상 (Older people helped to live at home) 혹은 저체온증
- AO/C33 (Avoidable harms for older people (falls and hypothermia))
- AO/C51 인실 가용도 (Direct payments)
- AO/D37 주내에 배달될 수 있는 (Availability of single rooms) 장비 비율
- AO/D38 3 1,000 (Percentage of items of equipment and adaptations costing less than 1,000 delivered within three weeks)
- AO/D39 (Percentage of people receiving a statement of their need and how they will be met) 받는 클라이언트
- AO/D40 보호 전달의 지연 (Clients receiving a review)
- AO/D41 보호자 평가 (Delayed transfer of care)
- AO/D42 보호 패키지 (Care assessments) 수렴을 위한 대기 시간
- AO/D43 사회서비스에 매우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사용자 (Waiting time for care packages)
- AO/D52 (Users who said they were very or extremely satisfied with Social Services) 서비스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사용자
- AO/D53 (Users that asked for changes to services who were satisfied with those changes) 평가를 받는 노인의 인종
- AO/E47 평가 후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인종 (Ethnicity of older people receiving assessments)
- AO/E48 노인들에 대한 평가 (Ethnicity of older people receiving services following an assessment)
- AO/E49 서비스 제공의 가용성이 있는 성인 및 노인에 대한 평가 (Assessments of older people)
- AO/E50 (Assessments of adults and older people leading to provision of service)

6.4. 스웨덴의 산업분류 체계에 있어서의 사회서비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첫째는 개인과 가족의 보호 (care of the individual and the family) 이고 두 번째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간호 (care and nursing for the elderly and those with disabilities) 이다. 개인과 가족의 보호는 아동, 청소년, 가족 학대자,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 폭력이나 기타 문제를 경험한 여성 등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로는 조언, 지원, 격려, 보호 및 치료, 경제적 지원, 사회적 보조, 경제 상담, 가족법 및 가족 상담 등이 해당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정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성인 약물 및 알코올 남용자에 대한 보호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보호 및 간호는 특정한 형태의 수용을 포함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육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 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주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법 특정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and Services for Certain Disabled Persons, LSS 1993:387)에 의해 지원과

스웨덴은 이러한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산업 분류를 위해 기본적으로 영국의 경우와 동일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표준산업분류 은 가 제시하는 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영국의 2007년 ECU와 동일하며 이는 NACE Rev. 2 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제시한 영국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표준산업분류 내용과 동일하다.

〈표 28〉 스웨덴의 표준산업분류(2002) : SNI 2002

A	농업, 수렵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및 채석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급수
F	건설
G	도소매; 자동차 및 이륜차 수리, 자동차 및 개인과 가정용품
H	숙박 및 음식
I	운송, 창고 및 통신
J	금융 중개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 활동
L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적 사회보장
M	교육
N	보건 및 사회 사업
O	기타 지역사회, 사회적 및 개인 서비스 활동
P	가사 활동
Q	국외 조직 및 단체 활동

2007년까지 스웨덴은 NACE Rev. 1.1에 기초한 스웨덴 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2002년까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SNI 2002)

2007년에 기초한 SNI 2002에서의 차 분류는 표 2와 같다 이 가운데 앞서 언급한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산업분야는 보건 및 사회사업이다 이 섹션은 NACE Rev. 1.1의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인간 보건 활동 1(85)의 활동 1(85)와 사회 사업 활동 2(853)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 사업 활동 2(853)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851)

(853)

- N 보건 및 사회사업 (Health and social work)
- 85 보건 및 사회사업 (Health and social work)
- 853 사회사업 활동 (Social work activities)
- 8531 수용 사회사업 활동 (Social work activities with accommodation)
- 85311 노인을 위한 특정 수용 시설 보호 (Care in special forms of accommodation for the aged)
- 85312 장애인에 대한 특정수용 시설 보호 (Care in special forms of accommodation for disabled persons)
- 85313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24시간 수용 시설 보호 (Twenty-four hours care with accommodat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85315 성인 약물 오용자를 위한 24시간 수용 시설 보호 (Twenty-four hours care with accommodation for adult substance misusers)
- 85316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 (Care with accommodation for adults n.e.c.)
- 8532 아동 일상 보호 활동 (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
- 85322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Child day care) 활동 (Child day care activities)
- 85323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 (Social work activiti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85324 성인 약물 오용자를 위한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 (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 for adults n.e.c.)
- 85325 난민 캠프 운영 (Humanitarian relief activities)
- 85326 노인을 위한 일상 보호 활동 (Operation of refugee camps)
- 85327 장애인을 위한 일상 보호 활동 (Day-care activities for the aged)
- 85328 성인 약물 오용자를 위한 일상 보호 활동 (Day-care activities for disabled people)
- 85329 성인 약물 오용자를 위한 일상 보호 활동 (Day-care activities for adult substance misusers)

스웨덴의 경우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는 크게 2개의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다. 우선은 스웨덴의 통계청 (Statistiska centralbyrån) 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 장애를 지닌 사람을 위한 보호 투입 (Care inputs for persons with impairments)
- 노인을 위한 보호 및 서비스 (Care and services to elderly people)
-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provided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 서비스 보호 (Social services ca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분기별 및 연간 통계
- 성인 약물 남용자 및 기타 성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보호 (Social services care for drug abusers and other adults) (family laws)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하의 국가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Socialstyrelse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참조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Socialstyrelsen)
 (이 기관은 사회서비스 보건 및 의료 서비스 환경 보건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와 관련된 통계를 집계하여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 낙태 (Abortions) 10),
- 기형아 출생 (Birth defects)
- 암 (Cancer)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통계 (Causes of death)
- 노인 (Children and young persons subjected to measures)
- 가족법 (Elderly persons)
- 입원 질병 (Family law)
- 부상 및 독극물 (In-patient diseases)
- (Injuries and poisoning)

참고

10) <http://www.socialstyrelsen.se/en/Statistics/statsbysubject/index.html>

- 건강 보호 인력 (Health care personnel)
- 지역 가족 상담 (Municipal family counselling)
-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 공중 보건 (Public health)
- 장애인 (Persons with impairments)
- 임신 출산 및 신생아 (Pregnancies, deliveries and newborn infants)
- 사회 지원 (Social assistance) 등이다
- 약물 중독 (Substance addiction)

[그림 17] 스웨덴의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홈페이지



이 밖에도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는 사회서비스 제 분야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경제적 지원 사회적 아동 보호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성인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에 대한 대책 가족법 및 가족 상담 노인 보호 및 간호 지역의 난민 접수 자원조직의 기여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7. 각국의 사회서비스 통계 작성 현황 및 시사점

지금까지 서비스산업에 기초한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산업관련 통계관련 국내외 표준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절에서는 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통계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7.1. 미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미국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업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계 기관인 센서스국이 작성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업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는 미국 경제와 산업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제센서스 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센서스는 미국 국가경제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실을 나타내는 주요 원천으로 정부 기업 산업 일반인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센서스의 실시는 미국 법령 장 조 조 조 에 근거하

고 있으며 미국 센서스국이 와 로 끝나는 해를 대상으로 매 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센서스의 산업분류는 북미산업분류체계 에 기초한다

경제센서스는 단기간의 경제조건을 측정하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추정 투입 산출 측정 생산 및 물가 지수 기타 통계치와 같이 복합적인 측정을 위한 틀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한다 경제센서스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정부의 정책입안 기관들이 경제활동을 모니터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센서스 자료를 이용한다

-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기업 활동과 조세 기초를 평가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경제센서스 자료를 이용한다
- 업종 단체들이 자신의 산업과 경쟁 산업의 경향을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회원들에게 시장 변화에 대해 계속 알 수 있도록 해준다
- 개인 사업자는 잠재적인 시장을 찾고 자신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을 관련 산업과 영역의 평균과 비교해서 분석하기 위해 경제센서스 자료를 이용한다

현재 경제센서스는 2007년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2008년 12월 일에 자료수집 종료 예정이어서 2007년의 경제센서스 결과는 2009년 12월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유용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 2007년과 2002년의 경제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97

서비스산업

7.1.1

사회서비스업의 상대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대분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업이 속한 보다 큰 범주인 건강관리 사회지원부문이 미국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미국의 산업 시설 수는 1997년에서 2002년 기간 동안 1만 천개에서 1만 천개로 증가했다. 1997년 산업부문별 시설 수 증감률에 있어서는 교육서비스업(16.2%), 정보업(19.9%),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19.1%), 교통 창고업(12.1%), 부동산업(12.0%), 보험업(11.4%), 건강관리 사회지원업(9.8%), 행정 지원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서비스업(3.3%), 소매업(-3.2%), 건설업(-2.9%), 관리 사회지원업(-1.1%),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0.7%), 숙박음식 서비스업(17.5%), 공공행정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10.2%),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10.1%), 건설업(9.7%), 건강관리 사회지원업(8.5%), 숙박음식 서비스업(8.1%), 공공행정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8.1%), 소매업(16.4%), 사회서비스업이 속한 건강관리 사회지원업은 시설 수에 있어 2002년과 2007년 모두 미국 전체 산업에서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9%), (10.9%), (10.5%), (7.8%)

1997 2002

한편 전통적 산업대분류 차원에서 산업을 광공업 (NAICS 코드 21-33) 과 서비스업 (NAICS 코드 42-81) 으로 나눌 경우 시설 수에 있어 미국의 서비스업은 1997년과 2002년 모두 전체 산업에서 80% 이상을 차지했다

<표 29> 미국 산업별 시설 수(단위: 1,000개)

NAICS	산업 ¹⁾	시설 수		
		1997 (%)	2002 (%)	증감 (%) ²⁾
	광업			
21	전기 가스 수도사업	25(0.4)	240(4.0)	-2.9
22	건설업 /	16(0.2)	17(0.3)	10.2
23	제조업	656(10.2)	709(10.5)	8.0
31-33	도매업	363(5.7)	351(5.2)	-3.3
42	소매업	453(7.1)	439(6.5)	-3.2
44-45	교통 창고업	1,118(17.5)	1,111(16.4)	-0.7
48-49	정보업	178(2.8)	200(3.0)	12.1
51	금융 보험업	114(1.8)	138(2.0)	20.4
52	부동산 임대업	395(6.2)	440(6.5)	11.4
53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288(4.5)	323(4.8)	12.0
54	기업관리업	621(9.7)	740(10.9)	19.1
55	행정 지원 폐기물 관리 및 처리	47(0.7)	49(0.7)	4.3
56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276(4.3)	273(4.0)	-1.1
61	건강관리 사회지원업	41(0.6)	49(0.7)	20.5
62	예술 오락 레크리에이션업	646(10.1)	709(10.5)	9.8
71	숙박 음식 서비스업	99(1.5)	110(1.6)	11.3
72	공공행정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	545(8.5)	566(8.4)	3.8
전체	총 산업	520(8.1)	525(7.8)	1.0
주	의 대분류에는 코드 의 농업 임업 이업 수렵업과 코드 의 공공행정업이 분류되어 있으나 이들 산업은 경계센서스의 조지에는 포함되지 않음	6,401(100.0)	6,773(100.0)	6.2

: 1) NAICS 11 / / / 92
년의 시설수 년의 시설수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2) (2002)/(1997)

: 1) <http://www.census.gov/econ/census02/data/comparative>

2) <http://www.census.gov/epcd/cbp/view>

미국 전체 산업에 있어 매출 (sales or receipts) 은 1997 년에서 2002 년의 5 년 기간 동안 17 조 7,910 억 달러에서 21 조 3,240 억 달러로 19.9% 증가했다. 표 참조. 각 산업 부문별 매출액의 증감률에 있어서는 교육서비스업 (50.2%),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45.8%), 정보업 (44.1%), 건설업 (40.6%), 부동산 임대업 (39.3%), 건강관리 사회지원업 (36.8%) 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데 비해 전기 가스 수도사업 은 감소 (-3.1%) 를 나타냈다. 앞의 시설 수와 비교할 때 매출의 증가율이 시설 수보다 산업 부문별로 시설 수와 매출의 증감률을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시설 수가 많이 증가한 산업부문이 매출에 있어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산업부문별 매출의 경우 1997 년과 2002 년을 비교할 경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는 약간씩의 변화가 있으나 주요 2002 년의 매출 순위는 두 해 모두 도매업 → 제조업 → 소매업 → 금융 보험업 (22.8% → 21.7%) 건강관리 사회지원업 (18.4%) > (13.8%) > (14.3%) > 으로 같 (제 2,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다. 건강관리 사회지원업은 매출액 비중이 5.7%로 전체 산업에서 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문별 시설 수와 매출의 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 5 년의 경우 매출액 비중 1 위인 도매업은 시설 수 비중 10 위로 매출액 비중 1 위인 제조업은 시설 수 비중 1 위로 매출액 비중 2 위인 소매업은 시설 수 비중 3 위로 매출액 비중 1 위인 금융 보험업은 시설 수 비중 3 위로 그리고 매출액 비중 1 위인 건강관리 사회지원업은 시설 수 비중 5 위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 산업대분류 차원에서 산업을 광공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눌 경우 매출에 있어 미국의 서비스업은 1997 년과 2002 년 모두 전체 산업에서 70% 이상을 차지했다.

1997 2002 70%

<표 30> 미국 산업별 매출액(단위: 10억\$)

NAICS 코드	산업 ¹⁾	매출액		
		1997 년 (%)	2002 년 (%)	증감 (%) ²⁾
21	광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174(1.0)	184(0.9)	5.6
22	건설업	412(2.3)	399(1.9)	-3.1
23	제조업	859(4.8)	1,207(5.7)	40.6
31-33	도매업	3,835(21.6)	3,915(18.4)	2.1
42	소매업	4,060(22.8)	4,637(21.7)	14.2
44-45	교통 창고업	2,461(13.8)	3,054(14.3)	24.1
48-49	정보업	318(1.8)	382(1.8)	20.1
51	금융 보험업	623(3.5)	898(4.2)	44.1
52	부동산 임대업	2,198(12.4)	2,804(13.1)	27.6
53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241(1.4)	336(1.6)	39.3
54	기업관리업	595(3.3)	868(4.1)	45.8
55	행정 지원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서비스업	92(0.5)	108(0.5)	16.4
56	교육서비스업	296(1.7)	397(1.9)	34.3
61	건강관리 사회지원업	20(0.1)	31(0.1)	50.2
62	예술 오락/레크리에이션업	885(5.0)	1,211(5.7)	36.8
71	숙박/음식/서비스업	105(0.6)	142(0.7)	35.5
72	공공행정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	350(2.0)	449(2.1)	28.3
총계	총 산업	266(1.5)	302(1.4)	13.6
주	의 대분류에는 코드 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과 코드 의 공공행정업이 분류되어 있으나 이들 산업은 경제센서스의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음			

: 1) NAICS 11년의 매출액 92년의 매출액 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2) (2002)/(1997)

: 1) <http://www.census.gov/econ/census02/data/comparative>

2) <http://www.census.gov/epcd/cbp/view>

7.1.2. 사회서비스

에서 사회서비스는 개념상 대분류에 있어 건강관리 사회지원 부문에 속하며 중분류로는 NAICS 코드 과 인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업과 사회지원업에 주로 해당된다. 건강관리 사회지원 부문에는 이 밖에도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업과 병원업으로 이루어진 의료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서비스업의 현황과 상대적 규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건강관리 사회지원 부문의 각 산업별 시설 수는 년에서 년의 년 기간 동안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만 천개에서 만 천개로 1997 증가했고 병원이 천개에서 천개로 감소했으며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은 만 천개에서 만 천개로 6 증가했다. 사회지원은 만 천개에서 만 천개로 5 증가했다. 표 9 참조

21.1%은 결과로 볼 때 건강관리 사회지원 부문의 증가율 14.3%은 사회서비스(거주형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과 사회지원)의 높은 증가율에 어느 정도 (9.8%)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관리 사회지원 부문에 있어 시설 수의 산업별 비중은 년과 년을 비교할 경우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업이 약간 증가하는 대신 의료업은 약 20%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나 순위는 두 해 모두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 → 사회지원 →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 → 병원(10.5% → 6.9%)으로 차이가 19.8%다. 전체적으로 건강관리 사회지원 (8.9%은 9.8%수)에 있어 사회서비스업이 30% 정도 의료업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 미국 건강관리/사회지원 산업부문 시설 수(단위: 천개)

NAICS	산업	증감		
		1997 (%)	2002 (%)	(%) ¹⁾
62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	646 (100.0)	709 (100.0)	9.8
621	병원	455 (70.5)	489 (69.0)	7.5
622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	7 (1.1)	6 (0.9)	-14.3
623	사회지원	57 (8.9)	69 (9.8)	21.1
624	의료	126 (19.5)	144 (20.3)	14.3

: 1) (2002)/(1997)

: 1) <http://www.census.gov/econ/census02/data/comparative>

2) <http://www.census.gov/epcd/cbp/view>

건강관리/사회지원 부문의 각 산업별 매출액은 1997년에서 2002년 5년간 동안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3,550억달러에서 4,890억달러로 36.8% 증가 병원이 3,79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31.9% 증가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은 1,270억달러로 570억달러에서 950억달러로 66.7% 증가했다 (표 32 참조) 건강관리/사회지원 부문의 매출에서는 사회지원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관리/사회지원 부문에 있어 매출의 산업별 비중은 1997년과 2002년을 비교할 경우 그다지 큰 변화가 없으며 순위도 두 해 모두 병원 40.1% → 40.4%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 20.3% → 20.3%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 42.9% → 41.3% 사회지원 10.5% → 10.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관리/사회지원 부문에 있어 2002년 수와 매출액은 80% 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년의 경우 시설 수에 있어 0.9%에 지나지 않는 병원은 매출에 있어 무려 66.7% 증가했고 사회지원은 매출에 있어 66.7%에 지나지 않는 반면 시설 수에 있어 0.9%에 지나지 않는 병원은 매출에 있어 무려 66.7% 증가했다

<표 32> 미국 건강관리/사회지원 산업부문 매출액(단위: 10억\$)

NAICS	산업	년		증감 (%) ¹⁾
		1997 (%)	2002 (%)	
62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	885 (100.0)	1,211 (100.0)	36.8
621	병원	355 (40.1)	489 (40.4)	37.7
622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	379 (42.9)	500 (41.3)	31.9
623	사회지원	93 (10.5)	127 (10.5)	36.6
624	건강관리/사회지원 부문의 매출액	57 (6.5)	95 (7.8)	66.7

자료: 1) (2002년) / (1997년)

2) <http://www.census.gov/econ/census02/data/comparative>

3) <http://www.census.gov/epcd/cbp/view>

표 32는 2002년 미국 건강관리/사회지원 산업부문의 주요 지표 당 비를 나타낸다. 우선 개 시설당 평균 매출액은 건강관리/사회지원 부문이 1,711만 달러이며 외래 건강관리 시설은 33만 달러, 병원은 1,411만 달러,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은 1,370만 달러, 사회지원은 1,370만 달러로 병원의 시설당 평균 매출액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83.3, 65.4

유급 피고용인의 인당 평균 매출액은 부문 전체가 약 만달러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가 약 만 천달러 병원이 약 만 천달러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이 약 만 천달러 사회복지원이 약 만 천달러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유급 피고용인의 인당 평균 매출액은 의료업이 사회서비스업에 비해 배 이상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설당 평균매출액에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수십배가 많았던 병원이 유급 피고용인의 인당 평균 매출액에 있어 전체 산업부문 평균보다 약간 많게 나타난 것은 병원이 다른 산업에 비해 시설당 유급종사원을 훨씬 많이 고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급 피고용인의 인당 평균 연봉은 부문 전체가 약 만 천달러이며 산업별로는 외래 건강 관리서비스가 약 만 천달러 병원이 약 만 천달러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이 약 만 천달러 사회복지원이 약 만 천달러로 나타났다. 피고용인 인당 매출액과 피고용인 인당 연봉은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민 만명당 시설수는 부문 전체가 개이며 산업별로는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가 100 개 병원이 개 간호 거주형 시설이 개 사회복지원이 개로 나타났다. 1,697 , 22 , / 241 , 485

<표 33> 2002년 미국 건강관리/사회지원 산업부문 평균비(ratio)

NAICS 코드	산업	시설당	피고용인당	피고용인당	주민
		평균매출액 (\$1,000)	매출액 (\$) ¹⁾	연봉 (\$) ²⁾	만명당 100 시설 수
62	외래 건강관리 서비스	1,714	80,207	32,942	2,445
621	병원	999	99,214	41,288	1,697
622	간호 거주형 관리시설	78,009	96,654	38,103	22
623	사회지원	1,833	44,907	20,835	241
624	유급 피고용인의 인당 평균 매출액 유급 피고용인의 인당 평균 연봉	654	43,088	17,138	485

자료1) 1)
2) 1)

1) <http://www.census.gov/econ/census02/data/comparative>

2) <http://www.census.gov/epcd/cbp/view>

7.2. 일본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산업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통계조사는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통계국 (Statistics Bureau) 이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업체 센서스 (establishment and enterprise census)” 이다. 이 조사의 시행은 1947년 5월 2일에 설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끝나는 해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체 센서스의 산업분류는 일본 표준산업분류 (5) (JISIC: Japanes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에 기초한다.

사회서비스업의 규모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먼저 대분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업이 포함된 보다 큰 산업범주인 의료복지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다음 의료복지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회서비스업의 상대적인 규모를 파악해본다. 분석을 위해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인 2006년과 2001년의 사업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서비스산업

7.2.1.

일본의 산업 시설 수는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1만 6천 개에서 1만 7천 개로 (establishment) 증가했다. 표 2001 참조. 2006업부5별 시설 수의 증감을 보면 의료복지업 (6.9%) 과 농업 (3.4%) 만 증가했고 나머지 모든 산업은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특히 광업 (17.9%) 제조업 (9.9%) 금융보험업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도매 (수매업) (14.8%) 인 (비교적 높은 감소율) (3.1%) / 시설 수의 산업별 비중은 2001년에 비해 (12.5%) (11.2%) 도매 소매업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음식점 숙박업 제조업 (28.5%) 건설업 부동산업 의료복지업 (17.8%)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3.7%) (10.1%) (9.6%)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5.2%) (4.7%) (27.2%) (9.3%) 의료복지업 부동산업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이 속한 의료복지업은 시설 수에 있어 일본 전체 산업들 가운데 2006년에는 9.3% (9.3%) (5.9%) (5.4%)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통적 산업대분류 차원에서 2001년 7과 광공업 코드 6과 서비스업 코드 로 나눌 경우 시설 수에 있어 일본의 서비스업은 2001년과 2006년 모두 전체 산업에서 약 80% (JSC A~C) 를 차지했다. (JSC D~G) (JSC H~R)

〈표 34〉 일본 산업별 시설 수 (단위 : 개)

JISIC 표준	산업	2006 년 (%)	2001 년 (%)	증가 (2001~2006) ¹⁾	
				수	비율 (%)
A~R	건설업	5,911,038(100.0)	6,349,969(100.0)	-438,931	-6.9
A~Q	건설업 공무 제외 (R)	5,869,339(99.3)	6,304,299(99.3)	-434,960	-6.9
A~C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21,677(0.4)	21,523(0.3)	154	0.7
D~R	비농림어업 공무 제외	5,889,361(99.6)	6,328,446(99.7)	-439,085	-6.9
D~Q	광업 (R)	5,847,662(98.9)	6,282,776(98.9)	-435,114	-6.9
D	건설업	3,026(0.1)	3,770(0.1)	-744	-19.7
E	제조업	548,861(9.3)	606,944(9.6)	-58,083	-9.6
F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548,442(9.3)	643,353(10.1)	-94,911	-14.8
G	정보통신업	9,079(0.2)	10,378(0.2)	-1,299	-12.5
H	운수업	59,436(1.0)	60,103(0.9)	-667	-1.1
I	도매 소매업	130,911(2.2)	139,007(2.2)	-8,096	-5.8
J	금융 · 보험업	1,604,688(27.2)	1,807,284(28.5)	-202,596	-11.2
K	부동산업	84,107(1.4)	96,732(1.5)	-12,625	-13.1
L	음식점 숙박업	320,365(5.4)	328,633(5.2)	-8,268	-2.5
M	의료 복지	788,263(13.3)	869,549(13.7)	-81,286	-9.3
N	교육, 학습지원업	351,129(5.9)	297,888(4.7)	53,241	17.9
O	복합서비스사업	231,758(3.9)	232,030(3.7)	-272	-0.1
P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49,043(0.8)	54,436(0.9)	-5,393	-9.9
Q	공무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1,118,554(18.9)	1,132,669(17.8)	-14,115	-1.2
R 자료	감소는 로 표시했으며 비율은 (2006년)의 시설수(45,670)와 (2001년)의 시설수(3,971)	41,699(0.7)	45,670(0.7)	3,971	-8.7

: 1) (2006년) / (2001년) .

: <http://www.stat.go.jp/english/data/jigyoku/2006/zenkoku/index.htm>

일본 전체 산업에 있어 종사자 수는 2001년에서 2006년 5년간 동안 6,015만 8천명에서 5,863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표 35 참조. 각 산업부문별 종사자 수의 증감률에 있어서는 의료 복지업 (23.4%), 정보통신업 (8.6%),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6.6%), 교육 학습지원업 (4.5%), 부동산업 (1.1%), 증가율을 보여주었는데 비해 나머지 모든 산업은 감소했으며 특히 광업 (1.1%), 건설업 (1.1%),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1.1%), 금융보험업 (1.1%), 제조업 (28.8%), 의 감소 (16.2%) 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앞의 시설 수와 비교할 때 종사자 수의 감소율이 포인트 나타 다 의료 복지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시설 수나 종사자 수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주요 부문 종사자 수의 비율은 2001년의 경우 도매 소매업 (22.1%), 제조업 (18.2%),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13.5%), 음식점 숙박업 (8.5%), 건설업 (8.2%), 의료 복지업 (7.5%) 순으로 나타났고 2006년 의료 복지업 (16.9%), 음식점 숙박업 (16.9%), 건설업 (11.1%)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일본 전체 산업의 종사자 수에서 (11%) 2001년과 2006년 사이에 1.1%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산업 부문별 시설 수와 종사자 수의 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 2001년의 경우 종사자 수 비중 위인 도매 소매업은 시설 수에 있어서도 위이지만 2006년 종사자 수 비중 위인 제조업은 시설 수 비중 위로 종사자 수 비중 위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은 시설 수 비중 위로 종사자 수 비중 위인 의료 복지업은 시설 수 비중 위로 그리고 종사자 수 비중 위인 음식점 숙박업 은 시설 수 비중 위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 삼업대분류 차원에서 산업을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으로 나눌 경우 전체 산업 종사자 수에 있어 일본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2.6%, 2006년 75.0% 였다.

〈표 35〉 일본 산업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JSIC 코드	산업	2006년	2001년	증가(2001~2006) ¹⁾	
				수	비율
A~R	전산업	58,634,315(100.0)	60,157,509(100.0)	-1,523,194	-2.5
A~Q	전산업(R공무 제외)	56,782,204(96.8)	58,280,216(96.9)	-1,498,012	-2.6
A~C	농림어업	248,459(0.4)	251,382(0.4)	-2,923	-1.2
D~R	비농림어업	58,385,856(99.6)	59,906,127(99.6)	-1,520,271	-2.5
D~Q	비농림어업(R공무 제외)	56,533,745(96.4)	58,028,834(96.5)	-1,495,089	-2.6
D	광업	33,527(0.1)	47,117(0.1)	-13,590	-28.8
E	건설업	4,144,037(7.1)	4,943,615(8.2)	-799,578	-16.2
F	제조업	9,921,885(16.9)	10,955,761(18.2)	-1,033,876	-9.4
G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282,688(0.5)	323,711(0.5)	-41,023	-12.7
H	정보통신업	1,592,643(2.7)	1,465,996(2.4)	126,647	8.6
I	운수업	2,914,126(5.0)	2,975,043(4.9)	-60,917	-2.0
J	도매·소매업	12,400,519(21.1)	13,315,805(22.1)	-915,286	-6.9
K	금융·보험업	1,429,413(2.4)	1,638,016(2.7)	-208,603	-12.7
L	부동산업	1,014,844(1.7)	1,003,335(1.7)	11,509	1.1
M	음식점·숙박업	4,875,468(8.3)	5,116,583(8.5)	-241,115	-4.7
N	의료, 복지	5,588,153(9.5)	4,528,545(7.5)	1,059,608	23.4
O	교육, 학습지원업	2,939,730(5.0)	2,812,939(4.7)	126,791	4.5
P	복합서비스사업	706,584(1.2)	753,356(1.3)	-46,772	-6.2
Q	서비스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8,690,128(14.8)	8,149,012(13.5)	541,116	6.6
R	공무(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1,852,111(3.2)	1,877,293(3.1)	-25,182	-1.3

자료 : 1) ' (2006)/(2001) .

: <http://www.stat.go.jp/english/data/jigyoku/2006/zenkoku/index.htm>

〈표 36〉 일본 산업시설 당 종사자 수 (단위 : 명)

ISIC 표	산업	2006 년	2001 년	증가 ¹⁾ (2001~2006)
A~R	전산업	9.9	9.5	0.4
A~Q	전산업 (공무 제외) (R 농업)	9.7	9.2	0.5
A~C	비농림어업	11.5	11.7	-0.2
D~R	비농림어업 (공무 제외)	9.9	9.5	0.4
D~Q	광업 (R)	9.7	9.2	0.5
D	건설업	11.1	12.5	-1.4
E	제조업	7.6	8.1	-0.5
F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18.1	17.0	1.1
G	정보통신업	31.1	31.2	-0.1
H	운수업	26.8	24.4	2.4
I	도매 소매업	22.3	21.4	0.9
J	금융·보험업	7.7	7.4	0.3
K	부동산업	17.0	16.9	0.1
L	음식점 숙박업	3.2	3.1	0.1
M	의료, 복지	6.2	5.9	0.3
N	교육, 학습지원업	15.9	15.2	0.7
O	복합서비스사업	12.7	12.1	0.6
P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14.4	13.8	0.6
Q	공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7.8	7.2	0.6
R	감소는 로 표시했으며 비율은) 종사자 수	44.4	41.1	3.3

자료) ' (2006)-(2001

: <http://www.stat.go.jp/english/data/jigyou/2006/zenkoku/index.htm>

표 36은 일본의 산업시설 개당 종사자 수를 보여준다. 2001년과 2006년 모두 산업시설 개당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공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의료 복지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06년의 5년 기간 동안 산업시설 개당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공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3.3명), 정보통신업(2.4명), 운수업(0.9명), 의료 복지업(0.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7.2.2.

에서 사회서비스는 개념상 산업대분류의 의료 복지 부문에 속하며 중분류로는 JSIC 코드 인 보건위생업 코드 인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에 주로 해당된다. 의료 복지 부문에는 이 JSIC에도 75 코드 인 의료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서비스업의 현황과 SIC상대적 규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의료 복지 부문의 각 산업별 시설 수는 2001년에서 2006년의 5년 기간 동안 의료업이 1만 천개에서 2만 천개로 증가했고 보건위생업은 1천 개에서 2천 개로 21.7% 감소했으며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은 1만 천개에서 2만 천개로 28% 증가했다. 표 37, 참조 에 같은 결과로 볼 때 의료 복지 부문의 48.2% 증가율은 사회서비스업인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의 높은 증가율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 복지 부문에 있어 시설 수의 산업별 비중은 2001년과 2006년을 비교할 경우 대체적으로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이 증가한 대신 의료업과 보건위생업은 약간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나 산업별 비중의 순위는 두 해 모두 의료업 →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 → 보건위생 → (72.8%으로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의료 복지 부문은 2001년의 경우 시설 수에 있어 사회서비스업 보건위생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이 (25.8% 32.5%) 의료업이 (1.6% 1.2%)를 차지하고 있다. (+ / /) 33.7%, 66.3%

<표 37> 일본 의료/복지 산업부문 시설 수(단위: 1,000개)

ISIC 코드	산업	2006 년	2001 년	증가 (2001~2006) ¹⁾	
				수	비율 (%)
N	의료 복지	351,129(100.0)	297,888(100.0)	53,241	17.9
73	의료업	233,001(66.3)	216,619(72.8)	16,382	7.6
74	보건위생 사회보험 사회복지	4,376(1.2)	4,501(1.6)	-125	-2.8
75 주	개호사업 감소는 로 표시했으며 비율은 년의 시설 수 년의 시설 수	113,752(32.5)	76,768(25.8)	36,984	48.2

자료1) ' (2006)/(2001).

: <http://www.stat.go.jp/english/data/jigyou/2006/zenkoku/index.htm>

의료 복지 부문의 각 산업별 종사자 수는 년에서 년의 년 기간 동안 의료업이 / 만 천명에서 만 천명으로 200가 보건 2006업이 5 만 천명에서 만명에서 2 감소 사회 24 보험 사회 복지 8.8 사업은, 만 천명에서 4 만 천명으로 증가했다 표, 참조 / 시설 수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사회 복지 개호 사업 >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의료 복지 부문에 있어 종사자 수의 산업별 비중은 년과 년을 비교할 경우 순위는 두 해 모두 의료업 사회 보험 사회 복지 개호 사업 보건 위생으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의료업 → > 과 보건 위생업 / → > 의 비중은 감소했는데 비해 사회 보험 사회 복지 개호 사업 → (2.3% 비중은) 다소 증가했다 전체 적으로 의료 복지 / 부문은 / 년의 경우 종업원 수에 있어 사회 서비스업이 정도 의료업이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0% ,

60%

<표 38> 일본 의료/복지 산업부문 종사자 수 (단위 : 명)

JSIC 코드	산업	2006년	2001년	증가 (2001~2006) ¹⁾	
				수	비율
N	의료 복지	5,588,153(100.0)	4,528,545(100.0)	1,059,608	23.4
73	의료업	3,266,367(58.4)	3,002,316(66.3)	264,051	8.8
74	보건위생	100,094(1.8)	104,233(2.3)	-4,139	-4.0
75	사회보험 사회복지	2,221,692(39.8)	1,421,996(31.4)	799,696	56.2
주	개호사업				
	감소는 로 표시했으며 비율은 년의 종사자 수 년의 종사자 수				

자료) 『』, (2006)/(2001)
 : http://www.stat.go.jp/english/data/jigyoyou/2006/zenkoku/index.htm

표 는 일본의 의료 복지 산업 시설 개당 종사자 수를 보여준다 년과 <년 99>두 산업 시설 개당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보건위생업이며 2004년 이후 2006년 가장 많은 산업은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 의료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년과 년의 년 기간 동안 산업 시설 / 개당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 명 과 의료업 명이며 보건위생업은 명 줄어들었다 / (1.0) (0.1) 0.3 .

<표 39> 일본 의료/복지 산업부문 시설 당 종사자 수 (단위 : 명)

JSIC 코드	산업	2006년	2001년	증가
				¹⁾ (2001~2006)
N	의료 복지	15.9	15.2	0.7
73	의료업	14.0	13.9	0.1
74	보건위생	22.9	23.2	-0.3
75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	19.5	18.5	1.0
주	감소는 로 표시했으며 비율은 년의 산업 시설 당 종사자 수 년의 산업 시설 당 종사자 수			

자료) 『』, (2006)-(2001)
 : http://www.stat.go.jp/english/data/jigyoyou/2006/zenkoku/index.htm

7.3.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영국의 산업에 대한 통계조사는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ONS)가 주관하여 업체 및 대부분의 산업 부문의 업체에 대한 고용 및 회계 정보에 대한 통합 조사인 Annual Business Inquiry(ABI)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ON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H. M. Treasury, Scottish Executive, National Assembly of Wales, Northern Ireland Office 등의 정부 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되고 있다.

ABI는 기존에 실시되어 오던 Annual Employment Survey(AES), Annual Census of Production and Construction(ACOP/C), Distribution and Services Inquiries(DSI) - Annual Wholesale Inquiry, Annual Retail Inquiry, Annual Motor Trades Inquiry, Annual Catering Inquiry, Annual Property Inquiry, Annual Services and Trade Inquiry와 같은 연례 산업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선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등의 국제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서비스 부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 간의 통합된 사업체 명부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최후의 Inter-Departmental Business Register는 1998년에 시행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ABI 1998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다루는 부분으로서 1998년 당시 약 78,500여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부분은 1998은 회계 관련 통계를 다루는 부분으로서 78,500의 부분 표본인 75,000여개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1992년의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영국 통계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ABI

서비스산업

7.3.1. 영국의 사회서비스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대분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업을 비롯한 기타 산업의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국의 산업 시설의 수는 1992년에 171만 여개에서 2005년에 185만 여개로 증가하여

(Enterprises)	2000	171	2005	185
---------------	------	-----	------	-----

증가하였다. 표 참조. 2000년의 산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부동산업 8.1%, 임대업 30.4%, 사업서비스업 23.6%, 도매 및 소매업 11.1%, 건설업 9.8%, 기타 지역 사회 개인 및 사회 서비스업 10%, 제조업 9.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업이 포함되는 의료 및 복지 부문은 2.1%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5년에는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2.1%, 도매 및 소매업 33.4%, 건설업 20.7%, 기타 지역 사회 개인 및 사회 서비스업 41.9%, 제조업 9.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의료 복지 부문의 산업체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년에서 년까지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업 및 임업 부문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 가스 수도사업 교육 의료 및 복지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8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및 복지 부문은 이 기간 동안의 산업체 증가율이 15.8%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0> 영국의 산업별 사업체(Enterprise)의 수 2000

산업 구분	2000		2005		증감 (%) ¹⁾
	개	(%)	개	(%)	
A 농업 및 임업	3,263	0.2	21,091	1.1	546.4
B 어업	4,012	0.2	3,847	0.2	-4.1
C 광업	1,654	0.1	1,233	0.1	-25.5
D 제조업	167,289	9.8	153,255	8.3	-8.4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274	0.0	504	0.0	83.9
F 건설업	190,550	11.1	220,663	11.9	15.8
G 도매 및 소매업	404,042	23.6	383,004	20.7	-5.2
H 숙박 및 음식점업	116,568	6.8	130,180	7.0	11.7
I 운수 및 통신업	79,753	4.7	81,744	4.4	2.5
K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519,747	30.4	616,973	33.4	18.7
M 교육	16,811	1.0	26,838	1.5	59.6
N 의료 및 복지	36,119	2.1	43,895	2.4	21.5
O 기타 지역 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	170,562	10.0	166,162	9.0	-2.6
합계	1,710,644	100	1,849,389	100	8.1

* J(금융 및 보험), L(공공기관 및 국방) 부문은 포함되지 않음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 100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표 41은 산업별 총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산업별 총매출액은 1조 9,736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05년에 2조 4,582억 파운드로 증가하여 2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 (37.0%) > 제조업 (23.8%)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12.4%) > 운수 및 통신업 (8.5%) > 의료 및 복지 부문은 (8.5%) >에 불과하였다 2005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 (37.8%) > 제조업 (19.0%)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13.7%) > 운수 및

통신업 (8.7%) > 의료 및 복지 부문은 (0.9%) >에 불과하였다 두 시기 동안의 산업별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0.9% 및 임업 부문이 전체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47.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47.6%) 의료 및 복지 (47.6%)

교육 (54.4%)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64.5%) > 건설업 (54.4%) >로 나타났다 (43.4%) 제조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서 매출액이 38.1% > 증가하고 (37.7%) > 특히 의료 및 복지 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과 2005년 모두 20% 미만에 불과하였지만 두 시기 동안의 증가율에서 볼 때 2005년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 4

〈표 41〉 영국의 산업별 총매출액*

산업 구분	2000		2005		증감 (%) ¹⁾
	£ million	(%)	£ million	(%)	
A 농업 및 임업	698	0.0	4,027	0.2	476.9
B 어업	938	0.0	1,095	0.0	16.7
C 광업	36,513	1.9	44,103	1.8	20.8
D 제조업	469,146	23.8	466,731	19.0	-0.5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47,942	2.4	62,003	2.5	29.3
F 건설업	121,549	6.2	167,331	6.8	37.7
G 도매 및 소매업	730,263	37.0	928,852	37.8	27.2
H 숙박 및 음식점업	47,410	2.4	61,743	2.5	30.2
I 운수 및 통신업	167,782	8.5	213,047	8.7	27.0
K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244,472	12.4	337,695	13.7	38.1
M 교육	14,109	0.7	20,509	0.8	45.4
N 의료 및 복지	14,937	0.8	23,017	0.9	54.1
O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	77,891	3.9	128,133	5.2	64.5
합계	1,973,648	100	2,458,288	100	24.6

* J(금융 및 보험), L(공공기관 및 국방) 부문은 포함되지 않음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times 100 / 2000년도 수치\}$ 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표 41의 산업별 연평균 고용자수의 경우 2000년에는 전체 산업에서 42만 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며 2005년에는 42만 3,122명으로 나타나 2000년 대비 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 4%, 제조업 2.4%,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2.4%, 교육 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및 복지 부문은 2000년 수준인 1.7%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 17.7%,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12.7%, 교육 12.7%, 제조업 12.7%의 순으로 나타났고 의료 및 복지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0.6%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19.9%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13.8%로 나타났다. 4.8%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산업별 고용자 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업 및 임업 부문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의료 및 복지,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부문은 두 시기 동안 연평균 고용자수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히 할 수 있는 농업 및 임업 부문을 제외하면 의료 및 복지 부문의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인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부문임을 알 수 있다.

<표 42> 영국의 산업별 연평균 종사자수*

산업 구분	2000		2005		증감 (%) ¹⁾
	천명	(%)	천명	(%)	
A 농업 및 임업	8	0.0	81	0.3	912.5
B 어업	12	0.1	12	0.0	0.0
C 광업	74	0.3	68	0.3	-8.1
D 제조업	4,143	17.9	3,246	13.5	-21.7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138	0.6	131	0.5	-5.1
F 건설업	1,340	5.8	1,392	5.8	3.9
G 도매 및 소매업	4,841	20.9	4,948	20.6	2.2
H 숙박 및 음식점업	1,777	7.7	1,916	8.0	7.8
I 운수 및 통신업	1,567	6.8	1,634	6.8	4.3
K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4,087	17.7	4,776	19.9	16.9
M 교육	2,937	12.7	3,308	13.8	12.6
N 의료 및 복지	930	4.0	1,157	4.8	24.4
O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	1,271	5.5	1,376	5.7	8.3
합계	23,125	100	24,045	100	4.0

* J(금융 및 보험), L(공공기관 및 국방) 부문은 포함되지 않음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100/2000년도 수치}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7.3.2. 사회서비스

영국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의료 및 복지 은 인간 의료 활동 수의 활동 및 사회사업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수용 사회사업활동)과 85.3(비수용 사회사업활동)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 85.3(수용 사회사업활동)을 포함하는 대분류상의 의료 및 복지 부문에서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은 영국의 의료 및 사회사업활동 부문의 사업체 수를 보여주고 있다 43에 따르면 의료 및 사회사업활동 부문의 전체 사업체 수는 2005년에 개로 나타났고, 2006년에는 개로 두 시기 동안 의 증 2000을 보 26.1% 있다 각 하위 2005년 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2006년 1.5% 사회사업활동 중 인간의료활동 수의활동 로 나타 2000회사업활동과 관련된 (69.4%) 수가 해당 부문(27.1%) 이상을 차 (7.5%)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사업활동 부문 중 비수용사회사업활동 2005의 사업체 수는 수용사회사업활동 부문의 사업체 수 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2006년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두 시기 동안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간의료활동 부문의 사업체수가 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사회사업활동 부문은 에 머무르고 있었다 특히 2.2%은 수용사회사업 부문의 사업체수가 감 3.7% 반면 비수용사회사업활동의 사업체 수는 의 증가율을 보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사업활동이 수용 보다는 비수용 중심의 활동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영국의 의료 및 사회사업 활동 부문의 사업체(Enterprise)의 수

산업 구분	2000		2005		증감(%) ¹⁾
	수	(%)	수	(%)	
85.1 인간 의료 활동	9,783	27.1 ^a	14,009	31.9 ^a	43.2
85.11 병원 활동	4,486	45.9	3,940	28.1	-12.2
85.14 기타 인간 의료 활동	5,297	54.1	10,069	71.9	90.1
85.2 수의 활동	2,715	7.5	3,035	6.9	11.8
85.3 사회사업 활동	23,621	65.4^b	26,851	61.2^b	13.7
85.31 수용 사회사업 활동	9,868	41.8	8,494	31.6	-13.9
85.32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	13,753	58.2	18,357	68.4	33.5
N 의료 및 사회사업	36,119 ^c	-	43,895 ^c	-	21.5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 100이며, 감소는 -로 표시

a = 85.11 + 85.14; b = 85.31 + 85.32; c = 85.1 + 85.2 + 85.3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표 44〉 영국의 의료 및 사회사업 활동 부문의 총매출액* 2000 2005

산업 구분	2000		2005		증감(%) ¹⁾
	£ million	(%)	£ million	(%)	
85.1 인간 의료 활동	7,053	47.2 ^a	10,959	47.6 ^a	55.4
85.11 병원 활동	5,744	81.4	8,180	74.6	42.4
85.14 기타 인간 의료 활동	1,309	18.6	2,779	25.4	112.3
85.2 수의 활동	1,551	10.4	1,737	7.5	12.0
85.3 사회사업 활동	6,332	42.4^b	10,322	44.8^b	63.0
85.31 수용 사회사업 활동	4,181	66.0	6,852	66.4	63.9
85.32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	2,151	34.0	3,470	33.6	61.3
N 의료 및 사회사업	14,937 ^c	-	23,017 ^c	-	54.1

* 자선 사회활동부문,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비용은 제외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 100이며, 감소는 -로 표시

a = 85.11 + 85.14; b = 85.31 + 85.32 ; c = 85.1 + 85.2 + 85.3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표 의 의료 및 사회사업 활동 부문 총매출액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억 파운드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억 파운드로 무려 54.1%의 증가율을 보이
 < 44> , 2005 230 54.1%
 149

고 있다 이는 앞서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료 및 사회사업활동 부문이 총매출액의 측면에서 전체 산업 부문 가운데 세 번째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부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하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인간 의료 활동은 전체 의료 및 사회사업 활동 부문 가운데 수의 활동은 사회사업활동은 를 차지한 반면 2005년에는 각각 47.2%, 10.4%, 42.4%로 나타났다 사회사업활동의 하위 부문을 살펴보면 수용사회사업 활동이 비수용 사회사업활동보다 약 배 정도 많은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년과 년 사이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간 의료 활동은 수의 활동은 2000 사회사업활동은 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의료 및 사회사업활동 부문에서 사회사업활동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표 의 산업체 수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사업활동 부문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5> 영국의 의료 및 사회사업 활동 부문의 연평균 종사자 수

산업 구분	2000		2005		증감 (%) ¹⁾
	천명	(%)	천명	(%)	
85.1 인간 의료 활동	430	46.2 ^a	569	49.2 ^a	32.3
85.11 병원 활동	328	76.3	273	48.0	-16.8
85.14 기타 인간 의료 활동	103	24.0	295	51.8	186.4
85.2 수의 활동	30	3.2	37	3.2	23.3
85.3 사회사업활동	469	50.4 ^b	551	47.6 ^b	17.5
85.31 수용 사회사업활동	230	49.0	290	52.6	26.1
85.32 비수용 사회사업활동	239	51.0	261	47.4	9.2
N 의료 및 사회사업	930 ^c	-	1,157 ^c	-	24.4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 100 / 2000년도 수치)이며, 감소는 -로 표시
a = 85.11 + 85.14; b = 85.31 + 85.32; c = 85.1 + 85.2 + 85.3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표 의 의료 및 사회사업활동 부문의 연평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년에 이 부문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만 명이었던 반면 년에는 만 천명으로 약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및 표 의 결과와 93, 2005, 115, 7, 24%, <43>, <44>

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 부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 및 사회사업활동 부문의 하위 부문별 연평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00 년에 인간의료활동에 43만명 (46.2%), 수의활동에 3만명 (3.2%), 사회사업활동에 46만 9천명 (50.4)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 년에도 2005 년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사업활동 분야의 경우에는 수용사회사업과 비수용 사회사업 부문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 년과 2005 년의 연평균 종사자 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간의료활동에서는 32.3%, 수의활동은 23.3%, 사회사업활동은 17.5% 증가한 반면 비수용 사회사업 활동은 9.2%가 증가함으로써 수용사회사업활동 26.1% 부문의 증가율이 약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7.4.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스웨덴의 산업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인 스웨덴 통계청이 제공하는 사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통계청의 중앙사업체 데이터베이스(Business Database)를 통해 스웨덴의 사업체와 지역 단위의 통계(Business Database)를 확인할 수 있다. Business Database에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단위로 등록된 사업체는 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재된 회사를 소유하고, VAT(가치added tax)에 등재되어 있는 자연인, 법인 등 포함하고 있다. (F-tax) 스웨덴의 (natural persons) 등의 법률과 유럽 공동체 규칙인 SFS 1984:692, SFS 1984:533, SFS 1980:100 경제활동의 분류 및 운영되고 있다. RF2186/93(통계 단위 및 하위 활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NACE rev. 1.1), RF 696/93() 스웨덴의 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유지·보완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매주 한 번씩 제공되고 법인체의 주소 산업분류 코드 전화번호 이름 사업체 명부 고용자 명부 법인세 명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매년 월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7.4.1.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부문을 비롯한 전체 산업의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산업 분류는 기본적으로 SIC(2003)을 기반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스웨덴의 산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2003년 스웨덴의 전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Enterprises)는 856,517개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는 945,801개로 증가하여 9.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24.1%), 농업 및 임업(23.6%), 도매 및 소매업(20.5%),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서비스업(19.6%), 제조업(13.7%), 건설업(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업(6.8%)은 의료 및 복지 부문(6.2%)을 차지함으로써 전체 산업 가운데 번째로 관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이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아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24.3%), 농업 및 임업(23.6%), 도매 및 소매업(20.4%),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서비스업(19.6%), 제조업(13.0%), 의료 및 복지 부문도(11.4%)와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산업 부문의 사업체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부문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건설업, 의료 및 복지(36.6%), 교육(23.8%),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24.1%), 농업 및 임업(23.6%), 전기 가스 수도사업(2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부문에서는 감소(19.6%)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서비스업이 포함되는 의료 및 복지 부문의 사업체 수 증가가 매우 뚜렷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웨덴에서 의료 및 복지 부문이 전체 산업 부문 가운데 세 번째로 빨리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46> 스웨덴의 산업별 사업체(Enterprise)의 수

산업 구분	2003		2007		증감 (%) ¹⁾
	개	(%)	개	(%)	
A 농업 및 임업	172,403	20.1	207,798	22.0	20.5
B 어업	1,476	0.2	1,695	0.2	14.8
C 광업	636	0.1	614	0.1	-3.5
D 제조업	55,767	6.5	58,477	6.2	4.9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1,258	0.1	1,505	0.2	19.6
F 건설업	58,337	6.8	72,411	7.7	24.1
G 도매 및 소매업	117,593	13.7	123,372	13.0	4.9
H 숙박 및 음식점업	23,179	2.7	26,201	2.8	13.0
I 운수 및 통신업	31,713	3.7	32,132	3.4	1.3
J 금융 및 보험	7,430	0.9	7,404	0.8	-0.3
K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207,054	24.2	249,458	26.4	20.5
L 공공기관 및 국방	539	0.1	575	0.1	6.7
M 교육	12,468	1.5	15,184	1.6	21.8
N 의료 및 복지	22,433	2.6	27,719	2.9	23.6
O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	78,705	9.2	107,523	11.4	36.6
P 피고용자가 있는 개인 가정	3	0.0	0	0.0	-
Q 기타	0	0.0	3	0.0	-
0 결측	65,523	7.6	13,730	1.5	-79.0
합계	856,517	100.0	945,801	100.0	10.4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times 100 / 2000년도 수치\}$ 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 http://www.scb.se/templates/Standard_180453.asp

표 47은 스웨덴의 전체 산업 부문에서의 부문별 연평균 종사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5년도 전체 산업의 연평균 종사자 수는 394만 여명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377만 여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약 4.6%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5 394 4.6%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의료 및 복지 (24.1%) > 제조업 (18.3%)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12.1%) > 도매 및 소매업 (11.9%) > 교육 (8.2%) > 운수 및 통신업 (6.4%) 의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5년도에도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 및 복지 제조업 (16.2%)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13.8%) > 도매 및 소매업 (12.3%) > 교육 (7.7%) > 운수 및 통신업 (6.3%) 이러한 결과는 스웨덴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스웨덴에서 의료 및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

년과 년 사이의 산업별 종사자 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어업·광업 제조업 및 교육(2007 제외)한 전 부문의 종사자가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폭은,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의 순으로 (18.7%) 나타났으며 (18%) 의료 및 복지 부문은 (14.8%) 증가율을 보이고 있 (7.4%) , 4.6%

〈표 47〉 스웨덴의 산업별 연평균 증사자수

산업 구분	2003		2007		증감 (%) ¹⁾
	명	(%)	명	(%)	
A 농업 및 임업	33,959	0.9	36,373	0.9	7.1
B 어업	530	0.0	499	0.0	-5.8
C 광업	8,364	0.2	8,323	0.2	-0.5
D 제조업	692,831	18.3	639,137	16.2	-7.7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21,630	0.6	21,751	0.6	0.6
F 건설업	195,974	5.2	231,266	5.9	18.0
G 도매 및 소매업	450,579	11.9	483,760	12.3	7.4
H 숙박 및 음식점업	89,189	2.4	102,407	2.6	14.8
I 운수 및 통신업	243,508	6.4	248,391	6.3	2.0
J 금융 및 보험	85,470	2.3	85,800	2.2	0.4
K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458,697	12.1	544,472	13.8	18.7
L 공공기관 및 국방	134,099	3.6	141,318	3.6	5.4
M 교육	309,323	8.2	302,369	7.7	-2.2
N 의료 및 복지	908,715	24.1	950,395	24.1	4.6
O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	142,089	3.8	151,958	3.8	6.9
P 피고용자가 있는 개인 가정	3	0.0	0	0.0	
Q 기타	0	0.0	6	0.0	
0 결측	1,000	0.0	313	0.0	-68.7
합계	3,775,960	100.0	3,948,538	100.0	4.6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 \div 2000년도 수치\} \times 100$ 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_econ.asp

7.4.2. 사회서비스

의 에서 사회서비스는 영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다 즉 Sweden SIC의 의료 및 복지(85.1) 인간 의료 활동 수의 활동 및 사회사업활동(85.2)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수용 사회사업활동 과 비수용 사회사업활동(85.3)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현황을 산업분류 상의 자리 수(4-digit)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은 스웨덴의 의료 및 복지의 하위 부문에서의 부문별 사업체 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 및 복지 부문의 사업체수는 2007년 26,702개에서 2008년 27,554개로 증가함으로써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2007년 26,702개와 2008년 모두 27,554개 사업체 수와 전체 의료 및 복지 부문의 2007년 200,071개에서 2008년 200,071개라는 비율은 각각 14.9%, 16.8%

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에는 수용사회사업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의 비중이 51.3%로, 반면 비수용사회사업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는 48.7%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의 해당 부문의 9.6%업체 수 12.1%증가율을 살펴보면 수용사회사업시설 2,603 2,607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용사회사업시설 부문은 무려 6.6%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웨덴의 사회사업이 수용 보다는 비수용 사회사업활동을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8> 스웨덴의 의료 및 복지 부문의 사업체(Enterprise)의 수

산업 구분	2003		2007		증감 (%) ¹⁾
	개	(%)	개	(%)	
85.11 병원	177	0.8	275	1.0	55.4
85.12 의료 활동	4,542	21.1	5,483	20.5	20.7
85.13 치과 의료 활동	2,234	10.4	2,400	9.0	7.4
85.14 기타 의료 시설	11,377	52.8	14,066	52.7	23.6
85.31 수용 사회사업 시설	1,150	5.3	1,226	4.6	6.6
85.32 비수용 사회사업 시설	2,074	9.6	3,252	12.2	56.8
합계	21,554	100.0	26,702	100.0	23.9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100/2000년도 수치}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표 49> 스웨덴의 의료 및 복지 부문의 종사자 수

산업 구분	2003		2007		증감 (%) ¹⁾
	명	(%)	명	(%)	
85.11 병원	262,289	28.9	257,462	27.2	-1.8
85.12 의료 활동	12,743	1.4	14,899	1.6	16.9
85.13 치과 의료 활동	15,874	1.8	14,054	1.5	-11.5
85.14 기타 의료 시설	7,843	0.9	8,810	0.9	12.3
85.31 수용 사회사업 시설	278,760	30.8	208,230	22.0	-25.3
85.32 비수용 사회사업 시설	328,979	36.3	443,977	46.9	35.0
합계	906,488	100.0	947,432	100.0	4.5

1) 증감율은 {(2005년도 수치 - 2000년도 수치)*100/2000년도 수치}이며, 감소는 -로 표시
 자료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이러한 결과는 표 49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스웨덴의 의료 및 복지 부문의 종사자 수는 94만 7천 432명이며 이 수치는 2003년 90만 6천 488명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천여 명으로 약 4.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회사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에 67.1%, 2007년에는 68.9%로 전체 부문의 약 2/3가량이 사회사업시설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항은 수용사회사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25.3%가 감소한 반면 비수용사회사업시설 종사자 수는 35%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비수용사회사업시설 종사자가 전체 의료 및 복지부문의 종사자 가운데 4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웨덴의 경우 사회사업은 다분히 비수용사회사업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5. 해외 사회서비스관련 통계 정리

사회서비스 통계 산출과 관련된 해외의 상황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회서비스는 서비스부문 중에서도 고유의 특성을 갖는 분야이다. 이는 사회의 경제 및 역사적인 맥락에서 달라지기도 하고 정부의 거시 사회정책이나 경제 산업의 체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사회서비스의 의미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기도 하고 또 그 기능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 services),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는 국제산업표준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에 따라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하는 협의의 정의로 이해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은 대인서비스 혹은 사회서비스라고 이르고 소득보장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은 제외시킨다. 영국의 사회서비스라 하여 소득보장 보건 고용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와 정부 민간 비영리 자원단체를 묶어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의 대인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경희 등

국가별로 사회서비스의 구성과 영역에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간호보호서비스 육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1)

(2)

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인 및 가족보호서비스와 알코올 및 약물남용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자산조사에 기초한 경제적 보조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의 가지 영역으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정경희 외 영국은 사회복지 범위³ 안에 공적 사적 섹터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문 및 비전문인에 의한 비의료성 서비스 아동 청소년 노인서비스를 사회적 보호 라고 이른다

기능면에서(본다면 서비스는 인간의 사회화와 발달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치료 원조 및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 정보 상담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은 인간의 사회화와 발달 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치료·원조·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 정보 충고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김현용 은 보호차원의 서비스, 변화차원의 서비스 예방차원의 서비스 생활의 질 향상차원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국(4)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집합적 행동에 의해 제공되고 서비스의 목적이 사회적 욕구 사회적 관계의 효과적, 조직에 따라 욕구 충족의 정도가 결정되는 성질의 욕구를 겨냥하고 있으며 상부상조 또는 이타주의와 같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서비스는 재회 또는 생산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생산적인 자원의 투여로 상호작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들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즉 인간 간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목적을 둔 활동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는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와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서 기원하는 상이한 정의와 명칭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정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및 갖고 사회서비스의 주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한 돌봄 즉 기초 의식주 보장 보건 의료 교육 고용에 대한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미국과 영국의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유사하게 각 사업법에 따라서 범주별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별로는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모부자 가정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각 사업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범주별 사회복지서비스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단편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이론적인 구성이나 복지국가와 관련된 체계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을 언급하는 것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이 연구의 주제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그 보다

는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는 각 나라의 사회서비스 모형을 유형화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먼저 고려할 모형이 공공서비스 모형이다 공공서비스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를 들 수 있다 이 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공급 전달 규제 재정 모두에서 공공부문의 압도적 우위가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영리조직이나 영리조직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고 지방정부가 개인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계획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며 보편주의의 원리에 기초해 욕구가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항상 즉각적으로 가능하다 가족주의모형은 지중해지역의 나라들 즉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사이

사이 (the family care model) 채택하고 있는 모형이다 이들 국가는 사회서비스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기구와 가톨릭 교회기구가 복지 혼합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서비스체계가 전반적으로 파편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권리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회서비스체계의 지체 (care for the elderly)화된 성격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인한다 돌봄에 대한 가족의 의무를 강조하는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 대부분 가족 내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경우에 따라서 비영리부문을 상대적으로 발달한 곳도 있으며 또 아주 부유한 계층의 경우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식의 자산조사 시장의존 모형은 사회서비스지출에 있어는 가족주의모형에 속한 나라들과 (the means-tested model) 비교하고 있고 사회적 보호를 일반적으로 개인책임으로 규정 국가는 문제 사례들 (social care)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의존적인 집단에게만 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영국은 보육 돌봄을 철저히 사적문제로 간주하여 90년대 중반까지도 공공보육서비스는 유럽의 최하수준이었다 영국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 지방정부의 이중체계 속에서 힘의 균형이 중앙정부로 크게 기울어졌지만 90년대 이후로는 민영화와 더불어 탈집중화의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미국사례는 영국에 비해 더욱 자유주의적으로 극단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개입 보다 민간의 자선활동을 강조하는 미국 고유의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비영리부문에 의해 제공되어 왔음 그러나 9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 경향 속에서 영리부문이 급성장하였고 클린턴정부의 복지개혁 이후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특히 보육과 노인들의 시설보호 부문에는 영리부문의 성장이 현저하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이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바뀌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의 증가 속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재정의 축소를 결과하기도 하다

이외 보충주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대륙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부양을 둔 비영리부문이 크고 강하며 그러면서도 공공서비스체계에 통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비영리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서 보충성의 원칙이란 보살핌 제공시 보살핌을 받는 자와 가장 가까운 사회단위 즉 가족(subsidiary) 영리조직의 활동이 우선적인 것이며 국가는 이들의 활동이 불충분할 때에만 개입하여 이를 지원하는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모형은 일견 자산조사모형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비영리부문에 의해 공급되고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가 조달한다는 점에서 시장 주의적 원칙이 강하 자산조사모형과는 구분된다 중앙 지방정부 관계에서는 네덜란드는 항상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나라로 규정되고 독일은 분권화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실제 서비스 제공에서 네덜란드는 규모가 작은 다수의 비영리조직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일하는 반면 독일에서 거대한 대 조직이 조합주의적 동반자관계의 이중체계 속에서 지역당국과 협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공공서비스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벨기에에는 이 군집에 넣을 수 있지만 군집특징을 약하게 공유 가족정책의 파이오니어로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잘 발전하지 않았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두 나라는 모두 사회서비스에서 공공부문이 비영리부문을 압도한다는 점에서도 대륙유럽 일반형과 차별된다

이밖에 일본의 동아시아형 가족주의 유형을 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일찍부터 복지국가로 발전시킨 일본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가족주의 유형에 대한 시론적 수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전후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과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는 일차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990년에 도입된 개호보험을 핵심 축으로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보살핌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에 비해 아동보육의 경우 보육의 사회적 책

2000

임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여전히 가족 내 여성(주로 어머니)들이 보육이 주 역할을 담당한다. 개호보험의 도입을 통한 영리법인의(노인관련 서비스 제공이 급격히 증가 공여원칙)에서는 노인(노인)에 있어서는 욕구에 바탕을 둔 기능평가를 통한 개호보험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아동서비스에서는 가족의 일차책임을 두고 사회는 보충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서비스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에서는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앙정부는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에서 주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체계들은 모두 한편으로는 세계화와 성장둔화로 인한 재정압박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험의 대두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대라는 유사한 문제에 부딪힘. 그러나 이런 이중의 압력에 대한 적응전략들은 체제별로 상당히 달랐다.

년대 이후 구미의 사회서비스체계들은 재정위기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신뢰(980)지지의 저하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공통의 문제점들에 부딪혔다.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지출의 삭감이 필요한 반면 사회서비스 수요는 증대하는 이중의 곤란 속에서 선진복지국가들이 택한 보편적인 적응방법은 민영화와 탈집중화이다. 그러나 네 개의 복지 체계의 대표적 나라들의 경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편의 주제는 이보다 훨씬 복합적인 여러 정책지향과 처방들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성장둔화와 세계화로 복지재정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서비스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둘째 민영화는 복지지출삭감을 위한 대안으로 모든 나라에서 하나의 뚜렷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현실에서는 각 사회서비스체제가 가진 특징에 따라 매우 복합적 양상을 띤다. 셋째 탈집중화가 반드시 중앙정부의 개입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흔히 탈집중화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하면서 중앙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직접적 서비스제공에서의 지방정부의 권한의 의무 강화가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규제력이 강화되는 경우 심심찮게 눈에 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사례는 탈집중화의 중앙정부의 감독과 규제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비공식적이거나 과편화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식화된 체계로의 통합된 반면 임무할당 및 기능과 자원 등은 기능적 분리와 표준화 제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혼합은 더 다양해졌으나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복지다원주의의 효과 즉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라기보다는 거꾸로 서비스의 표준화 진전과 수렴인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혼합이 다양해지면서 지방정부는 경쟁하는 여러 공급자들을 입찰을 통해 다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품질관리와 비용관리를 위해 표준들을 마련하고 여러 규제조항을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⁵⁰에 따라 ⁵⁰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물론 ⁵⁰개의 지표가 사회서비스 전체 영역을 상세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 지방정부 민간 조직 등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반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통계 자료의 집계 및 발간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모두 보건과 관련된 중앙 부서 혹은 그 산하 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반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특히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집계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산재하여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자료 뿐 아니라 관할 지역 내에 존재하는 민간 조직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 정부로 제출토록하고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와 더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자료의 용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료의 수집 및 산출이 번거로운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각 기관의 사회서비스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관련 자료를 앞서 언급한

방식대로 수집할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평가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등장 배경과 중요성 그리고 개념적 정의를 모색했다 그리고 국내의 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한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분류와 해외의 사회서비스관련 통계작성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울러 국내서비스관련 통계 중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현황과 성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분류의 편의상 협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 표준산업분류 보건 복지서비스 만을 다루었다 사회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서비스업 전체와 더불어 성장과 고용 창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실지로 서비스 부문 산업은 전체 산업체에서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 중 사회서비스는 전체서비스 부문 중 2001년 2.8%에서 2005년 3.2%로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광의의 사회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비스산업 분류체계에 기초한 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 서비스 부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은 과거에 비해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05년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업체수는 전체 서비스산업대비 종사자는 2001년 출액은 2005년에 비해 2005년에는 각각 26.8%, 성장하였다 30.8%러한 성장세는 4%통신 금융 등 2005년 28.5%, 32.8%, 12.7% 등화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추세가 아닐 수 없다

연구 분석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서비스가 경제 성장 기여율과 고용창출에 있어서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적으로 구미 선진국형의 고성장 저고용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있다는 점에서 국가성장의 주요 전략적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야 하나

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시사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요한 성과와 함께 연구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해외의 사회서비스 관련 사례조사와 국내의 서비스 산업 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연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통일된 개념적인 정의를 규정하기에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한계에 봉착했다 사회 서비스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정의와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개념적인 정의 이후 조작적 정의를 하는 부분과 유사하다 즉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념적인 규정이 이루어진 연후에 개념적 정의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측정의 대상을 규정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분류는 그런 맥락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맥락에서 다른 서비스·산업과의 차별성이나 전통적인 정부주도 (government-driven)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적인 정의와 뚜렷한 구분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단정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짓기에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정의가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경제체계 그리고 사회정책의 지행성과 전달체계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때문에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에 대한 국민정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사회 서비스 사례의 검토를 통해 각 나라의 사회서비스 정의가 상이하고 분류체계가 달랐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국내적인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 부연하자면 사회정책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적인 방향의 확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

사회서비스관련 통계자료 생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기존 통계자료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활용이다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서비스관련 통계는 년 단위로 서비스업총조사 년 단위로 서비스업조사 월단위로 서비스업동태조사가 있다 서비스총조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기존의 사

회서비스에 대한 분류만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거시적이고 개괄적인 통계자료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통계적인 분류체계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고 있고 사회서비스만의 고유한 기능을 위한 배타적인 자료를 만드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는 국가발전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에 부합하는 정책의 합목적적인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향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격차의 해명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서비스산업 전체 및 개별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적 개선·개발이 요구된다. 기존의 서비스관련 통계자료 특히 서비스업총조사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한 전수 혹은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현재의 서비스업총조사는 분류상 사회서비스업을 명확히 구분할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조사항목의 설계에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 사회정책이나 사회서비스의 기획·관리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자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표본 혹은 전수 조사를 위한 모집단의 확보와 표본 틀의 설계·설문항목의 설계 등 일련의 조사과정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조사를 생산할 경우 기존의 서비스업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국가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의 표본 조사관리 조사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업 조사 고유의 특성상 지방과 접근이 힘든 농어촌·산간벽지·외국인 및 다문화인구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중앙의 조사 관리와 지방의 조사조직의 유기적인 연대와 조사관리가 중요하다. 산업적 측면의 서비스 생산자 혹은 공급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존의 서비스업 통계조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이미 조사내용이나 조사대상을 포함한 조사환경에 익숙한 조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조사 자료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사회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공급 및 수요조사와 정책에 활용할 통계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사실은 국가사회정책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급자 통계는 용역(위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시설평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 자료에 불과하고 정책적 활용가치가 매우 약한 실정이다 이 점에서는 통계청에서 수집되고 있는 서비스업총조사,나 서비스업동태조사, 등의 기존 통계자료 역시 사회서비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없어서 관계부처에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정보로서의 통계적인 자료의 생성 역시 정책적인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연하자면 통계중추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이 기준으로 하는 표준산업분류체계 하에 작성된 기존 서비스관련 통계가 통계자료 이용자로서 정책부서의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에 맞는 맞춤형 통계의 설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부분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사회정책에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 서비스 공급 조사의 목적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고용 총량 및 질 서비스 제공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 목표 설정 신규 사업 개발 재정 성과 평가 인력 양성 등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에 활용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급자 조사와 함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고 서비스의 공급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생산 공급 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고객 만족을 이루려면 먼저 알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표적 집단 (target population)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실태적인 파악이 있어야 한다 사회 서비스의 수요조사라는 당면과제에 대해 수요자 혹은 이용자가 누구냐 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당위적인 이야기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집단의 욕구 이전에 대상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수요 집단이 누구이고 또 그들의 수요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자료의 대규모성 사업체전수조사의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과 수백 명의 통계관련 직원이 투입된다 분석의 고난도 경제 및 통계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산업관련 자료 분석 접근의 어려움 국가 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신뢰로 인한 응답

), (

증가)으로 인해 민간 서비스 공급업체나 서비스 이용자가 생산해서 공급하기에는 원천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 역할이 서비스 공급 및 수요 파악과 아울러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맡은 것에 비해 앞으로의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정부는 양질의 정보 제공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등과 같이 시장의 실패요인을 제거하고 관리를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에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정책 부서와 통계청을 위시한 통계작성기관이 서비스 수요조사 단계에서 부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장의 규모 공급자의 매출액 고용자 수 등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

<참 고 문 헌>

- 강혜규 외 (2007),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면 (2007), 성명제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요소 추정과 정책방향 조세 연구원 (2004), 연구원
- 김현용 (1993), 한국 사회의 변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개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 김혜원 (2006), 이상훈, 조영훈,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한국노동연구원
- 민현주 (2007),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손상익 (2007), 서비스업총조사 결과로 본 한국의 서비스산업구조 통계개발원 (2008), 한국보고서
- OECD (2007), 고용 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정경희 (2000),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현승 (2006), 주요 선진국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 통계교육원 (2007), 「산업분류」 통계청 통계교육원
- 통계청 (2007),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2), 「2001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6a), 「2005 기준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결과로 본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의 구조변화」 통계청 (2006), 통계청
- 하봉찬 (200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현상과 시사점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6), KIET
- 황명진, 이홍직 (2006), 사회복지 행정가를 위한 재무관리 양서원
- , (2007)
- D'Agostino, A., R.Serafini, M.Ward (2006), "Sectoral Explanations of Employment in Europe: The Role of Services", Discussion Paper No.2257,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 GAO, 1997
- Garland, S. (1997), A Rich New Business Called Poverty. Business Week
- Martin, L. (2000a),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Patti, R.(Ed), Handbook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inghamton, NY: The Hawthorn Press.

- Schettkat,R., and L.Yocarini (2003), "The Shift to Servic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Discussion Paper No.964,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 Wayne, L. (1998, February,27) The Shrinking Military Complex. New York Times
- Weinbach (1998), The Social Worker as Manager. Boston: Allyn & Bacon.
- <http://www.census.gov/epcd/www/naics.html>
- <http://www.stat.go.jp/english/data/jigyoku/2006/zenkoku/index.htm>
- <http://www.socialstyrelsen.se/en/Statistics/statsbysubject/index.html>
- <http://www.census.gov/econ/census02/data/comparative>
- <http://www.statistics.gov.uk/abi/whole-econ.asp>
- http://www.scb.se/templates/Standard_180453.asp